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079-01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

2015. 11

농림축산식품자료실



0015910



농림축산식품부

최종보고서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

2015

연구기관 : 지역재단

연구책임자 : 오미란(지역재단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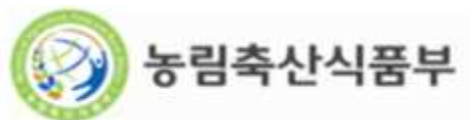
공동연구자 : 박민선(농협대학교 대외협력실장)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정민(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센터장)

박진하(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사무국장)

연구보조원 : 서그림(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경영지원팀장)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중장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발전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11

지 역 재 단

본 보고서는 지역재단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수탁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 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목 차

I.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범위	3
2. 연구방법 및 절차	6
3. 연구의 기본방향	11
II. 제3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1. 제3차 5개년 계획의 성과 평가	17
2. 제3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과제별 추진실적 평가	23
3. 제3차 5개년 계획의 한계 및 향후 과제	35
III 제4차 계획기간의 농업농촌 여건변화 및 전망	
1. 농업농촌 여건변화	41
2.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향후 전망	56
3. 해외 여성농업인 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65
IV.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개요	
1. 비전과 목표	83
2.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구조	86
3.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특징과 주요 지표 전망 ·	86

목 차

V. 영역별 정책과제

1.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91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112
3.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126
4.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132
5.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157

< 참고문헌 > 163

< 부록 >

- 여성농업인 단체 및 토론회 결과 요약 169
-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 정책일람표 177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연구개요

제1장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범위

1) 연구의 배경

- 제4차 여성농업인 5개년 계획 수립 연구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의 시행령 7조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의 수립 규정과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5조 5개년 계획을 수립 해야하는 규정에 의해 여성농업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동법에서는 여성농업인 5개년 계획에 포함할 내용으로 육성정책의 목표, 기본방향, 핵심정책과 제(경영능력, 지위향상, 삶의 질 향상), 과제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천방안, 자원조달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광역지방자치체의 경우 ‘여성농어업인육성법’과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조례’에 의해 5년마다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앙단위 여성농업인 정책 계획은 광역지방자치체 여성농업인 계획의 모체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중앙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방자치체 여성농업인 관련 기본 정책방향의 제시 및 지원영역에 대한 정책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2000-2005)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2006-2010)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2011-2015) □을 수립 □행 해왔음
 - 15년 동안 정책추진 결과 여성농업인 정책은 법□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1차 계획은 성평등한 농업정책에 대한 관점을 도입하였고, 2차 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와 복지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3차 계획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전문능력 강화 및 지역사회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여건을 반영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관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였음
- 여성농업인 육성 3차 5개년 계획기간(‘11~’15) 동안 농업정책 방향은 농업을 1차 산업의 영역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됨

- 이로 인해 1차 산업적 농어업 생산에서 가공 등 2차 산업, 각종 농촌마을개발 사업을 통한 문화·관광·체험 등 서비스 영역인 3차 산업 영역으로 확대된 6차 산업으로 인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음
- 이를 위해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향후 6차 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6차산업인증사업자 선정,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기능 확충,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활성화 및 각종 6차 산업 창업 및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임

□ 또한 여성정책 전반에 걸친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강화 방안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2011), 「성인지 예산제도」 제 시행(2011 지방재정법 개정) 등 정책추진이 이루어졌고,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기업인증 등 여성정책의 성 주류화 추진이 강화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아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은 증대됨. 또한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 문화 등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관계는 여전하며, 이와 함께 농가경제의 악화 및 농업 농촌의 변화에 따른 농가의 양극화, 가족단출산교령화 등 최근의 급격한 인구구조적 변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 여성과 남성들 내부의 정책 욕구의 다양화 등 정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 추진체계는 계획 수립기간 동안 부처간 통폐합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2차 계획 기간 이후 대부분 사업들이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지방양여된 이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내 여성관련 전담부서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실질적인 타부처간 사업의 통합이나 조정역할의 수행, 부서 예산의 확충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4차 계획에서는 제1차~3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농업을 둘러싼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통해 변화하는 농업정책과 농촌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들의 역할 및 육성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 여성농업인을 둘러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여성농업인 4차 5개년계획의 수립을 위

해 우선 검토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음

- 3차 5개년계획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3차 5개년계획이 여성농업인의 경영주체, 법적 지위, 복지향상이 주요 초점이었다면
- 4차 5개년 계획은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농식품, 농촌관광,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반영한 6차산업, 로컬푸드 및 사회적 경제 관련 여성의 역할 증대, 다문화가족 지역통합, 노령화 대비, 귀촌귀농 대응 등 농업 영역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육성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응이 필요함

□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은 농업생산자, 경영자로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및 지위향상 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리더, 지역개발 사업의 주체, 복지서비스의 지지자, 다문화 통합의 실천자, 지역특화 사업의 주도자로서의 역할 등을 보완한 미래농촌사회 주된 경영자로서 여성의 역할 증진에 따른 정책을 발굴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6~2020년(5개년)

- 계획의 시작년도 : 2016년
- 계획의 종결년도 : 2020년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

□ 내용적 범위 :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하는 여성농업인 인력육성, 삶의 질 향상 관련 계획임(농업농촌 관련 상위계획과 각 부처가 추진중인 사업과 연계성 고려)

□ 기존 여성농업인 기본계획(1차, 2차, 3차)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반영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여성인력 육성정책, 농업전망 등을 고려한 여성농업인 정책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 연구과제를 세부계획에 포함시킴.

- 가. 여성농업인 정책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나. 목표설정에 따른 추진전략 설정
- 다. 목표에 따른 핵심과제 설정
- 라. 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설정

□ 핵심 내용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 다양한 농촌여성 주제 양성

□ 각 항목별(정책영역)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추진목표와 세부실천 방안 제시

□ 계획의 구성체계

가. 기본틀 : 계획의 비전, 핵심목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제시

나.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정책과제별로 3~5개의 하위 정책과제 선정, 세부 추진과제 제시

다. 협력부서 : 여성농업인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정책과제나 사업들은 포괄적인만큼 특정부서나 기관의 노력만으로 추진과 실행이 불가능함. 따라서 정책과제 수행과정에 협력이 필요한 주요부서 또는 기관을 제시함

라. 정책추진시기 :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추진계획별로 연차별 추진계획 제시

2.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

가. 문헌검토

-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자료 : 1차~3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 11~15년 시행계획 분석, 상위계획(농업, 농촌관련 상위계획) 검토
- 여성농업인 관련 기존 연구자료 : 경영능력개발, 제도적 지위 향상 방안, 복지실태 조사, 복지 수요조사, 외국사례, 다문화 관련 자료 등

- 농업 농촌정책 및 연구자료 : 농촌개발, 친환경, WTO, 농업통계, 농업조직, 농업 경영, 농업교육, 농업전망, 농어촌 삶의 질, 농어촌 사회적 경제 관련 자료 등
- 각종 여성, 복지, 문화 관련 자료 : 여성정책, 양성평등기본법에 입각한 여성정책, 보건복지부 육아 및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 문화관련 정책 등

나. 계층별, 분야별, 연령별 정책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인터뷰 및 간담회 실시

- 사업의 내용적 충실성을 위해 각 단체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자문회의 및 정책대상별 집담회를 통한 욕구반영
- 여성인력육성, 농기계, 6차산업, 여성정책, 복지관련기관, 귀농귀촌지원, 여성농업 인단체, 농업관련 유관기관, 연구자, 여성정책관련 담당자 등을 포괄하는 16명 내 외의 자문회의 개최
- 여성농업인 정책 실현을 위한 대표과제 5개 영역을 설정하여 분야별 정책수립을 위한 단체별, 영역별 인터뷰 실시
-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제안된 정책과제 발굴

[표 1- 1- 1] 단체 및 영역별 간담회 추진개요

분야	개최일시	참가대상	핵심내용
간담회	9. 7	농가주부 이사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인식
간담회	9.21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각도 정책담당자	- 3차 여성농업인 정책의 평가 - 여성농업인 법적지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현황 검토 - 여성농업인 취창업 지원 및 농기계 관련 정책방안 검토
간담회	10.7	한국여성경영 인회중앙연합 회 이사	- 3차 여성농업인 정책의 평가 - 여성농업인 법적지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현황 검토
간담회	10.22	생활개선회중 연합회 이사	- 3차 여성농업인 정책의 평가 - 여성농업인 법적지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현황 검토 - 여성농업인 취창업 지원 및 농기계 관련 정책방안 검토
간담회	9.7	충남귀촌 여성	- 귀농귀촌 동기, 지역활동, 정책욕구
자문회의	10.16	전문가 및 단체간부	- 3차 계획의 성과 평가 - 4차 계획 비전, 목표, 추진체계, 세부과제 검토

다. 토론회 및 워크숍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토론회 : 4차 여성농업인 정책방향 토론회(9월 3일)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순천시여성농민회 : 여성농업인복지 토론회(9월2일)
- 충남 여성농업인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충남여성정책개발원(11월 2일)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여성농업인 정책 방향 토론회(11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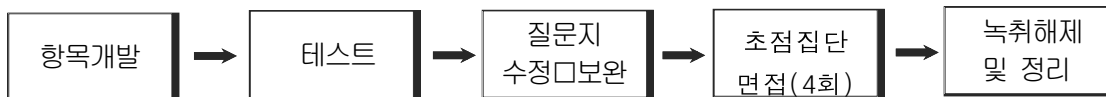
2) 집담회 내용

□ 인터뷰 대상

	내 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단체 및 6차 산업 여성경영인 • 연구기관 및 여성농업관련 업무 담당자 • 농촌 관련 중간조직 및 농촌 사회적 경제 관련자 • 노인, 다문화 등 복지관련 사업 및 단체 • 기타 연구에 필요한 전문가들
규모와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로 10명 규모 4~5회 실시 • 필요시 영역별 크로스 면접 실시

□ 인터뷰 방법 및 절차

- 심층면접설문지 활용



□ 인터뷰 기간 : 9월 1일~10월 15일(1개월 반)

토론회 기간 : 9월 2일~11월 25일 (2개월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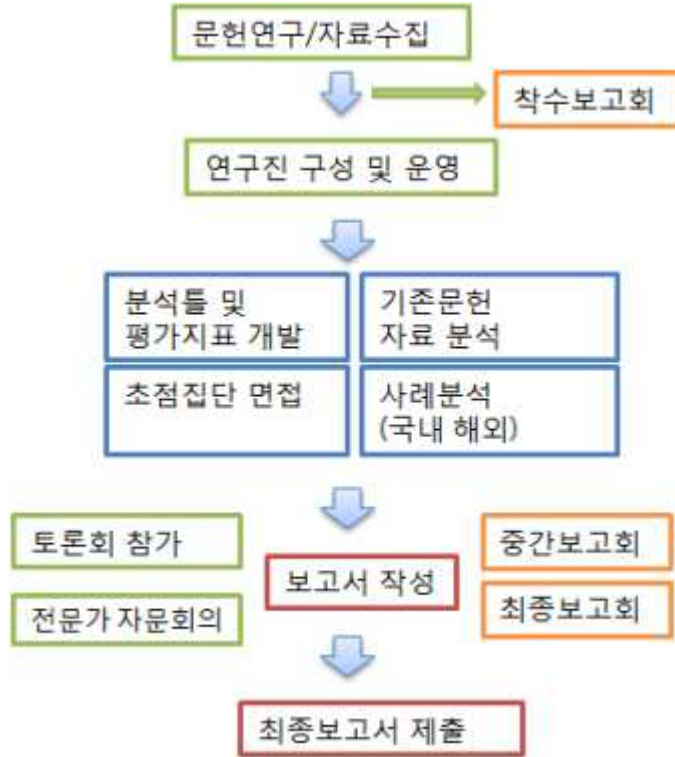
□ 측정항목

구 분	조 사 항 목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미래에 대한 전망 인식 •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관광, 유통, 가공 등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인식 • 농촌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 여성농업인의 농촌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정책평가, 정책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 행정 및 사회적 조직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에 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자로서 여성농업인 - 농가공업의 주체로서 여성농업인 - 농촌관광 및 체험 등의 지도자로서 여성농업인 - 농어촌 사회적 경제 주체 인력으로서 여성농업인 - 복지도우미 등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담당자로서 여성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 - 노후생활 및 돌봄노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유아, 아동지원에 관한 욕구 - 고령노인에 대한 주거복지 및 생활 복지에 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추진 인프라에 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여성농업인 정책 체계에 대한 인식 - 정책추진체계의 영역별 실행체감도(도단위, 군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지수 및 인식강화 방안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정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차별의 인지여부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 - 차별정책의 영역에 대한 인식 및 양성평등 보완영역에 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을 보는 시각 및 결혼이민여성의 농촌사회 통합 지원방안
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업 및 농업경영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성장에 관한 정책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별로 유형화하여 질문(농업, 지역개발, 문화, 관광 등) - 농업관련 교육, 농기계 등 전문영농인으로 정책욕구 - 6차산업 관련 정책 욕구, 사회적 경제 관련 여성농업인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소득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 - 제도 인지, 제도 이용 정도 - 일상생활 체감도를 높이는 복지정책, 복지와 문화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 측면 - 농촌교육, 전문가 양성 기회 등 여성농업인의 발전권 측면 - 농촌의 문화적, 제도적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통합 및 갈등해소 - 결혼이주로 인한 다문화가족, 귀촌귀농 가족 등의 지역통합

3) 연구체계

[그림 1-2-1]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수립연구 절차



3. 연구의 기본방향

1) 농업농촌의 여건변화 및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여성농업인 정책의 비전 및 정책 발전 방향 제시

□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농촌의 장기발전 전망으로 6차 산업 추진 등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추진됨

- 또한 중앙부처 사업의 지방양여 이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번기 공동급식’ 추진 등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으로 지역간 정책의 격차가 발생함.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의 제정 등 지방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의 중요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함

□ 2차 계획 기간 동안에 농림부가 농림수산물식품부로 개편되어 여성농업인 만이 아니라 여성어업인이 정책대상에 포함되었다가, 3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농림수산물식품

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어 양 부처가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추진체계의 변화가 수반됨

□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의거한 지방정부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은 중앙정부와 차별성이 없이 수립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추진체계는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의 집행이 일관되게 추진되기 어려움

- 또한 농가 양극화와 작물 등의 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 내부의 다양성은 더욱 증대됨. 그러나 이러한 농가의 변화에 따른 계층 욕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실정임

□ 따라서 4차 계획은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이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정책으로 추진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변화된 여성농업인의 계층별 욕구를 반영한 정책, 여성농업인들의 직업 전문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추진방향이 중요해 짐

- 4차 계획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여성농업인들의 책무성을 포함한 정책 수립 및 농업농촌 환경변화를 반영한 각 단위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이를 위해서 농촌 삶의 질 향상 대책, 농촌 의료, 보육, 노인 관련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영역을 반영한 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포함 할 수 있도록 타 부처 사업, 타부서 사업에 대한 조정과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과제 발굴이 이루어짐. 이는 기본계획의 특성은 직접사업 보다는 큰 틀의 방향과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부처간 연계, 부서간 연계사업의 시너지를 통해서 농업농촌 내부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진에 목적을 두기 때문임

2) 여성농업인 정책의 환경변화 반영 및 농업정책의 성인지 정책 추진 패러다임 강화

□ 지난 10년간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해 법·제도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

-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2005년 「민법」 개정 및 2007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전기가 마련됨
-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남녀고용평등법」이 2007년에는 법령명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법령의 내용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재생산비용의 사회적 책임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변경됨

- 2004년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한 이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기반을 마련함. 또한 보육환경 개선관련 사항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농촌 지역은 반대로 보육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
- 2007년에는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정책실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통한 성평등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또한 중앙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기본법(2014)」을 마련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2011), 「지방재정법」 개정(2011) 등으로 정책의 성주류화 제도가 전면화 됨. 또한 2009년 부터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추진되어 사회정책과 공간정책에 성별 정책을 통합하여 여성의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음

□ 가족다양성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인해 가족, 일자리, 다문화 등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건강가정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등이 수립되었음
- 일자리와 관련하여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정 양립기본계획,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기본계획,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등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었음.

□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삶의 질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 삶의 질 기본계획은 농촌 복지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의료, 보건, 문화, 정주여건, 교육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여성농업인정책 중장기계획은 이러한 여성농업인 정책의 변화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각 항목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추진목표와 세부 실천방안 제시를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의 성 주류화 정책의 기반 및 제도 구축을 강화해야 함

3) 미래지향적인 생활체감도 높은 정책의 발굴 및 제시

□ 제3차 계획 추진기간 중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성차별적인 제도들이 대폭 개선되면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평등 사회로의 진전이 가시화 되

었을 뿐 만 아니라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과 같은 거시적인 요인들로 인해 일상생활이 크게 변모되었음

- 또한 성 주류화 정책의 기반강화 및 제도적 여건확보, 여성친화도시 추진 등 변화된 정책환경은 일상생활에서 여성정책의 주류화 패러다임 진입을 가능케 하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업 정책이 여전히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인식되어 여성농업인들은 농업보조자, 협업농업인의 지위에 머물고 있어 농업 농촌의 기여도에 적합한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이주여성농업인, 귀촌귀농 여성농업인 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는 반면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지역격차가 발생함. 특히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산에 따른 여성농업인들의 정책욕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 영역에서 다양한 욕구들이 가시화되고 있음
- 문화, 의료, 사회보장 등에 대한 정책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관련 정책이 돌봄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를 확장할 필요성이 증가함. 이는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의 제안이 필요함. 이와 관련된 정책이 지방으로 이관된 이후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체감도는 더욱 낮아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욕구가 높음
- 또한 여성농업인 단체의 활성화 및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구체적인 지역정책 참여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특히 여성농업인의 생산자로서의 자긍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의 추진 및 정책수요자로서 정책에 접근성을 강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
-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는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 주류화, 여성농업인 취창업 강화, 여성대표성 강화, 여성들의 지역 참여, 계층별 수요를 담은 복지정책 과제의 발굴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단체별 집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수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토론했다 하여 반영함. 특히 정책과제별로 실행력을 높이고 체감도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소과제를 연계함

II 제3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제2장 제3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1. 제3차 5개년 계획의 성과 평가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기반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모색
- 농업·농촌 주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농산업의 6차 산업 추진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활동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취업·창업 활동 지원을 통한 소득지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노동경감 및 돌봄 지원 강화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체감형 복지에 대한 지원 강화

1-1. 3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의 여건변화

- 정책수립은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과 새로운 정책환경에 따른 정책 욕구를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3차 5개년 계획기간(2011~2015년)은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3차 계획 기간 동안은 여성농업인 정책에 있어서 추진인프라에 있어서는 변화가 발생했으나 정책내용에서 커다란 변화는 없었음. 2차 계획기간에 여성농업인센터, 도우미(농가, 가사, 출산) 등의 사업이 지방양여금을 통해서 지역으로 이관되었고 여성농업인이 정책에 추가되었음. 그러나 3차 계획기간에 여성농업인 정책은 다시 해양수산부로 이관됨. 따라서 여성농업인육성기본법에 따른 정책계획 수립은 농림축산식품부 만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역시 추진해야 할 사업과제로 됨.
- 3차 계획기간에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추진은 중앙부서의 추진체계가 농촌사회과 여성복지팀의 사업에서 농촌복지여성과로 변경되어 추진되어 복지 영역이 강화됨. 지방자치체에서 농업관련 정책 부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편재되는 정책추진 인프라에서 변화가 발생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6차 산업을 농촌 주인이 중심이 되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망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 가공 (2차 산업) 및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3차 산업)등을 복합적으로 연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http://www.mafra.go.kr/main.jsp>)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업 영역은 핵심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1-2. 「1~3차」 5개년 계획 추진과제

- 1차 계획의 목표는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어촌사회 발전’으로 제시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목표가 명료하지 못했음. 그러나 2차 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파트너십의 정착을 목표’로 제시하여 여성농업인 정책목표가 명료해짐. 3차 계획은 전문성을 가진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생애주기별 정책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여 정책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하였음
- 1차 계획에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정책추진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과제였으나, 2차 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귀촌여성, 복지정책 등이 추진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3차 계획에서는 지역개발 리더 및 공동경영인으로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역할 제고 및 정책 거버넌스가 중요한 정책으로 제안되었음
- 1~3차에 걸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역할은 직업인 → 성평등한 파트너 쉽을 가진 직업인 → 전문경영인 → 지역사회 리더 및 공동경영주로 정책영역과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장됨
- 1~3차 까지 추진된 기본계획은 여성농업인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광범위하게 제시함. 따라서 4차 계획에서는 변화된 농업여건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중점사업과 일반사업으로 제시하여 정책성과와 수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표 2- 1- 1]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개요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제3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목표		비전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비전	창조성·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	목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파트너십 정착	목표	
추진 전략	4대 추진전략	추진 전략	4대 추진전략	추진 전략	5대 추진전략
정책 과제	15개 정책과제	정책 과제	23개 정책과제	정책 과제	17개 정책과제
특징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과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 중심	특징	귀촌여성, 창업지원, 복지정책 구체화	특징	공동경영인, 문화, 공동취사, 거버넌스 강화

◆ 여성농업인 육성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3.23> 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7., 2013.3.23> 1.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의 기본 방향 3.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 가. 농업 경영능력 향상. 나.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다.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라.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계획 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3.3.23>

1-3. 제3차 5개년 계획 성과평가

□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에 관한 과제는 10년 넘게 요구되어온 정책 과제였음.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가 여성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공동경영인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획득한 것은 아니지만 농가경영체 등록시 종사자로 등록하도록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체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온적이지만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신청서식 변경(2011년), 국민연금 지침 개정(2012년)
- 여성농업인의 생산자 조직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농협 관련 법이 개정되어 여성조합원 30% 이상 조합의 경우 여성이사 할당제를 실시하여 여성들의 생산자 조직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됨.

□ 전문농업 경영역량 강화

- 농업의 6차산업화, 공동체 회사 등의 설립 및 여성가족부의 농촌창업지원 사업 등을 통해

서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영 참여 만이 아니라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실시됨. 이를 통해서 농촌여성들의 소득활동 영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귀농여성들의 적극적 참여 등 여성농업인 관련 영농활동의 영역을 확장함

□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 인력 육성

- 여성농업인을 지역개발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은 농촌리더 교육과 사무장 교육을 통해서 추진됨. 그러나 그 성과는 직업인으로서 사무장을 확대한 측면은 있지만 여성들이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시키는 전문성 있는 리더 육성 성과로 가시화되기에는 미흡함.
- 또한 농업 후계 세대로서 멘토를 지정하여 신규인력의 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속되고 있으나 영농후계 인력으로 정착 여부 및 실효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농가도우미 제도의 지원강화, 영농 멘토 지원, 농촌복지서비스 인력 특화 등 농촌 지역의 복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거나 현실적인 농촌 여건을 감안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실시함
- 여성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초고령화 되어 있는 농촌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 그룹홈 개발, 작은 목욕탕 지원,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체감형 복지 정책 시도
- 농번기 공동급식, 농촌 소규모 보육, 농촌 지역 보육교사 지원 등 농촌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의 노동감소 및 일-생활 양립형 정책 실현을 위한 시도들이 확대됨

□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

- 3차 계획 기간 동안 중앙부처의 정책추진 인프라는 점점 축소되었으나 2013년 이후 부터는 농촌사회과 농촌여성복지팀에서 농촌복지여성과로 변화되어 단위 부서의 추진체계는 부분적으로 강화되었음. 그러나 정책추진 인프라에서 중요한 역할로 등장한 지방자치체의 정책인프라는 정책수립이나 환류를 담당할 주체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추세임

[표 2- 1- 2] 3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추진전략 성과 및 보완점

추진전략	성과평가	보완점
직업적 지위와 권리향상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지위 공식화 노력(농협법 개정, 농가경영체 등록 지침 변경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 불안정(공동경영주로 명확한 지위 인정 필요), 농협의 경우 진입장벽 완화 필요
전문농어업 경영역량강화	6차 산업 활성화로 취창업 사업이 확대됨. 또한 여성가족부 등과 연계사업 실시함	여성농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사업은 오히려 축소됨. 여성 협업이나 창업지원 할당제 필요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지역개발 리더 육성, 리더십 강화, 사무장 교육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여성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됨	지역개발리더로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과정에 여성들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적극적 정책추진 필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보편적 복지, 고령여성 복지, 지역특화 복지사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생활체감형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의 보편적 복지 수준에 미달. 특히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체감형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정책추진인프라 강화	3차 계획기간 동안 정책추진인프라는 약화됨. 그러나 2013년 이후 여성복지팀을 복지여성과로 개편하고 여성어업인 정책이 분리되어 중앙정부의 추진인프라는 개선됨	지방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인프라는 점점 축소되어 정책전달체계에 관한 여성농업인들의 불편이 가중됨. 또한 정책홍보 기능이 약화되어 전반적으로 정책추진인프라 강화 및 정책홍보체계의 다변화가 필요함.

2. 제3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과제별 추진실적 평가

2-1. 추진전략 1. 직업적 지위와 권리향상

2-1-1. 공동경영인으로서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

-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향후 국민연금, 농업정책자금 지원, 공식적인 영역에서 사회보장 등의 지원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공동경영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이루어지지 못함. 농가경영체 등록은 확대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들의 종사상의 지위는 여전히 종사원의 위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영체 등록법의 개정(법인, 창업 등의 기업도 인정)으로 여성농업인의 농가경영체 참여 확대의 가능성은 커짐
- 여성농업인 후계농 지원의 경우 목표를 20%로 설정하고 있으나 목표가 달성된 적은 없음. 이는 지원대상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다 적극적인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방안수립이 필요함(2011년 14.5% → 2014년 17.5%)

2-1-2.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추진

- 현재 국민연금은 지침을 개정하여 협업농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많은 여성농업인들의 연금가입이 확대되고 있음. 또한 홍보사업을 강화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연금가입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2012년 지침개정(2013년 76,639명 → 2014년 146,000명). 그러나 여전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들이 많음. 따라서 마을이장, 부녀회장, 여성농업인 단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의 강화가 필요함. 특히 협동조합이나 공동체회사 등의 경우 법인 차원에서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2-1-3. 정책결정 과정 및 생산자 조직 참여 확대

- 여성농업인들의 생산자 조직 참여는 여성농업인들의 권익활동에서 매우 중요함. 그러나 생산자 조직 참여비율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음. 농협의 경우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비율만이 아니라 임원 비율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3~4%를 넘지 못해 유리천정 현상이 지속됨. 이는 민간 대기업 수준의 임원

비율보다 낮은 수치임

- 농협 조합원/ 임원 비율 : 2011년 31.1%/3.6% → 2014년 32.4%/4.6%

□ 최근 농협법이 개정되어 여성조합원 30% 이상인 조합의 경우 여성이사 할당제가 실시되어 향후 비율은 약간 높아질 것임. 그러나 이사 자격이 배당, 출자 등의 여건이 높게 책정되어 사실상 농협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가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음. 따라서 여성 이사의 참여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내부 규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함(이는 협동조합의 원칙에도 적합지 않음)

□ 여성대표성의 핵심인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비율은 특정 성(性)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농정관련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은 2011년 26.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30.2%에 이룸. 그러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지자체의 여성참여 비율보다 낮게 나타남. 향후 목표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설정하여 추진해야 함

2-2. 추진전략 2. 전문농업경영인 인력 육성

2-2-1. 여성농업인 역량증진 교육

□ 여성농업인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은 농협의 농업연수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핵심적인 교육과정은 리더십 아카데미, 혁신인재비즈니스 아카데미가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은 여성농업인을 특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점점 축소되고 있음. 또한 친환경 농업대학, 마이스터 대학의 여성참여 비율은 30% 내외로 낮은 실정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영농관련 교육에 여성참가율은 41.7%임

□ 최근 통합된 농업교육포털사이트의 경우 교육대상 항목에 여성농업인 항목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음(귀농귀촌, 소비자, 농과계 학생, 전문농업인, 후계농업인, 농업법인, 이주민, 기타로 설정됨) 이는 여성농업인의 역량증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줌

- 경영능력 증진은 전문성과 사회적 공식성을 획득 방향으로 실시운영이 필요함. 전문교육 기관을 연계하여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교육관련 지원정책이 필요함(교육도우미 제도- 바우처 제도 실시). 또한 여성농업인 인력육성 마스터 플랜의 수립이 필요함.

2-2-2.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사업은 창의 손맛 사업이 초기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농업인에게 참여하도록 개방됨.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했던 농촌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2년 만에 사업이 소멸됨. 따라서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사업은 3차 계획기간에 확대된 중요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관련 정책의 핵심인 6차 산업 육성과 밀접한 사업이지만 3차 계획년도 기간 하반기에는 오히려 축소되었음

□ 그러나 농가맛집 등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어촌공동체회사(현재로는 여성친화성은 있지만 여성농업인 정책영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등도 확대되고 있어 여성농업인들의 창업관련 영역은 정책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들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농소정 사업이 농업정책관련 사업에서 설정되지 않은 대신 최근 농산물 꾸러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서 여성농업인 유통, 마케팅 관련 영역에 관한 지원은 확대되었음

□ 또한 여성가족부의 농촌여성일자리 사업이 종료된 대신 농촌형 새로일하기지원센터 5개소가 시범 운영되고 있어서 이와 연계한 취업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도됨. 이는 여성농업인 일자리 관련 유관사업 중 유일하게 여성농업인 정책과제로 추가된 사업임. 향후에는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 등도 제고가 필요함

2-2-3.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확대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사업의 경우 실제로 실효성이 높지 않음.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매년 5종씩 개발하고 있고 현재 100여종이 개발되었음. 그러나 실제로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대표할 만한 기계는 많지 않음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사업의 경우 발기반 정비 사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서 기계만 개발한다고 이용가능하지는 않음. 따라서 발기반 정비를 강화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품목 개발 과정에 여성의 욕구를 반영하는 설문 및 보급 활용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특히 개발된 농기계를 중심으로 한 농기계 관련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현재 여성농업인 대상 농기계 교육 참가율 15% 내외임)
- 2015년 실시되기 시작한 농기계임대사업의 경우 농작업 편이장비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욕구를 잘 반영한다면 현재의 농작업 관련 노동경감과 관련하여서 매우 적절한 정책이 될 것임

2-3. 추진전략 3.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2-3-1.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 향후 농촌 마을 개발의 성공가능성은 여성농업인의 참여정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농촌 마을개발 사업은 대부분 소득, 관광, 체험, 문화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현재 지역개발 과정에 여성참여 영역은 여전히 제한적임. 리더보다는 여전히 단순 참여자에 종사하고 있음. 현재 마을리더 개발 과정 교육에 여성참여 비율은 32%임. 그러나 여성농업인들의 마을사업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정책 유인 요인은 미흡함(지역협의체 구성시 남녀 공동대표제 도입은 유명무실화 됨)
- 사무장의 경우 여성사무장 비율이 2011년 이후 2014년 까지 51.8%로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
 - 여성사무장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무장의 임금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사무장 양성

교육에 여성비율이 높다고 해서 지역개발 리더에 여성참여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체화 리더 육성에 여성참여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 이후 리더로 어떤 방식으로 마을개발 과정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여성농업인들의 지역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 사업 관련 지침의 개정을 통해 여성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직, 사업, 교육 등 전반적 과정에 대한 지표관리가 제시되어야 함

2-3-2. 농촌 복지서비스 인력 양성

- 복지 서비스인력은 주로 요양보호사와 농협에서 추진한 농가도우미 교육이 이루어짐. 농촌복지서비스 인력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보건복지의 표준화된 매뉴얼을 의거하여 추진됨
- 복지서비스 인력양성은 주로 소농 중심의 재촌 취업 농가의 여성들의 소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력양성에 어려움이 있음. 가사도우미 인력의 상당부분은 농협의 농가주부모임 조직의 자원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복지서비스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결혼이민여성 등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연계가 필요함

2-3-3. 후계 여성농업 인력 육성

- 후계 여성농업 인력 관련 지원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 후계 여성인력으로 후계자, 귀농귀촌, 결혼이주여성 등 크게 3가지 영역을 고려할 수 있음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함
- 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진 여성농업인 농가를 중심으로 1:1 멘토 활동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및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 후계여성인력(한국농업대학, 청년여성 창업인력, 청년 귀농인력 등)과 귀촌 인력의 경우 정착에 필요한 조건, 상황, 지원 등에 대한 욕구 및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이를 기초로 적극적인 정책이 발굴되어야 함

2-3-4. 결혼 이민여성 및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 결혼이민여성 관련 교육은 농협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정책사업임.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이 추진됨
 -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이기도 함. 따라서 사업의 추진주체를 명확히 하여 다문화 가족관련 지원 사업과 농업인으로서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책영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에 대한 실태조사 및 효과분석을 통한 정책 발굴 필요

2-4. 추진전략 4.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2-4-1. 여성농업인 모성보호 및 건강지원 확대

- 여성농업인 모성보호에 관한 사업은 농가도우미, 질병예방 및 한방보건소 특화사업으로 구성됨. 이는 여성이 겪는 농업노동의 특성 때문에 여성농업인에게 발병율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 때문임
 - 실제로 돌봄정책을 보완하는 농가도우미 사업의 경우 이용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영역별로는 출산도우미의 경우 아이를 낳는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하는 추세이고 영농도우미나 가사도우미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2011년 영농도우미 13,746가구 → 2014년 15,000가구, 가사도우미 14,328가구 → 15,000가구로 증가)
 - 본 사업의 경우 이용일수와 도우미에 대한 처우개선(최저임금 8시간 노동기준 53,000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접근성이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대안 마련과 더불어 사업과 관련된 지침이 개정된 경우 이를 농가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책추진 시 농촌의 접근성에 대한 제고와 보편적 복지수준에서 형평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복지부의 바우처 사업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도우미의 처우개선이 필요함
- 건강사업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유병 원인, 예방과 관련된 특화 프로그램의 적극화가 필요함. 특히 우울증, 치매예방, 한방 자가치료 교습, 근골격계 질환치료 및 산

부인과 지정운영 등 질병예방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또한 면단위 보건소의 활용도를 높여 근거리 접근성이 강화된 의료복지 효율성 추구가 필요함

2-4-2. 농촌 보육시설 및 보육여건 개선

□ 보육에서 가장 중요한 보육의 공공성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접근성, 보육다양성 강화가 핵심적인 정책이 되고 있음

- 특히 보육의 경우 이미 국가의 의무보육 시대가 되고 있어서 농촌 지역에서 중요한 보육 정책은 보육접근성과 보육다양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이 필요함. 이러한 측면에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보육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육 취약지구에 공동아이돌봄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농촌형 보육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시간연장형 보육을 다양화하기 위해 주말돌봄방,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등의 정책은 향후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2014년 현재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은 417개소임

2-4-3. 농촌 지역 공동취사 활성화

□ 농촌지역 공동취사 활성화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들의 노동경감에 중요한 정책임. 특히 공동취사의 경우 마을단위로 추진되고 있어서 마을공동체 강화(복지영역)에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

□ 공동취사 사업이 마을단위로 추진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동취사를 결정하는 주체가 이장으로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서 성맹성(gender-blind)이 나타나고 있어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농촌 지역 공동취사는 향후 사업영역의 확대 및 전문화,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최소비용, 매뉴얼개발, 유형 다양화 등 확대 보완이 필요함

□ 공동주거모델은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농촌 여성노인의 비율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여성농업인 정책과 연관된 영역을 특화하여 발굴할 필요가 있음

2-4-4.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지원

- 문화는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체감도 증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체감도가 가장 낮은 사업 영역이기도 함.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화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사업의 경우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포함되기에는 타당치 않음
 - 여성농업인센터는 지속적인 확대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전환이 필요함. 여성농업인센터의 기능전환 및 접근성을 활용한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지원기관으로서 역할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현재 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지방자치체에 따라 개소수나 사업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여성농업인 센터는 지역에서 여성농업인들에게 요구되는 실정에 맞는 사업을 실행하되 각 유관부처 사업을 연계하여 발전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2-5. 추진전략 5. 정책추진인프라 강화

2-5-1.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 교육확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9)이 제정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거의 모든 정책에 필수적인 프로세스가 되어가는 추세임. 또한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의 제정에도 따라 성인지 예산과 연계 추진을 통해 정책의 성평등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됨
 - 그러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는 증가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2015년 사업4, 계획 4개, 법령 16개). 또한 성인지 예산과 연계한 환류 점검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 특히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한 심층분석과제 역시 정책사업 영역에서 추진되지 않고 있음. 이는 과거에 농기계, 농산물가공 관련 등 심층평가사업을 통해 정책발굴이 추진된 것에 비해 오히려 성주류화 관련사업은 퇴조하고 있음
- 양성평등 교육의 경우 공무원 들은 여성가족부 지침의 변경에 따라 대부분 성인지 교육을 받고 있음
 - 그러나 농업관련 유관기관(교육원, 농협 등 다양한 조직 포함) 및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은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해서 농업정책 자금 수여 대상

을 중심으로 농업관련 교육과정에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2-5-2. 지자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강화

□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집행되는 단위는 지자체임. 특히 복지과 관련한 사업이 대부분 지방이양된 실정에서 지자체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의 환류 및 제도개선에 대한 지원은 점점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재 「여성농업인육성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계획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실제로 사업 추진부서나 체계가 없어서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추진은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시도계획에 대한 정책평가 및 환류,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권장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중앙의 정책추진이 광역, 기초까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는 중앙-광역-기초의 일관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 조례의 경우는 매년 5개 지역씩 증가하고 있고 여성농업인 정책의 과제목표로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조례는 만들어져 있으나 장롱조례가 되고 있음. 또한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정책추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의 마련이 필요함. 단순히 심의 기능도 없는 자문위원회 형태가 아닌 여성농업인 단체협의체 구성 등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할 조례 개정이 필요함

2-5-3. 여성농업인 단체와의 정책추진 거버넌스 구축

□ 정책추진 거버넌스의 경우 정책홍보 즉 전달체계 및 여성농업인의 사기양양, 여성농업인 단체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과제임

- 그러나 실제로 3차 계획 기간 동안 추진이 가장 미흡한 영역이기도 함. 3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자문회의 운영이나 단체에 대한 여성농업인 정책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 따라서 향후 여성농업인 단체와 행정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회복이 필요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에 정부부처 간에 여성농업인 정책을 조정할 상시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날을 제정하고 남녀공동참여계획본부 등을 구성하여 적

극적인 민관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추진

□ 단체활동 지원이나 정책 홍보의 경우 정책전달체계 개선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여성농업인들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에 기반한 정책운영이 중요함. 따라서 여성농업인 단체들 끼리 연대의 장이나 여성농업인 정책을 공유한 온라인, SNS 활용, 여성농업인 단체 총회시 정책설명회, 홈페이지 개설 등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참여를 조직할 필요가 있음

[표 2-2-1] 3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추진전략 성과 및 보완점

과제명	성과 및 문제점	보완점
1. 직업적 지위와 권리향상		
1-1 공동경영인으로서의 직접적 지위와 권리인정	- 제도보완 추진됨, 법적지위 문제는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농가경영체 등록관련 법 개정(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지위 획득) - 농협지침 개선 권고(실질적 참여 보장)
1-2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추진	- 지속적으로 가입 증가됨, 홍보도 확대하고 있음.	- 정보전달 체계의 변경 필요. 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1가구가 아니라 각 개인별 가입의 필요성 충분히 홍보(이장, 부녀회장 등)
1-3 정책결정과정 및 생산자조직 참여확대	- 농협 조합원, 임원 비율 증대(소폭) - 각중위원회 여성비율 40% 범으로 권고, 농림축산식품부 30.2%,	- 여성농업인들의 참여를 증진한 인센티브 실시, 문턱 낮추기 사업 실행 - 여성인력관리를 통해서 D/B 구축
2. 전문농업경영인 인력육성		
2-1 여성농업인 역량증진 교육	- 리더십 과정, 영농개선교육 등이 운영됨. 그러나 그 효과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 정보화 사회, 농업기술이 중시되는 미래방향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필요. - 교육참여를 증진할 다양한 유형개발 -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회적 공식성 부여 - 여성농업인 인력육성 마스터 플랜 수립 필요
2-2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과 일자리 지원이 시도되었으나 유지되지 못함. - 농업정책 전반에 6차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창업관련 사업은 증가함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연계된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강화 - 농업정책 관련 창업지원 사업에 여성농업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2-3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확대	-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매년 5종씩 개발됨. 그러나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실효성은 높지 않음. 농작업 편이장비 제공	- 기계개발, 작동교육, 보급연계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실효성 있는 개발 필요. 임대사업과 연계강화

제3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사업 등으로 다양한 정책 확대.	- 농작업 편이장비 제공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추진 필요
3.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3-1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 농촌 개발의 성공가능성은 여성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 그러나 마을리더 양성 교육에 여성참여 이외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함	- 마을개발 과정에 여성참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정책추진 필요(할당제, 인센티브 부여, 교육확대 등)
3-2 농촌 복지 서비스 인력양성	-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력양성을 위한 추진은 의미가 있음. 그러나 복지부 사업의 경우 복지부 매뉴얼로 이루어짐. 농가도우미의 경우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농촌형 인력양성과 더불어 결혼이민여성, 소농농가, 귀촌여성등의 인력과 효율적 연계 필요. -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계 추진 필요
3-3 후계여성농업 인력육성	- 후계여성농업인 인력은 핵심적 과제임.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된 정책은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함	- 귀농귀촌, 결혼이민여성, 농업농촌관련 학교 연계 등 적극적인 정책추진 필요 - 우선 실태파악을 통한 프로그램개발, 정책추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3-4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 농협을 중심으로 실시됨. 사업효과 측정이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적음	- 여성농업인 관련 영역으로 추진하되 기타 여성들의 경우 유관부처와 협력을 통해서 농촌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체계적 지원 필요
4.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4-1 여성농업인 모성보호 및 건강지원 확대	- 여성농업인 모성보호나 건강지원 사업은 꾸준히 확대되는 과정임. 그러나 인프라의 부족, 지원 내용은 도시여성들이 갖는 보편적 복지 수준에 미달함	- 도우미사업이나 보건소 프로그램만이 아닌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운영이 필요함(산원, 산부인과, 근골격계 질환, 치매 등 집중사업 배치)
4-2 농촌 보육 시설 및 보육여건 개선	- 이미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보육으로 전환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에 보육 시설 미설치 지역은 417개소임. 또한 보육접근성이 매우 낮음. - 농촌 보육의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보육지원을 하고 있으나 미약한 실정임	-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보육, 농번기 보육 등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확대 추진 필요. 보육의 접근성과 수요자 중심성을 강화하여 공보육의 사각지대 발생이 없도록 해야 함.
4-3 농촌지역 공동취사 활성화	- 여성농업인들의 노동경감과 지역공동체 복지강하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효과가 높은 사업임. - 현재 추진체계는 이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성농업인들의 실질적 욕구가 전달되지 못함.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농번기 공동취사의 유형다양화, 전문화를 위한 지원 필요(식자재 공급, 도시락 등) - 사회적일자리, 사회적 경제와 연계하여 인력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정부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확대 추진 필요 -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별 정책력

		차 발생. 중앙정부의 역할 필요
5. 정책추진인프라 강화		
5-1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 교육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한 법제도적이 기반은 확대되고 있지만 농업정책 영역은 추진이 미약함.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은 실시되고 있으나 농업유관기관, 농업인에 대한 성인지 교육은 추진되지 못함.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분석과제 및 성인지 예산을 여성농업인 정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특히 여성농업인에게 영향이 큰 정책을 중심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등 차별화된 정책추진 필요. - 농협,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에 대한 성인지 교육강화 및 농업정책자금 지원대상 및 영농교육 과정에 성평등 교육 포함 추진 필요
5-2 지자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의거하여 지자체 여성농업인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사업은 실시되고 있으나 시도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환류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여성농업인 정책의 상당부분이 지방이양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원하는 추진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과제에서 중요성이 가장 높아진 정책영역임. 중앙정부-도-시군으로 연계되는 정책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여성농업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인프라 확립 및 책무성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5-3 여성농업인 단체와의 정책추진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단체의 정책참여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만족도 증진만이 아니라 효율적 추진에서 핵심과제임. 그러나 현재 정책 거버넌스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실정임.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체감도 증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업 영역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은 기초적인 핵심과제임. 여성농업인들의 정책참여와 정책실현을 위한 공동노력의 강화방안이 필요함. - 특히 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서 내 여성농업인 정책을 관철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정책당사자와 함께 하는 거버넌스 추진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남녀공동참여계획본부를 운영하고 여성농업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3. 제3차 5개년 계획의 한계 및 향후 과제

3- 1. 제3차 5개년 계획의 한계

- 여성농업인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집중할 필요가 있음. 여성농업인 정책의 비전으로 성평등한 농촌사회 조성, 목표로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추진전략으로 성주류화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핵심과제로 등장함. 또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등의 정책 추진전략에 따른 핵심과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세스의 마련이 요구됨. 현재의 정책추진으로는 변화하는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성인력의 확보가 어려움. 특히 추진 전략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과제의 발굴 및 추진이 요구됨
- 여성농업인 정책의 핵심적 추진방향은 직업인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이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현재 복지로 집중되어 있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농업노동의 주체역량 강화로 전환이 필요함. 또한 복지 영역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수준으로 여성농업인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타 부처 사업의 적극적인 조정과 연계 등 정책추진에 있어서 주무부서의 역할 및 위상의 강화가 필요함. 또한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한 적극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2. 향후 과제

- 3차 계획 평가를 통해서 4차 계획에서는 3차 계획의 성과를 보다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의 정책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기본계획 수립 체계에 있어서
 - 정책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
 -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과정을 반드시 실행하여 정책의 만족도 제고 및 효율성 강화

□ 정책의 추진전략에 있어서

- 정책추진 전략에서 성주류화 정책추진 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
- 농업생산의 주체 역량으로서 여성농업인 정책의 개발 및 집중이 필요함
- 농촌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적극적인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 필요
- 전문 농업 경영역량 강화 전략을 여성농업인 취창업 역량강화로 확대하여 6차산업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전략을 포괄해야 함
-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진에 필요한 기초 토대 강화

□ 중점과제에 신규과제로 여성농업인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여성농업인의 지역리더로서 역할 강화방안,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야 함

- 변화하는 농업정책 패러다임에 적합한 취창업 역량강화
- 지역리더로서 여성농업의 역할 강화 방안
-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여성농업인 정책 파트너쉽 확보 및 정책 효과 증진 등을 위한 핵심과제 발굴이 필요함.
- 기존과제의 보완점으로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할 방안과 더불어 주무부처와 지역간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이 중요함.
- 또한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과제의 수단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표 2-3-1] 3차 계획 평가에 따른 향후 과제

계획영역	향후 과제
정책 수립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할 것 - 정책의 중간평가를 실시할 것
정책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추진전략 중 성주류화 추진전략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 - 농업생산의 주체로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에 정책의 집중이 필요함 -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일반적인 복지와 여성농업인 관련 복지정책 영역의 구분이 필요함 - 농업 전문역량 강화 영역에 여성 취창업 영역을 확대하여 농업의 6차 산업으로서 변화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정책 프로세스 강화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과제로 신규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취창업 역량강화와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거버넌스 확립,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 여성농업인 지위관련 법의 개정,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과제, 지역개발 과정에 여성참여의 확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세부적인 과제 추진에 있어서는 성과지표 관리가 중요함. 주무부처가 정책의 세부추진 과제들의 지표관리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특히 여성농업인 관련 법적지위나 전문 인력화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적 정책지원과 조정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또한 농협이나 농진청 등 유관사업에서 실시하는 사업, 지자체 실시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의 역할에 대한 상호간의 역할 분담이 보다 명료해져야 함. - 여성농업인 단체나 여성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정책수단을 보다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책 전달체계의 다양화 및 정책공유 프로세스 확대가 필요함. - 인력육성, 농촌 여성들의 계층다양화, 인구구성 변화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계층별, 연령별 정책개발 심층연구가 필요함. - 특히 세부추진 과제의 경우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정책의 경우 정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보완되어야 함. 예를 들어 지침의 변경, 정책추진 TF 구성 등 세부적인 정책추진 도구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Ⅲ 제4차 계획기간의 농업농촌 여건변화 및 전망

제3장 제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농업 □농촌 여건변화 및 전망

1. 농업 □농촌 여건변화

□ 최근의 주요한 농업농촌의 변화 가운데 특히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현상들을 중심으로 정리함

1) 농가인구구성의 변화 전망 : 농가인구 감소와 노령화 심화

□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4년에는 2014년보다 약 13만호 감소한 99만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¹⁾

□ 연령별 구성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24년에는 43.8%에 이를 전망으로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농림업취업자는 2015년 약 149만명 수준으로 전망되며 2024년에는 128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 농가인구 전망은 박지연외, "2015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였음

[표 3- 1- 1] 농촌지역 연령별 인구분포 및 전망

(단위:천명,%)

연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0- 14세 (유소년부양지수)	1742 (28.0)	1,495 (26.7)	1,286 (23.2)	1,075 (20.5)	956 (19.7)	827 (19.0)
	18.6	17.2	14.9	13.0	12.1	11.1
15- 64세	6,230	5,590	5,535	5,252	4,851	4,349
	66.7	64.2	64.2	63.4	61.5	58.6
65세이상 (노년부양지수)	1,370 (22.0)	1,618 (28.9)	1,806 (32.6)	1,961 (37.3)	2,077 (42.8)	2,248 (51.7)
	14.7	18.6	20.9	23.7	26.3	30.3
합계	9,343	8,704	8,627	8,288	7,884	7,4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김경덕외, 2013

□ 2020년 농가인구는 2015년 대비 약 38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전 연령구간에서 인구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80세이상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60세 이상 연령의 상대적 비중이 늘어나서 노령화의 심화 현상을 보여줌
- 성별로 보면 50세를 기점으로 여초현상이 나타나며 80세 이상 노인층의 60.5%가 여성

□ 2020년 0~4세미만 아동은 32,000명으로 2015년 48,000명에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0~9세미만 아동 역시 55,000명으로 2015년 73,000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농촌에서 미취학 및 저학년 자녀에 대한 돌봄 노동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돌봄 자녀의 부족으로 인한 돌봄시설의 미개설 등으로 개별 농가 단위에서는 오히려 아동돌봄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소규모 농촌형 육아 해결방안이 필요함

[표 3- 1- 2] 연령별 농가인구추계

(단위:천명,%)

제4차 5개년 계획기간의 농업농촌 여건변화 및 전망

	2015년			2020년			2025년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2,684	1,307	1,377	2,300	1,123	1,177	1,928	947	981
0-19세	311 12.3	159 12.1	153 11.1	234 10.2	119 10.6	118 10.0	182 9.4	92 9.7	89 9.1
20-24세	63 2.4	39 3.0	25 1.8	58 2.5	30 2.6	28 2.4	40 2.1	19 2.0	21 2.1
25-29세	70 2.6	34 2.6	36 2.6	45 2.0	30 2.7	16 1.3	41 2.2	23 2.4	18 1.9
30-34세	67 2.5	40 3.1	27 2.0	46 2.0	21 1.9	25 2.1	30 1.5	19 2.0	11 1.1
35-39세	85 3.2	48 3.7	37 2.7	62 2.7	35 3.1	28 2.4	44 2.3	18 1.9	26 2.6
40-44세	130 4.8	66 5.1	63 4.6	90 3.9	50 4.4	40 3.4	66 3.4	36 3.8	30 3.1
45-49세	170 6.3	82 6.3	88 6.4	138 6.0	70 6.3	68 5.8	96 5.0	53 5.6	43 4.4
50-54세	228 8.5	109 8.3	119 8.6	179 7.8	86 7.7	93 7.9	146 7.6	75 7.9	72 7.3
55-59세	301 11.2	142 10.9	158 1.5	235 10.2	113 10.1	122 10.4	186 9.6	90 9.5	96 9.8
60-64세	298 11.1	139 10.6	159 11.6	290 12.6	141 12.6	149 12.6	227 11.8	113 11.9	114 11.7
65-69세	281 10.5	138 10.6	143 10.4	269 11.7	129 11.4	140 11.9	262 13.6	131 13.9	131 13.4
70-74세	251 9.4	123 9.4	129 9.3	227 9.9	116 10.3	112 9.5	217 11.3	107 11.3	110 11.2
75-79세	223 8.3	109 8.3	114 8.3	178 7.8	87 7.8	91 7.7	161 8.4	82 8.7	79 8.0
80세이상	206 7.7	81 6.2	125 9.1	246 10.7	97 8.7	149 12.6	229 11.9	88 9.3	141 14.4

자료: 김경덕외, 『농업생산·경영구조의 변화와 전망 2000·2005·2010 농업총조사분석』, 농촌경제연구원, 2012의 추계치임

□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9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자 42만9천명, 여자 49만2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남성은 전체인구의 38.2%, 여성은 41.8%가 65세 이상 노인층으로 전망됨.
- 노령여성농업인의 다수가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병을 보유한 채 자가 및 고용농업 노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친화형 소형농기계(농기구), 가사노동 경감을 위한 가사노동의 사회화, 만성질환을 고려한 생활시설 보급이 필요

□ 향후 10년 동안 농가호수와 농가인구는 연평균 각각 1.3%,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25년 농가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이 43.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즉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동시에 지속되면서 농가인구의 감소가 급격하게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1- 3]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취업자 전망

	단위	2013	2014년 (추정)	2019년	2024년	연평균 변화율 (24/14)
농가호수	천호	1,142	1,127	1,055	991	- 1.3
농가인구	천명	2,847	2,786	2,544	2,295	- 1.9
(65세이상 농가인구비율)	%	(37.3)	(38.4)	(40.1)	(43.8)	1.3
총인구중 농가인구비중	%	5.7	5.5	5.0	4.4	- 2.2
농림업취업자	천명	1,520	1,504	1,396	1,278	- 1.6

자료 : 박지연외, 2015

□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이 감소되는 것과 함께 농촌내부에서도 농가인구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농촌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은 32.3%에 이룸. 그러나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5.9%로 축소될 전망이다. 농가의 여성 역시 전체 농촌지역 내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과 관련된 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정책 역시 여성농업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해서 여성농업인 정책이 농촌여성 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함과 동시에 농촌정책에서 타 산업 종사 여성에 비해 여성농업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 6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비농업인 여성취업자와 여성농업인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표 3- 1- 4] 농촌 및 농가인구 전망

(단위: 천명,%)

	2010	2015	2020	2025년
농촌인구	8,627	8,288	7,884	7,423
농가인구	3,063	2,684	2,300	1,928
농촌인구 중 농가인구비중	35.5	32.3	29.2	25.9

자료 : 김경덕외의 추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2) 농업생산구성의 변화

□ 2019년 총 재배면적은 2014년 대비 95.6%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작물별로 보면 사료작물을 제외한 전 작물이 감소하지만 채소류와 특용·약용작물의 재배 면적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농업생산액을 기준으로 쌀을 제외한 채소류와 과일류의 생산액이 완만할 것으로 전망

□ 총체적 농업생산규모는 축소되지만 여성농업인의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채소 및 특수 작물의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여성농업인의 노동강도와 농업의 여성의존도는 심화될 가능성을 보임

[표 3- 1- 5] 품목별 농업생산추계

(단위:천ha)

	2013	2014년 (추정)	2019년	2024년	연평균변화율 (24/14)
쌀	833	816	771	739	-1.0
곡물류(쌀제외)	206	185	154	142	-2.6
채소류	277	265	254	244	-0.8
과실류	153	151	133	123	-2.0
특용·약용작물	73	77	76	75	-0.2
사료작물	237	244	278	312	2.5

자료: 박지연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가경영주의 노령화와 여성화

□ 2000년~2010년간 농가경영주의 변화는 남성(-17.3%)이 여성(-2.7%)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결과 여성경영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2005년 61.0세에서 2010년 62.3세로 증가함

- 70세 이상 경영주가 2000-2010년 동안 63.9% 증가함
- 경영주의 노령화는 여성경영주의 증가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²⁾

[3- 1- 6] 농가 경영주 성별 변화

(단위: 천호,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남성	1,160	83.8	1,056	83.0	960	81.5
여성	224	16.2	217	17.0	218	18.5
합계	1,383	100.0	1,177	100.0	1,177	100.0

자료 : 김경덕외, 농촌경제연구원

□ 2010년 경영주연령별 가구원 수는 30대를 정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가구원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형적인 핵가족의 사이클에서 볼 때 해체되고 있는 핵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원인임. 60대 경영주의 30.7%, 70대 경영주의 50.1%가 독신인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부부농가가 40.3%, 독신농가는 15.6%로 나타남. 부부농가 역시 영농이 후계되지 않을 경우에는 독신가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노령의 독신경영농가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1- 7] 경영주 연령별 농가의 가구원 수

2) 김경덕 등에 따르면 2000년의 경영주를 기준으로 동일 연령대의 코호트 동태분석 결과 2000-2010년 동안 2000년 기준 30-50대를 중심으로 신규진입 및 영농승계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있음. 이는 200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귀농인구 증가와도 맞는 추세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령농가의 영농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령농업인이 영농을 지속하고 있는 다수의 농가로 인해 농업경영인의 노령화 추세는 완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여성경영주의 증가는 평균수명이 더 긴 여성이 배우자의 경영을 이어받는 현상이 많음을 보여줌. 즉 경영주의 노령화는 경영주의 여성화와 함께 진행되는 현상임을 말해줌

제4차 5개년 계획기간의 농업농촌 여건변화 및 전망

구분	2000년	2010년
30세미만	3.21	2.87
30-39세	4.12	3.75
40-49세	3.96	3.68
50-59세	3.04	2.87
60-69세	2.43	2.36
70세이상	2.18	2.10

[표 3- 1- 8] 경영주 연령별 농가의 가족구성 분포(2010년)

(단위:호,%)

연령	형태	독신		부부		부부+ 자녀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30세미만		248	0.1	184	0.0	672	0.3
30-39세		2,025	1.1	1,583	0.3	17,437	7.2
40-49세		8,401	4.6	13,072	2.8	70,485	29.2
50-59세		24,497	13.3	92,297	19.5	89,393	37.0
60-69세		56,415	30.7	174,173	36.7	46,445	19.2
70세이상		91,916	50.1	193,085	40.7	17,074	7.1
합계		183,502	100.0	474,394	100.0	241,506	100.0

4) 농가의 양극화 심화

□ 2000~2010년 동안 농가호수의 증가가 나타난 판매금액 구간은 '판매없음'과 '3천만원 이상' 판매구간임

-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소득악화로 규모확대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농가는 자급적 소농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 특히 1000~3000만원 구간의 농가는 2000-2010년간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구간의 농가를 중심으로 양극으로의 분화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경지규모별 변화를 보면 0.5ha미만 농가와 3ha이상 농가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

면서 농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0.5ha- 3.0ha미만 경작농가들이 0.5ha미만 및 3ha이상 농가들로 분화되는 현상으로 보임
- 그러나 0.5ha미만 농가의 비중이 2010년 4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농가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세농가의 증가에 주목하여야 함

- 그 외 겸업농가, 자가소비농가, 취미농의 증가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3- 1- 9] 경지규모별 농가수 변화

(단위:천호,%)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증감(2000- 2010)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변화율
경지없음	14	1.0	17	1.3	14	1.2	- 1	- 4.3
0.5ha미만	441	31.8	458	36.0	473	40.1	32	7.3
0.5- 1.0ha	379	27.4	331	26.0	288	24.4	- 91	- 24.0
1.0- 1.5ha	220	15.9	174	13.7	142	12.0	- 78	- 35.5
1.5- 2.0ha	132	9.5	107	8.4	87	7.4	- 45	- 34.1
2.0- 3.0ha	114	8.2	93	7.3	78	6.6	- 36	- 31.2
3ha이상	85	6.1	93	7.3	97	8.2	12	14.0
합계	1,385	100	1,273	100	1,177	100	- 206	- 14.9

자료, 김경덕외,

제4차 5개년 계획기간의 농업농촌 여건변화 및 전망

[표 3- 1- 10] 판매금액별 농가 수 변화

(단위:호, %)

연도 판매금액	2000년	2005년	2010년	증감 2000~2010
판매없음	90,612 6.5	120,384 9.5	125,089 10.6	34,477 38.0
100만원미만	214,268 15.5	181,203 14.2	148,287 12.6	- 65,981 - 30.8
100만원 ~1000만원	653,500 47.2	567,730 44.6	525,408 44.6	128,092 - 19.6
1천만 ~3천만원	334,760 24.2	272,899 21.4	226,454 19.2	- 108,306 - 32.4
3천~ 5천만원	59,510 4.3	73,134 5.7	72,623 6.2	13,113 22.0
5천만원 ~1억원	23,146 1.7	41,115 3.2	53,401 4.5	30,255 130.7
1억원 ~2억원	5,865 0.4	11,249 0.9	17,396 1.5	11,531 196.6
2억원 이상	1,807 0.1	5,194 0.4	8,660 0.7	6853 379.2
합계	1,383,468 100.0	1,272,908 100.0	1,177,318 100.0	- 206,150 - 14.9

자료 : 김경덕외,

- 여성농업인 정책에 있어서도 그동안 ‘여성농업인 일반’ (The Women farmer)에 대한 정책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여성농업인‘들’(Women farmers)에 주목하고 연령별, 경영규모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5) 농촌주민구성의 다양화 · 이질화 및 농촌공동체의 약화

- 농가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2014년 겸업농가의 비중이 46.4%로 크게 증가함. 특히 제 2종 겸업농가의 증가가 두드러져 2014년 겸업농가 중 제2종 겸업농가의 비중이 68.5%에 이룸(전체 농가 중 31.9%)

[표 3- 1- 11] 전·겸업별 농가 수 변화

(단위:천호, %)

연도	구분	전체	전업		겸업			
			농가수	구성비	소계	구성비	1종	2종
2000년		1,384	902	65.2	481	34.8	225	257
2005년		1,273	796	62.5	477	37.5	164	312
2010년		1,177	627	53.3	550	46.7	193	356
2014년		1,121	599	53.4	522	46.6	164	358

자료 : 김경덕외, 농촌경제연구원

- 또한 결혼이주외국인과 귀농귀촌인의 증가 그리고 농촌 내 비농업인의 증가로 농촌내부의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농촌 인구 가운데 농가인구의 비중은 34.9%로 농촌 내에서 농가인구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즉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농촌 내에 공존함은 물론 농업인 가운데에서도 귀농인, 제2종 겸업농, 결혼이주 여성 등 농업에 대한 참여의 정도와 관심이 다양한 인구가 늘고 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강한 결속력을 가진 농촌사회가 점차로 이해관계의 갈등 및 분화 현상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함
-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전체 인구의 18%수준으로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농촌인구의 구성 역시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음. 최근에 인구감소 추세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지역을 중심으로 20호미만이 거주하는 ‘과소화마을’이 증가하고 있음
 - 20호 미만 마을이 2005년 2,048개소에서 2010년 3,091개 마을로 불과 5년 사이에 50.9%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과소화마을은 그동안 마을내부에서 이루어졌던 마을단위의 자생적 자원관리 및 공동노동관행, 자발적 사회적 서비스의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함
 - 또한 장기적인 교환을 매개로 한 공동체성의 약화와 사회적 자본의 소실을 의미함. 자율적 기능을 상실한 마을단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근대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됨
 - 귀농인, 농촌 내 비농업인 등 다양한 경험과 이력을 가진 사람들과의 새로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농촌외부와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이 요청됨

6) 직거래 등 신유통의 발전

□ 농가의 규모 확대와 아울러 산지유통조직 및 판매조직의 규모화로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으로의 출하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 출하농가 및 귀농인 등 기존의 유통경로에 참여하기 어려운 농가들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음

- 최근에는 로컬 푸드의 성장, 꾸러미사업, 농장직판 등 다양한 접점에서 직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음. 직거래의 활성화는 식품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향과 결합되어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유통의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음. 또한 거래단계의 축소로 인한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농가에는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유통경로로 정착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현재 직거래의 판매비중은 전체 농산물 유통의 4%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한편, 새로운 소통도구로서의 인터넷 기반 사업체 등장함으로써 사이버 거래가 늘어나고 있음. 사이버 거래소를 통한 농산물판매는 2009년 52억원 수준에서 2012년 1.1조원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7)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확산

-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는 분산된 건강한 소규모 가족농들이 지역의 부족자원을 발굴하여 규모는 작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하고 체험관광도 가미하여 부가가치를 올리는 경영형태를 의미함
 - 특히 6차 산업은 가공 및 체험학습, 농산물 판매 등에서 여성의 기능 및 감성이 발휘되면서 농촌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음

8) 사회적 경제의 대두

□ 금융위기이후 세계적 경기침체 및 불안정성 고조이 고조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음

- 또한 정책적으로 협동조합법 제정 등 사회적 기업을 통한 주민육구의 자립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류가 형성되고 있음. 중앙부처의 마을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에는 농촌에 필요한 복지 교통 등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공동체 회사를 육성함으로써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육성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의 대두를 계기로 그동안 마을 단위 혹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무상의 돌봄 서비스와 육아와 같은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활동 등이 소득창출을 위한 창업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사업영역은 그동안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여성들에게 유리한 창업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9) 2013- 1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 2013- 1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이하 발전계획)은 세계경제의 불안과 저성장, 기후 변화 등 대외 여건과 국민의 고차원적이 욕구 표출 및 농업인구의 노령화·과소화 등 내부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농정의 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이 전환함

- 농정목적 : 농업인의 아이디어와 잠재력이 극대화되도록 효율성과 농업인 행복의 동시 추구
- 농정대상 :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정대상 범위를 개별 경영체 중심에서 지역공동체와 네트워크로 확대
- 정책내용 : ICT·BT 및 이종산업간 융복합 활성화 추세에 맞추어 농업·식품의 개별적 접근에서 생산·가공·관광 등이 융합된 6차산업 중심으로 통합적 접근
- 접근방법 : 농업 경쟁력이 아이디어·창의력 및 지역특성에 좌우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 정부 주도를 벗어나 지역·주민참여와 책임을 강조

[표 3- 1-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패러다임

구 분	과거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농정목적	효율성 경쟁력	효율성 및 농업인 행복 동시 추구
농정대상	개별 경영체 중심	지역 공동체 중심
정책내용	농업·식품의 개별분산적 접근	생산과 융복합한 6차산업
접근방법	중앙정부 주도 획일성	지역특성, 지방·주민참여 및 책임

□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계획과 관련해서 2013- 2017년 발전계획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6차 산업과 연계하여 가족농, 겸업·영세농의 일자리 및 소득원 확충을 위해 농촌형 사회적기업, 공동체농업 육성 등을 추진함
 -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해 6차 산업지구제를 도입하고 6차산업 코디네이터 양성 및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정
 - 농촌체험, 관광 외에 힐링, 이벤트, 문화, 캠핑 등 서비스 다양화 추진
 - 소규모 제조 가공식품에 대한 지자체 조례제정 확대 및 농가민박 조식 유료제공 허용 등 제도개선 추진
 - 산림치유지도사(2017년까지 500명) 양성 및 치유의 숲(34개소), 자연휴양림(152개소), 유아숲체험원(8개소), 산림치유단지(2개소), 산림치유마을(10개소), 도시숲(2,310개소) 육성
 - 식품산업진흥을 위해 한국농수산대학에 식품관련 교과목(전통식품, 발효식품)을 신설
- ② 농업인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중심지와 마을 간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 행복생활권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령자의 공동이용시설 확대,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복지서비스의 체감도를 향상함. 또한 지역 간, 부처 간 연계강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성을 높임
- ③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숍(직매장) 개설을 확대하고 전략적 홍보를 추진함. 지역단위 로컬푸드 협의회 구성, 학교급식 등 대량수요처 발굴
- ④ 2017년까지 핵심농업경영인력 12만명 육성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신지식농업인, 농업마이

스터, 강소농을 핵심경영체로 육성함.

- 탄탄한 가족 경영체 육성 및 농업법인의 건실화 유도, 가업승계농의 영농정책 지원
- 후계농 육성을 위해 농대학생과 선도농가 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원, 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 확대 운영(2013년 390명 -> 2017년 600명 수준으로 확대)
- 가족농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컨설팅 및 세제지원 확대, 토지증여세 감면 유지, 영농상속 공제액을 중소기업 수준인 50억원으로 확대(기재부협)

⑤ 고령화, 양극화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업농(경영여건개선, 재해보험), 중소농(들녘별경영체, 6차산업), 영세고령농(공동체경영, 사회안전망) 등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

- 2017년까지 쌀들녘경영체 500개, 밭 들녘경영체(91개), 사회서비스 공동체 100개를 육성
- 발농사용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6년까지 400개소, 농기계은행을 2017년까지 800개소로 확대 설치. 영세고령농의 농작업 대행을 확대하여 영농부담을 완화할 계획임. 또한 발기반 정비사업을 확대하여 기계화율을 높임
- 농촌공동체회사,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공동경영체를 육성 지원하고 경관, 환경개선활동, 체험 관광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영세고령농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함. 2017년까지 복지 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100개소, 교통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 70개소를 육성

⑥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부처간 연계협력,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농촌여건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생활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강화함

- 마을-농촌중심지-인근도시를 연계하는 농촌중심지 250개 육성, 농촌마을 3,200개소를 정비함. 농촌중심지 읍면 소재지에 교육(방과후 학교), 문화(소공연장), 보건의료(보건지소) 등 기초서비스 공급을 집중하여 30분내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소규모 학교활성화, 문화순회사업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오지교통 서비스 협동조합, 농촌형 마을버스 운행, 농촌고교 무상교육 등 농촌형 교육문화여건을 개선함. 또한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등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을 확충함.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하여 농작업관련 질환연구 및 사전예방 교육 강화하고 지방의료원 등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여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국민연금 기준소득액을 상향조정하여 연금지원 수혜율을 높이고 공동이용시설의 가사도우미를 2000개소로 확대함
- 읍면사무소, 군청, 우체국·농협 등 지역조직, 공동체 등 다양한 전달체계 활용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함. 농협의 행복나눔센터 설치와 방문 복지서비스를 실현함. 또한 공동

제4차 5개년 계획기간의 농업농촌 여건변화 및 전망

생활형(마을형, 중심지형)을 비롯한 공동주거,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등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거점으로 활용함.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공동체를 육성함.

- 어린이집 없는 읍면에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및 학자금지원, 농지연금과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단가 개선, 출산전후 농가도우미지원, 영농도우미(농촌 평균임료금 반영), 가사도우미(교통비, 식비 반영), 공동이용시설 가사도우미 지원확대(2017년 2,000개소), 농업인재해안전보험법을 제정하여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
 - 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해 거점별 활성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공동체의 핵심리더를 2017년까지 10만명 육성함
- ⑦ 쌍방향 맞춤형 농정강화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각 종 직불제 정보와 일원화하고 농림지원사업과 시스템간의 통합 연계를 확대함. 또한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하고 생산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협치 농정의 기반을 구축함.
- 복합적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부처 내외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등록제 등 지역농정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함

10) 공적 영역에서의 참여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지향하는 여성정책

-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은 사회 각 분야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참여확대와 돌봄의 공유와 사회화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주요 과제로 선정
- 농촌내부의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서 농촌 및 농업관련 공적 영역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가 강조되어야 할 것임
- 농촌 내에서도 돌봄 노동의 공유와 사회화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노동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을 균형있게 양립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이 도입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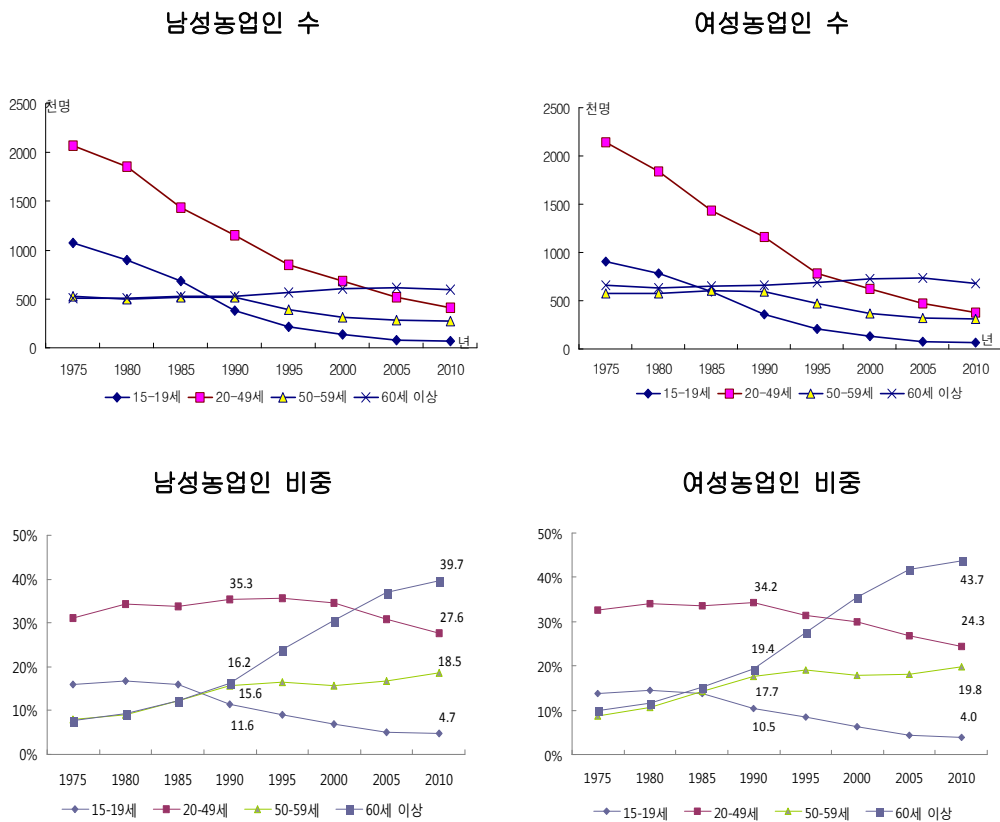
2. 여성농업인의 실태와 향후 전망

1) 여성의 농업참여 확대, 농업의 여성의존도 확대

- 농업인구의 감소로 여성의 농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 농가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함께 여성의 농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여성농업인의 수는 1990년 338만 명에서 2010년 156만 명으로 53.8% 감소함. 성별 비중에 있어서는 농림업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은 63%로 증가하여 농업의 여성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여성노동의 비중 역시 2010년 60.5%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 2- 1] 농가인구의 연령별 인구수와 비중



자료 : 농림수산물부. 각연도. 농림어업 주요 통계.

- 연령별로 보면 성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데 20~49세 인구 비중은 1990년 남성농업인 35.3%, 여성농업인 34.2%이었으나 2010년에 남성농업인은 27.6%, 여성농업인 24.3%로 감소함. 그러나 60대 이상은 1990년 남성농업인 16.2%, 여성농업인 19.4%에서 2010년 남성농업인 39.7%, 여성농업인 43.7%로 크게 증가함. 이는 여성 의존도가 높은 작목으로의 전환과 함께 이러한 품목의 기계화율이 낮은데 기인함
-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이 농사일의 50- 75%를 담당하는 비

제4차 5개년 계획기간의 농업농촌 여건변화 및 전망

중이 44.1%로 2008년 19.4%에서 크게 늘어났으며 30대이하를 제외하면 전 연령층에서 농사일의 50%이상을 담당한다는 비중이 50%를 넘고 있음

[표 3-2-2]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 비교

단위: %

	2008년 조사				2013년 조사			
	0~20%	20~49%	50~69%	70~100%	0~24%	25~49%	50~74%	75~100%
전체	9.4	47.0	19.4	24.2	7.3	27.2	44.0	21.5
30대 이하	21.4	52.4	23.8	2.4	25.6	42.2	26.4	5.3
40대	10.0	60.6	20.0	9.4	5.8	36.8	48.4	9.0
50대	9.5	55.5	19.4	15.3	4.8	29.8	54.5	10.9
60대	6.9	43.4	21.6	28.1	5.1	25.3	46.1	23.5
70대 이상	10.9	37.2	15.9	36.0	8.9	15.0	32.8	43.1

자료 : 2008년,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표 3- 2- 3] 농가경영주 연령별 농가 및 평균 연령

(단위 천호,%, 세)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평균 연령
2005	1,273 (100.0)	42 (3.3)	186 (14.6)	303 (23.8)	430 (33.8)	311 (24.5)	61.0
남자	1,056 (83.0)	40 (3.8)	174 (16.5)	269 (25.5)	343 (32.5)	230 (21.8)	60.0
여자	217 (17.0)	2 (0.9)	12 (5.5)	34 (15.7)	88 (40.6)	81 (37.3)	65.7
2010	1,177 (100.0)	33 (2.8)	140 (11.9)	287 (24.4)	352 (29.9)	364 (30.9)	62.3
남자	959 (81.5)	29 (3.0)	127 (13.2)	252 (26.3)	286 (29.8)	265 (27.6)	61.4
여자	218 (18.5)	4 (1.8)	14 (6.4)	35 (16.0)	67 (30.6)	99 (45.2)	66.3
증감	△96	△9	△45	△16	△78	53	
증감률	△7.5	△21.8	△24.4	△5.2	△18.1	17.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10) 농림어업총조사

- 한편 경영주의 노령화와 함께 경영주의 여성화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경영주의 연령은 2010년 남성 61.4세, 여성은 66.3세로 높아졌으며 여성경영주는 75.8%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임

2) 농업관련 2차, 3차 산업의 확대에 따른 여성농업인에 대한 역할 기대 상승

□ 기존의 여성농업인이 주로 행하던 가사노동, 돌봄노동, 지역사회활동의 연장선 상에서 사업화의 가능성 도출

- 기존의 여성농업인이 주로 행하던 가사노동, 돌봄노동, 지역사회활동의 연장선 상에서 농업관련 2차 3차 사업화의 가능성 도출됨. 201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업 생산 외에 농업과 관련된 소득활동 참가율은 39.2%로 2008년 13.1%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³⁾ 가장 많은 활동은 직거래를 포함한 농산물 판매에 65세이하 여성농업인의

3) 2008년조사는 자영업,취업,부업, 일일노동 등의 농외소득활동 참여비율이며, 2013년조사는 농업의 2차, 3차 소득활

제4차 5개년 계획기간의 농업농촌 여건변화 및 전망

20.7%, 65세 이상 여성농업인의 13.2%가 참여하고 있었음. 그러나 농산물가공과 농촌 관광은 각각 4.9%, 0.3%로 낮은 수준임. 연령별로 보면 농산물가공은 30대 이하, 관광은 40대가 상대적으로 참여비율이 높는데 이들의 농업생산노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과는 대조를 보임

[표 3- 2- 4] 여성농업인의 2·3차 소득활동 참여 현황

		활동 없음	농산물 판매	농업 임금노동	시간제 근무	농산물 가공	자영업·취업	농촌 관광
전체		60.9	17.4	15.6	5.8	4.9	6.5	0.3
구분	65세이하	54.2	20.1	17.8	8.4	6.1	9.0	0.5
	65세이상	72.2	13.2	12.1	0.8	3.1	2.1	0.0
	다문화	72.2	3.4	5.8	16.6	1.0	7.8	0.7
연령	~30대	49.1	28.5	11.1	17.6	11.5	16.3	0.1
	40대	47.3	20.5	18.8	13.2	6.1	13.5	0.9
	50대	55.0	19.6	19.1	5.5	5.8	6.9	0.2
	60대	66.7	15.9	16.2	1.6	3.5	1.9	0.2
	70대~	75.0	11.8	10.4	0.8	3.0	2.2	0.0
규모	소규모	62.0	16.3	14.4	6.7	4.7	6.1	0.1
	중소규모	57.1	18.7	18.2	4.6	4.4	8.4	0.5
	중규모	60.8	15.3	19.6	4.2	3.9	4.8	0.2
	중대규모	70.0	19.6	7.0	5.5	6.2	5.5	1.3
	대규모	58.1	28.5	10.3	10.0	14.8	7.1	0.0

자료 :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그러나 51.2%의 여성농업인이 향후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판매 28.9%, 가공 8.9%, 관광 6.2% 등이고 전 연령층에서 참여의사가 높았음. 참여 이유는 추가소득마련과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 이유가 40%로 높게 나타남. 애로 사항으로는 40대는 기회나 정보부족, 자본부족, 능력부족, 50대 이후는 신체적 한계 등의 애로를 지적함

[그림 3- 2- 1] 농업의 2·3차 소득활동 의향과 분야

(2008년)

동을 포함한 응답임



[그림 3-2-2] 향후 농업의 2·3차 소득활동 의향과 분야(계속)

(2013년)



자료 : 2008년,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3)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주요 제공자로서 새로운 역할

-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필요로부터 발생하는 사업의 기회를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진 상호호혜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을 의미함.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주요 사업 영역은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과거 공동체가 해체되기 이전에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 등에 의해 호혜적 관계를 통해 해결었던 것임
 - 그리고 이러한 필요와 욕구의 많은 부분은 재생산노동을 주로 담당하였던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었던 역할이었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육성하는 농어촌공동체회사의 활용영역을 보면 농식품산업형(전통 식품제조, 로컬푸드, 학교급식 자재공급, 농가레스토랑), 노동교류형(체험관광, 문화공방 등), 사회복지 서비스형(반찬배달, 노인복지, 방과후 공부방 운영, 결혼이민 여성 외국어 강사) 등 주로 여성친화적 사업영역임

제4차 5개년 계획기간의 농업농촌 여건변화 및 전망

- 또한 자활기업의 경우에도 간병, 집수리, 청소, 음식물 재활용 등 여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업영역임. 즉 사회적 경제가 창출하게 될 다양한 일자리는 여성친화형 노동의 영역으로 여성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4) 여성의 전문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의식 증대

- 여성농업인의 농업참여가 늘어나는 것을 계기로 스스로를 (공동)경영주로 인식하는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2008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결과 본인을 전문농업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38.6%에 이르고 있으며 2013년 실태조사에서는 ‘공동 경영주’ 혹은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이 42.0%에 이룸. 60대와 70대가 단독 경영주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 27.0%, 50대 29.6%가 공동경영주로 인식하고 있음

[표 3- 2- 5] 여성농업인이 인식하는 자신의 지위

		경영주			가족종사자		
		공동경영주	경영주	계	무급	유급	계
연령	30대 이하	11.1	2.7	13.8	84.3	1.8	86.1
	40대	26.7	10.5	37.2	59.5	3.3	62.8
	50대	29.2	9.0	38.2	59.7	1.9	61.6
	60대	20.9	23.7	44.6	52.6	1.8	54.4
	70대 이상	10.2	39.5	49.7	43.4	2.4	45.8
주 품 목	논벼	20.0	18.0	38.0	58.4	2.3	60.7
	과수	27.7	15.8	43.5	52.3	4.0	56.3
	노지채소	16.1	31.3	47.4	49.4	1.1	50.5
	시설채소	27.7	10.6	38.3	61.3	0.4	61.7
	화훼/특작	21.1	9.6	30.7	67.1	2.2	69.3
	전작	14.6	30.5	45.1	48.2	3.5	51.7
	축산	45.5	9.8	55.3	42.4	0.0	42.4

자료 : 2013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 경영주로서의 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농업의 상업화와 함께 다양한 취업 및 창업기회가 늘어나고 직불금 등의 정책자금의 수혜 기회가 늘어나면서 본인의 노동력을 기회비용적 관

점에 대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인식됨. 그러나 농가경영체 등록에서 농업에 취업한 가족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경영주로서의 객관적 입증 근거는 여전히 부족함. 2015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등록 절차 및 공동경영주로서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임신 출산, 육아, 자녀양육의 재생산 노동으로 농업참여는 제약

- 여성농업인의 농업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별로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비중은 차이를 보임. 농업에 25%이하로 참여하는 비율이 30대이하에서는 29.2%인 반면 40대부터는 5.9%로 크게 낮아짐. 30대 이하 여성이 여전히 임신, 출산, 육아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이는 M사이클을 보이는 비농업부문 취업과 같이 뚜렷하지 않지만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농촌형 생애사이클이 존재함을 의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이상의 농업을 담당하는 여성이 30대 이하에서도 32%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특히 가사, 육아 등에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한편 201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의 수는 감소했으며 아동을 집에서 보육하는 비율도 감소했으나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비율은 67.8%에 불과하며 그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보육시간이 짧거나, 보육비 부담, 보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를 지적하였음

6) 여성농업인의 노령화 심화

- 6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노령여성에 대한 농업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60대 이상에서 자가 농업일을 50%이상 담당하는 비중이 70.1%, 70대 이상에서 75.8%에 이르고 있음. 65세 이상 여성농업인의 75%가 자가 농업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201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여성농업인 가운데 15.8%, 70대이상 여성의 10.3%가 농업임노동에 고용되고 있었음. 이들은 현재 고용노동 및 품앗이 등으로 가족노동력 부족을 지원하는 중요한 농업 인력이며 소규모 농업을 자경하는 중요 생산 및 경영인력임. 4) 이들 중 다수는 다양한 형태의 질환을 보유한 채로 농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가면서 독거 거주하는 노령여성(농업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 고령여성 고용농업인력은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노쇠한 것으로 추정됨.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과의 면접결과 주로 앉아서 노동하는 이들은 농장내에서는 노동이 가능하지만 걸어서 노인회관 등의 공동취사장으로 이동하여 식사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의견이었음. 따라서 공동취사장 운영도 좋지만 이들에게는 도시락배달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농장주 입장에서 더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편 고령여성농업인의 영농규모는 영세하여 65세이상 여성농업인의 40.3%가 판매금액은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영농을 지속하고 있음. 이들 고령의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과 판매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및 복지수요의 증가가 예상됨. 노령여성의 대다수가 독거노인 경영주로서 영농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령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기구 개발, 로컬푸드 등 소규모 다품목 위주의 판매방식, 젊은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사법인 등의 새로운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 노동능력을 상실해 가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식사 및 세탁, 주거 등 사회적 케어의 필요성 대두됨.

7) 귀농여성의 새로운 유입

- 최근 귀농 및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2014년 귀농가구는 11,144가구로 2013년에 비해 221가구가 증가하였음. 귀농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50대가 39.6%, 40대가 22.4%로 40-50대가 62.0%를 차지함. 가구주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69.4%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함. 전입가구원수를 보면 1인 전입가구가 52.1%, 2인가구가 23.7%로 1-2인가구가 82.9%를 차지함. 2014년 귀농한 가구의 가구원을 보면 여성이 8,167명으로 43.2%(읍부 44.3%, 면부 43.0%)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이하의 여성비율이 45.5%를 차지하고 있음. 이들 귀농가구의 여성가족원은 기존 거주 농업인에 비해 젊을 뿐 만 아니라 고학력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됨

[표 3- 2- 6] 귀농 전입가구원의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성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전국	18,864	10,697	8,167	5,219	2,980	2,239	3,407	1,929	1,478	6,009	3,274	2,735	3,160	2,019	1,141	1,069	495	574
읍부	4,193	2,332	1,861	1,417	802	615	808	449	359	1,163	617	546	608	377	231	197	87	110
면부	14,671	8,365	6,306	3,802	2,178	1,624	2,599	1,480	1,119	4,846	2,657	2,189	2,552	1,642	910	872	408	464

자료: 통계청, 2014 귀농귀촌인 통계

- 여성 귀농가족원의 경우 농업일 참여정도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농업 경험이 부족하거나 과도한 농업노동에 대한 저항감 등으로 농업참여에 소극적인 여성들도 존재할 것으로 추측됨.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사회적 자원을 농촌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기업 등에서 활동함으로써 농업의 6차산업 혹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귀농여성들의 인적 사회적 자본이 기존의 여성농업인과 정책수혜 등에서 경쟁관계에 놓이는 등 갈등을 낳기도 함⁵⁾

8) 결혼이민 여성의 정착

- 최근 신규 결혼이민 여성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결혼 후 이주한 여성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농촌내의 새로운 인구층을 차지함. 201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여성의 81.1%는 농사일 담당비중이 50%미만이며, 25%미만의 농사일을 하는 여성이 45.8%에 이르고 있음
- 내국인 여성에 비해 농업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업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결혼이민 여성들이 주요 농업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인해 내국인 여성농업인이 지원의 형평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⁶⁾ 그러나 농사일의 50%이상을 담당하는 결혼이민 여성 17%에

5) 4개 여성농업인단체 회원들과의 인터뷰에서 귀농여성들이 정보에 빠르고 행정 등에서 요구하는 문서화 작업 등에서 기존 여성농업인보다 앞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각종 정책수혜를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

이르는 등 일부 결혼이민 여성의 경우 중요한 여성농업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자가영농규모, 학력, 결혼 전의 사회적 배경 등 결혼이민 여성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한 차별적 정책이 필요함

9) 여성농업인 내부의 이질성 증대

- 농가의 소득 및 경영규모별 양극화는 여성농업내부의 분화 및 양극화를 의미하며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우 노령화와 함께 진행되면서 농가의 양극화는 동시에 성별 연령별 농가의 양극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 점차로 노동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노령의 여성농업인이 소규모의 농업을 승계하면서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반면 청장년층의 여성농업인은 FTA체결 등으로 불안정한 농업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규모 확대의 압력을 받는 등 대규모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한편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의 귀농여성들의 유입, 결혼이민 여성의 증가, 농촌내부의 비농업가구의 증가 등으로 이질적인 경험과 사고를 가진 주민들이 혼주하는 공간으로 농촌사회가 변모하고 있음. 그리고 귀농여성농업인, 결혼이주 여성농업인 등과의 잠재적 갈등 요소가 잠재하고 있음
- 따라서 영농규모별, 생애주기별 다양하고 차별적이고 섬세한 여성농업인정책의 필요성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을 가진 여성들이 가진 능력과 자원을 모아서 농촌사회의 발전을 꾀하는 방향의 모색이 필요함

3. 해외 여성농업인 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1) 프랑스

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 1980년 이전까지 여성 배우자의 지위는 농업경영주의 협력자였음. 경영주의 협력자 지위는 1973년부터 인정되었고 가족관계 내이지만 여성농업인의 노동이 인정됨. '1980년 농업기본법' 제정 이후부터 점차 여성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함.

- 1980년에 부부 간 상호 위임(mutual mandate)에 따라 '함께 영농하는 동료'의 지위를

6) 4개 여성농업인단체의 회원들과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의견임

획득하고 필요한 행정 서류를 작성할 권리를 갖게 되었고, 1982년 가족농의 '사실상의 회사'에서 완전한 권리를 갖는 주체, 즉 공동경영인으로 참여가 가능하여 여성도 자신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주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됨

□ 1985년 유한책임영농회사(EARL)는 여성농업인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각 배우자는 자신의 작업과 책임을 개별화하여 회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그 이전 공동영농회사(GAEC)에서 후계자인 아들은 공동경영주가 되었지만 배우자는 경영주가 되지 못하였던 것을 철폐한 것임. 1988년에는 여성농업인도 개별적으로 귀농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됨

- 한편 '1999년 농업기본법'에 '함께 영농하는 동료'라는 여성배우자의 지위가 없어지며, 이를 대체하여 '협력자(collaborateur) 가족종사자'의 지위가 신설됨. 다만, 경영주인 남편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었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진전됨

□ '2005년 농업기본법'은 영농활동 수행 중인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 임노동자, 가족종사자 중 하나의 지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 이전 '협력자'가 되기 위해 더 이상 경영주인 남편의 허가가 필요 없게 되었고, 동거인이나 시민연대협약(PACS)에 따른 구성원도 이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음. '2010년 농업현대화법'은 마침내 부부도 공동영농회사(GAE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프랑스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함께 여성농업인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임. 특히 2012년 농업회의소 의원 선거 명부 작성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여성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였음. 그에 따라 2013년 선거로 선출된 전국 4,051명의 상공회의소 의원 중 여성농업인이 1,100명이고 그중 여성농업인 3인은 농업회의소 의장으로 선출됨

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기구

□ 프랑스에서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다음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됨. 첫째, 비

제4차 5개년 계획기간의 농업농촌 여건변화 및 전망

임금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써 농업경영주, ‘협력자’, 가족종사자 등 250만 명이 대상임. 둘째, 임금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써 370만 명이 대상임. 이 두 가지 제도는 모두 다음 4가지 분야에 걸쳐 사회보장 급여가 지급됨. ① 질병, 출산, 장애, 노령화 ② 산업재해, 직업병 ③ 퇴직연금, 유족연금 ④ 가족수당(주거수당 포함)

- 한편, 성별에 관계없이 농업 종사자와 그 가족은 AMEXA(Assurance Maladie, Maternité et Invalidité des Exploitants Agricoles: 질병, 출산 및 농장운영자 보험)에서 의료비와 약제비,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비용, 장애연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함.

□ 농업 분야의 임금노동자는 ASA(Assurances Sociales Agricoles)에서 건강, 출산, 장애 그리고 노령화와 관련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저소득층은 추가 CUMC(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omplémentaire)에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외에도 특수 상황에 처한 농업인과 그 가족에게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급여가 지급됨.

-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 적극적연대소득)
- API(Allocation de parent isolé: 한부모가족지원금)
- AAH(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장애인지원금)

□ 농업 분야의 사회보장제도 확립 과정

- 1945년 농업사회보장공제(MSA) 설립을 시작으로 1951~1958년에 농업 부문의 임금노동자를 위한 노후보험이 정착됨
- 1952년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노후보험 설립과 1960년 BAPSA(농업사회보장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2009년 MSA로 이관), ASS(보건사회활동)이 시행되었고, 1961년 AMEXA 설립, 1966년 ATEXA(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농업재해보험)가 설립되어 자유 가입하게 됨
- 1972년 농업 분야 임금노동자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재해보험이 설립되었고, 1977년 여성농업인의 출산휴가 시행(1986년부터 8주)과 대체인력 채용 시 보조금이 지급되었음. 2002년 ATEXA 개혁으로 농업인의 직업 위험 예방을 위한 기금(MSA가 운용)이 설립되었고, 2003년 농업 경영주나 농업회사의 경영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의무추가연금’ 제도가 도입됨

□ 최근 2008년에 여성농업인의 출산휴가 기간이 여성 임금노동자의 기간과 같아짐

□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 여성농업인은 다음 3가지 지위 중 하나를 의무 선택할 수 있고, MSA(농업사회보장공제)는 각 지위별로 다르게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 첫째, ‘협력자’는 MSA 기준 연간 기여금의 3.2%에 해당 금액을 매년 납부하면 개인노령연금(AVI)을 수령할 수 있음. 매년 413유로를 추가 납부하면 퇴직연금 계산 시 16점이 추가됨. 다만, 점수가 추가되더라도 60세 퇴직 시 퇴직연금은 농업경영주보다 더 많을 수 없음. 연간 22유로를 납부하면 장애나 산재 발생 시 연금 혜택을 받음

- 둘째, 경영주(공동경영주 포함)는 배우자 각자가 자신의 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각각 납부해야 하고 질병, 출산, 산재 그리고 가족수당 등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 산정에 필요한 납입연수, 납입금액 등도 각각 따로 계산됨

- 셋째, 임금노동자는 ‘급여’가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됨. 기여금, 수당, 퇴직연금 등은 임금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비임금노동자보다 높음

□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 무급으로 영농활동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해당됨. 2005년 5월부터 무급가족종사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함. 만약 5년 후에도 계속 영농활동에 종사하려면 다른 지위를 획득해야 함

□ 무급가족종사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한 기여금은 농업경영주가 납부함. 또한 무급가족종사자는 AMEXA와 ATEXA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1년 1월부터 무급가족종사자도 ‘의무추가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2) 이탈리아

가. EU의 지원정책

□ EU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음.

□ 첫째, 다양성을 지원함. 시장에 개입하여 수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농업 활동의 다면성을 살리는 여러 활동으로 수익의 다각화를 도모

- 농업은 식품의 원료 생산뿐만 아니라 제품 가공, 환경과 지역의 보존, 여가 시간 활용, 사회 포용, 다양한 종류의 공공재 생산(식품 문화, 전통, 기능성 식품 등) 등의 중요성을 지님. 이탈리아에서 농업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국내 법규를 변경한 것이 ‘다양성’으로 인한 효과를 얻는데 주효함
- ‘농업의 현대화와 예비법’은 농기업 내 가공, 직판 등을 허용하고, 농업의 새로운 기능을 위한 지원(농촌관광, 체험 농장, 사회적 포용 등)으로 중소 농기업, 특히 여성 농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얻었음. 농촌관광은 2000년 7,000개에서 2010년 1만 9,000개로 크게 증가하고 조건불리지역에도 분포하고 있음.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운영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35.3%임. 영농 체험장은 2002년 400여 개에서 2010년 2,000개 이상으로 증가함.

□ 둘째,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 개입. 농기업만이 아니라 지역과 환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지원.

- 중소 농기업은 기타 활동 및 농업의 다양한 기능 속에서 정해지는 관계, 그리고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경제적 공간을 발견하였고, 그 체계의 참여 메커니즘 내에서 새로운 문화적 공간을 창조함. 이때 중소농기업, 특히 여성 농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상향식(bottom-up) 접근을 통한 가치 재고임. 즉, 여성농업인이 거버넌스의 복잡한 조직에 참여하는 법을 배워야 함.
- 예를 들면, 농촌개발계획(PSR) 중 유기농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고 유기농업은 생산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판매장을 비롯하여 시장, 식당, 커피전문점, 바, 아이스크림 매장, 요리학교에서 유기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 농식품체계에서 확대되기 때문임. 이탈리아 유기농업은 2010년 전체 재배가능경작지(UAA)의 8.6%에서 이루어지며 유기농업 경영체는 2.6%, 유기농업 생산 및 가공은 식품시장의 3%에 이르고 있음. 이 중 이탈리아 정부에서 인정받은 제품 4,500종류, 유럽 인증(DOC, IGP) 233종류가 있음

나.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이탈리아 Food Valley 발전의 근간이 되었음. 협동조합은 소규모 생산자들이 목표를 나누고 조율과 로비가 가능한 조직적인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함. 생산 체인의 어딘가에는

언제나 협동을 통하여 제품을 보호하는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이탈리아 고유의 품질(마크)을 보유한 제품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이 협동조합이 여성들이 경영하는 전통적인 기업, 예를 들면 청과물, 와인, 유제품, 특히 오늘날 선구자적인 새로운 기업들인 최초의 유기농 커피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 중요한 것은 협동이 동의, 참가, 경제적 관심사의 공유, 상향식 절차를 통해서 발전해야 한다는 것임

다. 소비자 운동

□ 이탈리아에서 소비자운동은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소비자의 식품 소비는 가격뿐만 아니라 윤리, 건강, 환경, 상징적 가치 등에 의해서도 결정되며 이와 같은 가치를 근간으로 발전한 식품 소비자운동(Consumerism)이 식품 소비에 직접 영향을 미침. 이탈리아의 소비자운동(Consumerism)은 로컬푸드와 직거래 판매라는 새로운 수요로 나타남

- 첫째, '킬로미터 제로(km 0) 운동'은 0km의 짧은 생산 체인으로 환경, 지역 소비, 신선한 제품, 영세 농업인의 보호, 건강한 식품을 추구하는 운동임. 이 운동은 공동구매단체(Gruppi di Acquisto Solidale, Gruppi di Acquisto Collettivo)를 통해 생산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추구함. 이 영향으로 중소농기업, 특히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확대되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음
- 둘째, 직거래 판매장이 크게 증가하였음. 직거래 판매장 형태는 농기업 내부의 매장이 가장 많은 68%이지만 그 밖에도 지역 내 시장 30%, 직영점 14%의 순이며 가정배달과 지역 내 상점에서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직판되는 상품의 종류는 와인, 청과물, 치즈의 순이지만 그 밖에도 우유, 축산물, 저장식품, 화장품 등 종류도 다양함. 이탈리아 농민시장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중북부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라. 농업인단체의 활동

□ 중소 농기업의 농업인단체인 콜디레티(Coldiretti)와 치아(CIA)는 전통적으로 중소 농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함. 예를 들면, 회계(세금 관련 영수증 등), 공동농업정책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연금, 육아 지원, 농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회계장부 작성, 지원 정책을 요구하기 위한 로비 등임

□ 이 농업인단체 내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각 영역별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Donne

in campo(여성농업인 협회), Donne impresa(여성농기업 협회)임. 이들은 여성농업인에게 참여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여성농업인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주요 활동은 Campagna Amica(시골친구)라는 직거래와 신용대출의 활동임. 콜 디레티는 전 지역에서 농업인으로 구성된 'Campagna Amica'라는 이름으로 구매단체를 위한 공급단체를 조직함. 또한 회원에게 신용대출, microcredit(창업대출)을 포함하는 대부서비스도 제공함

마.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 오늘날 여성농업인은 농업에서 새로운 주인공으로서 부각되며 새로운 활동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여성농기업의 특징은 다각화되어 있고 보다 노동집약적이고, 소규모의 전문화된 유통이나 GAS, GAC 같은 소비자단체와 농민시장, 농가 내 판매 등 직접적인 유통 채널을 통해 경영자의 대인관계 능력의 가치를 재고함

- 이탈리아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지원에서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은 큰 특징

- 이탈리아에서 정치, 협회, 시장 등에 의해 촉진되었거나 자생적으로 탄생한 지역 기반의 경험이 여성농업인에게 준 영향이 크기 때문임. 여성농기업들과 지역 발전의 잠재성에 있어 근간이 되는 Cross fertilisation(상호교류)임. 연계 네트워크와 지역발전 없이 여성농기업, 나아가 중소 농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음. 그 이면에는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업부문별 정책, 시장의 구체적 활동이 있음

□ EU의 역할

- EU는 성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근로시장에서의 평등, 봉급의 평등, 고용과 경력에서의 차별 철폐 활동을 전개하였고, 한편으로는 성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리스본 전략의 지표, 여성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할당제를 실시

- EU의 여성 정책에 따라 이탈리아 국내법은 법적 차별(명예살인, 간통)과 경제적 차별에서 법적·경제적 평등, 봉급의 계약상 평등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기회균등을 위한 이탈리아 기관

- 기회균등부
- 노동부의 ‘기회균등국가위원회’: 직업세계의 균등(40명): 노동부 외에도 기업, 노동조합, 여성운동대표들이 참가하고 있음.
- 정치에서 기회균등을 위한 총리실 내 ‘남녀기회균등위원회’
- 광역·기초지자체 의원: 성 평등 정책의 촉진과 감시를 위한 제도적 역할
- 행정기관 내 ‘기회균등위원회’, 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기관 및 대학 조직(1986년 이후)
- 광역·기초 지자체 ‘성평등위원회’
- 산업부 내 ‘여성기업위원회’
- 1997년부터 기회균등국 내에 ‘여성기업관측소’
- 1997년부터 기회균등국 내에 ‘여성기업촉진·발전위원회’

□ 여성농업인에 대한 효과

-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으로 농촌개발계획에 따른 지원권을 여성에게 우선 부여함으로써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았음. 또한 모성보호는 고용직뿐만 아니라 자영업의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여성농업인은 기업지원, 제도적 조직 내에서의 인식향상, 모성보호 등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나 여건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 여성농업인은 여전히 대출이 어렵고 정부 조직 내 고위직 여성의 숫자가 적으며 그에 도달하기도 어려움. 선구적 활동을 위한 구체적 교육이나 대체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노인을 보살피기 위한 서비스 등 가정과 보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모성보호가 필요함
- 그러므로 법·제도를 제외한 여성농업인을 돕기 위한 실질적 방법들이 민간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음. 시스템의 수평적 활동으로 디나미카 코스기⁷⁾와 같은 교육, Campagna Amica(시골 친구), 유아 및 노인을 위한 서비스, 난민 수용으로 진화하는 농촌관광, 농촌 체험교육 및 관광 등 개인 활동이 있음

3) 일본

가. 여성농업인 관련 주요 정책

7) 다분야 영역의 개설 과정이 있다. 예를 들면, 재배·농촌의 전통 직업, 지역음식과 전통요리, 아로마 식물 및 약초, 야생화를 활용한 요리, 열린 농장: 손님을 중심에!, 영농 기업인을 위한 기초 코스인 체험 농장 등이다.

- 일본 농업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이 등장한 것은, 1992년 ‘농산어촌의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과 1999년의 2가지 기본법인 ‘남녀공동참가사회 기본법’,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임
- ‘농산어촌의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은 여성을 농업의 담당자로서 제도상 분명히 나타낸 공식문서임. ‘남녀공동참가’와 ‘여성의 능력 활용에 의한 농업·농촌의 활성화’ 두 가지 목적의 동시 실현을 목표로 함
- 가족경영의 발전 방향으로 경영의 다각화, 즉 6차산업화의 추진과 이를 위한 여성의 참가·책임 분담에 의한 ‘공동 경영자형 경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그 방법으로서 가족경영 내에서 역할의 명확화를 위한 가족경영협정과 취업·생활 조건·환경 정비 등을 위한 농촌여성기업의 추진 등임
- 가족경영협정은 현장에서 남녀공동참가, 경영 다각화를 염두에 둔 농업경영 발전임과 동시에 법제도 개정, 특히 ‘개별경영의 공동경영자’ 확립에 활용됨. 가족경영협정은 농업정책이 추진해 왔지만 농업개량보급센터가 앞장서서 여성이나 청년이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
 - 오늘날 가족경영협정은
 - ① 원예, 축산의 전업농 가족경영이 많고,
 - ② 협정의 양식과 내용은 기본적인 부분은 따로 하고, 지역이나 개별 경영 실정에 맞춰 다양한 노력이 더해져 내용도 다양하고 풍부함
 - ③ 특히 경영주 세대의 배우자가 주도하여 부부간에 협정을 체결한 경우가 많음
 - ④ 가족경영협정 체결의 의의보다 협정을 맺는 과정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음

나. 여성농업인 정책의 전개

- 오늘날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의 개요는 ‘농산어촌의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1992년)으로부터 시작됨
 - ‘국내 행동 계획 제1차 개정’(1991년) 및 ‘신정책’(1992년)과 관련되어 책정된 중장기 비전은 1999년 ① 남녀공동참가사회기본법과 ②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의 두 가지의 기본법을 근거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통해 관련 시책을 실시하게 됨
- 농산어촌에 관한 중장기 비전은 농림수산성에서 처음으로 농산어촌 여성 대책을 체계화해 여성을 농업의 담당자로서 명확하게 명시한 정책임. 그동안 여성은 중요

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중요한 일손'으로서 인식되고 있지만, 지도자 층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여전히 낮고,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

- 따라서 중장기 비전은 법률은 아니지만, 신정책 등과 관련지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여성을 농업의 담당자로서 제도상·실제상 명확화하고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며 여성의 능력개발, 나아가 농업·농촌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임
- 이를 통해 여성의 경영 참가와 사회 참가를 촉진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과 개별 경영에서 '공동경영자' 제도를 실제로 확립(많은 제도적 지원은 '경영자'인정이 필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여성의 농업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여러 가지 개발활동의 추진, 연수나 세미나 실시, 조직 및 네트워크 지원, 가족경영협정의 제기와 추진, 농촌여성기업(起業)의 제기와 추진 등이 제도적으로 지원됨. 지원의 실시 주체는 농업개량보급 조직(일본의 경우 도도부현 중심)임

□ 농산어촌 여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은 '남녀공동참가'와 '여성의 능력 활용에 의한 농업·농촌의 활성화' 두 가지 목적의 동시 실현을 목표로 함

- 후자에 대해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가족경영의 발전 방향으로, 경영의 다각화, 즉 6차산업화의 추진과 이를 위한 여성의 참가와 책임 분담에 의한 '공동 경영자형 경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 또한 전제로서, 가족경영 내에서 역할의 명확화, 취업·생활 조건·환경 정비 등이 이루어졌음. 회계 등 계수관리 촉진 등 농업 경영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였고 가족경영협정, 농촌 여성 기업의 추진으로 여성이 중심이 되어 진행했던 농산물 직매나 가공활동, 농업 부기 기장·분석 등을 통해, 농촌 여성이 경제적 활동의 담당자임을 스스로 나타내게 됨
- 그 과정에서 여성농업인 리더로 활약하는 여성들은 세대적으로는 1945년 이후에 태어나, 당시 육아가 일단락되고 본격적으로 농업을 담당하며 '단지 일만 하는 농가의 아줌마로는 끝나기 싫다'는 생각과 의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음. 당시 농업개량보급센터(한국의 농업기술센터와 유사) 등의 연수에 참가하고 그곳에서 서로 연구할 동료를 찾았고 자신의 경영·생활을 변혁하였음

다. 가족경영협정의 추진

□ 핵심적인 방법으로 가족경영협정을 제창·추진

- 현장에서의 방법으로 1) 남녀공동참가 2) 경영자의 다각화를 염두에 둔 농업 경영 발전 (가족경영의 조직 관리 → 법인화 등)이었고, 법제도 개정 특히 개별경영의 '공동 경영자'의 확립에 활용

□ 가족경영협정이란

- 농업경영·생활의 목표나 역할 분담, 의사 결정 방법, 취업·생활조건, 경영이양 등 자신의 농업 경영·생활에 관해 가족이 서로 합의에 근거하여 약정한 것임. 이는 가족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내용의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개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둘도 없는 대등한 동료로서 경영, 즉 '공동경영=파트너십형 경영' 확립(→ Family Business)을 목표로 함
- 전형적으로는, 사회적 인지를 받아들이고 실효성을 늘리는 일 등을 목표로, ① 약정을 문서화하고, ② 농업개량보급센터, 시·읍·면 농업위원회 등 제3자의 입회하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지역적인 운동의 성격이 강함

□ 가족경영협정을 활용한 여성농업인 관련 주요 제도 개정

- 첫째, 공적 연금은 농업인 연금의 농지 권리 명목이 없는 자라도 경영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입 대상으로 인정(1995년)하였고 공동 의사 결정·수익 분배·공동으로 경영 이양의 명목이 필요 조건이었음. 둘째, 공적자금으로서 농업 개량 자금에 여성 기업 범위를 신설(1995년)하였음. 현재는 농업 근대화 자금·경영단체 육성 강화 자금으로 변경되었음. 셋째, 담당자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인정 농업인의 공동 신청(2006년)과 청년 취농 급부금의 특례(2012년)를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음

□ 일본의 가족경영협정은 농업 정책이 제창, 추진해 온 것이지만, 동시에 농업개량보급센터의 작용을 계기로 각지의 여성이나 청년 농민 지도자가 적극 대응하여, 가족경영협정에 이른바 영혼을 불어넣어 내막을 풍요롭게 하고 있음

□ 현재의 가족경영협정의 특징

- ① 원예, 축산의 산지의 전업적 가족 경영이 많음
- ② 협정의 양식과 내용은 기본적인 부분은 따로 하고, 지역이나 개개의 경영의 실정에 맞추어 다양한 노력이 더해져 내용도 다양하고 풍부함
- ③ 특히 경영주 세대의 배우자 주도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부부간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
- ④ 협정 체결의 의의보다 협정을 맺는 과정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라. 농촌 여성기업(女性起業)

□ 농촌 여성 기업은 여성농업인 자신이 방침 결정을 포함한 활동의 중심이 되어 농업 관련 사업, 농업의 6차산업화를 하는 경우를 총칭

- 특히 1980년대 이후, 1촌1품 운동이나 1.5차산업, 이에 더해 도시·농촌 교류 추진 등 이미 활동하고 있던 여성농업인의 가공이나 판매 등의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정에 의해 제가·추진된 정책 지원임. 1990년대 개별 경영과 지역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정책의 하나로 주목받음

□ 농촌 여성 기업의 유형은 개별 경영의 다각화를 추구하는 개별 경영과 이와는 별도로 여성이 그룹을 형성한 그룹 경영

- 그룹 경영은 원래 생활개선으로 생활기술보급센터나 농협의 여성 조직 활동에서 단체로 배운 것이 계기가 되었고 여성의 조직화·집단적 지원은 일본의 전통적인 방식임. 그룹의 경우는 가정의 속박에서 자유롭고, 지역의 친목 그룹적 성격이 강함. 사업적으로 발전하려면 시설 도입이나 법인화 등을 통한 조직 개편이 필요함

□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 첫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마케팅 등의 능력개발, 공적자금의 융자, 시설 정비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음
- 둘째, 개별경영에서 공동경영자 제도 확립과 실제 경영 기획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별 경영형에서 나타남. 이는 가족경영협정의 역할이 큼. 제도적으로도 공동경영자라는 증거로 활용하며 대부분의 경우, 경영자인 것이 정책 대상 요건임
 - 당시 농업경영의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었음. 우선 개별 경영에서 공동 경영자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적으로 경영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음. 반면, 농업경영의 영역을 농업 생산에서 6차산업까지 확대하여 복합영농에서 경영의 다각화로 고부가가치화 유도
- 셋째, 일본은 1945년 이후 5~10평 미만의 소규모 가공이 가능했음. 식품위생법은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고, 도도부현이 보다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하며, 실제 인허가 권한은 도도부현의 보건소에 있음. 즉 농가에서 소규모 가공을 하고 싶다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보건·위생 교육을 이수하고 보건소에 인허가를 요청하면 실사를 거쳐 허가되는 구조임. 일본 농촌여성기업이 큰 걸림돌 없이 진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농가 소규모 가공의 인허가를 간단히 해결했기 때문임
- 넷째, 농가 민박은 1990년대 농촌 관광이 제창·추진되었고 특히 2005년 ‘농어촌 체재형

제4차 5개년 계획기간의 농업농촌 여건변화 및 전망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1994년 제정)의 개정에 따라 대폭 규제가 완화됨

※ 소규모 가공의 구체적인 시설 기준(예: 도도부현의 조례)

- 공중 위생상 지장 없는 곳
- 주거와 구분되어 있을 것(전용 제조실)
- 벽, 천장은 평활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일 것
(밝은 색, 벽은 바닥으로부터 1m는 내수성 유지를 위함)
- 채광, 환기를 충분하게 할 수 있어야 함(100룩스 이상, 환기 설비)
- 쥐, 곤충 등의 침입을 막는 설비일 것(창문은 방충망을 설치)
- 사용하기 쉬운 싱크대의 세정 설비를 마련할 것, 급탕 설비를 갖출 것
-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화장실 설비를 마련할 것(제조실, 화장실 등)
 - 탱크의 크기는 JIS VL710(40m×32cm: L5사이즈) 이상
 - 세제·살균제를 공급하는 장치(고정식)를 갖춘다(비누액 등)
 - 수도꼭지 손잡이는 레버식, 정체식, 센서식이 바람직하다
 - 공용 타올은 사용하지 말고 페이퍼 타올을 사용한다
- 온도계를 갖출 것 (냉장고, 실내)
- 기구류나 포장 용기 등을 청결하게 보관하는 찬장을 마련할 것
- 수도물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멸균기를 설치해야 한다
- 원료 주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작업 동선이 교차하지 않는 레이아웃이 바람직하다

□ 농촌 여성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 농촌의 여성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주요 사업 내용은 식품 가공과 유통·판매이며 연간 매출 금액 300만 엔 미만이 절반 이상임
- 농촌 여성기업의 중심 연령층은 50~60대임. 그룹 경영이 과반수를 차지하지만 개인 경영이 증가하고 개인 경영은 다각화 부문을 법인화하는 경우도 있음. 그룹 경영은 고령화의 영향이 현저하지만 새로운 형태도 나타나고 있음
- 개별 경영이 농업과 조화하는 범위에서 기업 활동에 임한다는 '비 사업형'이 많지만 그 내용은 다양한 경영으로 전개되고 있음. 예를 들면 지역의 농업·농촌, 나아가 도시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공헌을 수행
- 반면, 이러한 농촌 여성기업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능력 개발이나 의식 개혁은 일정

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공적자금이나 보조사업의 신청은 여전히 적음. 여성의 관점을 살린 선진적인 대응방안도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특히 사업적인 측면에서 여성농업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은 아님. 즉, 여성기업의 일정한 정책적 효과는 인정되지만 새로운 정책적 지원 필요

3- 4. 해외 여성농업인 사례의 시사점

□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가족농을 기반으로 하는 농가경제가 법적인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고 그 농업경영체 안에서 경영주의 여부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거침

- 반면 일본은 가족농의 법인화가 유럽만큼 진전되지 않았지만 1990년 이후 여성농업인이 회계를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라는 지위에 관한 의식에 진전이 있었음

□ 선진국의 사례에서, 농업경영체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체로서 인정받고 조세상의 사업자로 등록되는 과정을 거치며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얻음

- 가족농일지라도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게 되면, 그에 따른 조세의 의무와 사회보험의 책임을 동시에 지는 경영체이고 이 경영체의 경영주일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지위 획득이 가능하다. 이는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해당됨

□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불충분한 상태에 있음

- 우리나라에서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구성됨. 그런데 농업인에 대한 규정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농업경영체가 될 수 있고 농업경영체가 되는 농업인 요건이 지나치게 간단하고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누구나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가 될 수 있음⁸⁾

- 따라서 농업경영체가 농업인과 구별되는 하나의 사업체라는 점이 불분명하므로 경영주로 인정받더라도 특별히 유리한 점이 없다. 그 결과 여성농업인의 지위도 경영주 또는 비경영주의 차이가 크지 않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이라는 대의조차 여성농업인에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요인임

□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성문법의 범위 내에선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남녀차별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 존재하며 법적으로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점이 서구

8) 김수석. 2013. “독일의 농업경영체등록과 세제지원 체계”. 농촌경제 제36권 제3호. p.74

와 다름

-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이 조세법상의 경영체로 인정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경영주로서 농업인의 지위에 의미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프랑스와 이탈리아 농정에서 여성농업인에게 유리한 지원이나 차별적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농정에서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남녀 차별이 없다는 의미임. 반면, 일본 농정은 경영 다각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공적자금이나 보조사업의 지원에 우대 혜택을 부여

□ 유럽과 일본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을 실현한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임

- 일본이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녀차별이 남아 있고 이 영향으로 재량껏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지원제도를 통해 우대하고 있는 것임
- 즉, 일본은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농촌사회에서 지원제도를 통해 여성농업인에게 유리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일본 농정에서도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는 경우는 가족경영협정을 통해 경영주로서 인정받을 때임
-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이 농업인이라는 인적 조건 외에 농업경영체로서 물적 조건을 구비한 농업경영주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

□ EU의 농업의 다양성, 농촌개발정책이 프랑스, 이탈리아의 법·제도에 영향을 주어 농업의 다양성을 장려하거나 농촌개발정책을 수행하며 유기농업을 지원하고 일본은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함

- 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지원은 유기농업, 농산물 가공, 농촌체험 및 농가민박 등 여성농업인이 경쟁력을 갖는 농업의 6차산업을 장려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룸
- 그런데 선진국의 여성농업인 지원기관은 행정조직보다 농업인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소비자운동과 연계한 여성농업인단체라는 사실임. EU정책이나 일본의 농정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금으로 유도하지만 정작 이를 실천하는 이들은 여성농업인 자신과 소비자단체와 같은 민간 조직이고 농업인단체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음.⁹⁾ 민간조직·단체에 참여하여 이익을 촉진하는 활동에 주력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교 역할

9) 이탈리아 농업인단체 콜디레티는 여성농업인에게 참여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여성농업인의 이익을 촉진하는 활동으로 공급단체와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함.

을 하는 선진국의 농업인단체의 활동은 향후 우리나라 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단체가 해야 할 과제에 시사하는 바가 큼

IV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개요

제4장 4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개요

1. 비전과 목표

[그림 4- 1- 1] 제4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1) 비전

□ 양성 평등한 일터, 행복한 삶터

- 여성농업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촌에서 살아가는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자신의 일에 대해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인식하도록 정책을 실현하는 것에 있음. 또한 이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여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데 있음
-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노동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과제는 일-생활 균형 정책으로도 강조되고 있으며, 농업정책 전반의 기초 역시 농촌주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데 두어짐
- 따라서 양성평등한 일터는 직업인으로서의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인으로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방향의 정책추진을 통해서 실현가능할 것임
- 또한 정주공간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여성농업인들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행복한 삶터가 되도록 해야 함.

2) 정책목표

□ 목표 1 : 여성농업인 경영주체화

- 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보장에 관한 규정은 「농업농촌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 본 법에 따른 농업인의 지위는 300평 이상 경작, 90일 이상 영농종사 증명, 100만원 이상 농산물 거래 명세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경우 토지소유 비율도 적고, 영농종사 증명을 발급하는 규정 역시 명확치 않으며, 농산물 거래시에도 주로 남편의 통장으로 거래가 되므로 직업적 지위를 명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음
- 또한 농영경영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농가경영체 등록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으나 여성농업인은 종사자(보조인력)로 농가경영체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서 농가경영체 등록 여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고는 경영인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직업적 지위의 불인정에 따른 농업정책에서의 소외 및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된 경영주로서의 다양한 혜택에서 간접적으로 소외되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경영주체화 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성장과 발전에 필연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정책과제임.

□ 목표 2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임. 특히 봉건적인 관습과 문화가 잔존해 있는 농촌 지역에서 성주류화 정책은 중요한 과제임
- 농업정책의 양성평등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추진 부처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하는 일이 핵심 과제임. 또한 양성평등한 정책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및 유관조직, 정책관련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분석에 따른 성인지 예산으로 연동 등 정책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
- 이는 농업정책이 지금까지 가구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여성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소외와 전문경영인으로서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는 점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과제임. 또한 여성농업인들을 경영주체나 생산주체 보다는 복지대상이나 농가의 보조적인 참여자로 대상화시키는 주요 요인이기도 함. 따라서 양성평등한 농업농촌 환경을 구현하고 이를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목표 3 : 여성농업인이 체감하는 복지 구현

- 여성농업인들의 정책체감도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생활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 또한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조건이 농사일 만이 아니라 마을의 대소사, 아동의 보육과 양육, 가정 내 다양한 돌봄 노동 등 활동영역이 일과 생활 양 측면에 걸친 역할로 주어지고 있음
- 따라서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구현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의 직업인으로서의 복지실현과 삶을 지키고 가꾸는 농촌 거주공간으로서의 복지 양측면이 모두 고려되어 정책이 실현되어야 함. 즉 농업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의 실현이 중요함

3) 정책과제

- 「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정책과제를 설정함
 - 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나.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다.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 마.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 바.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2.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의 구조

-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은 5대 정책과제의 19개 중과제 및 34개(신규과제 16개) 소과제, 61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됨. 5대 정책과제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임
- 이와 같은 계획구조는 두 가지 노력의 산물임. 첫째, 다가올 5년의 여건 전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둘째, 지난 제3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의 평가를 토대로 하여 성과가 미진한 과제들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근거 법제와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성과지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의 특징과 주요 지표 전망

3- 1. 4차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의 특징

- 과제의 우선순위 조정 및 농업농촌 여건변화를 반영한 과제 반영
 - 여성농업인 취창업 역량 강화를 정책과제에 포함시킴
 - 농업농촌 여건변화 반영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계획의 농정기조를 반영한 정책방안 도출

- 여성농업인 정책전달 체계 및 양성평등 정책 실현 수단을 강조함.
 - 정책추진 전달체계의 변화(공식성, 매체 다양성, 전달체계 개선 등) 및 농촌사회 양성 평등 의식강화, 지자체 책무성 강화방안, 중앙-도-시군의 일관된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 정책추진부서의 위상강화, 정책추진 거버넌스 강화
 - 여성농업인 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책추진 인프라의 강화 방안을 반영함
- 농촌여성들의 계층 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 과제 제안
 - 대농, 중소농, 귀농귀촌여성, 노인여성, 결혼이민여성 등의 욕구를 다양하게 반영함
 - 각종 토론회, 계층별 인터뷰를 통한 정책욕구를 반영함
-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 실현
 - 농촌의 당면 현실에 필요한 정책 중심으로 집중하여 정책체감도 증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체감형 복지정책 사업의 성인지적 개선 사항 포함

□ 새 정책영역의 부각

- 6차 산업, 사회적 경제 영역을 정책의 2번째 과제에 포함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합한 여성농업인 인력 육성으로 통합함.
- 귀농귀촌, 노인 관련 정책욕구를 반영함. 향후 농업정책의 대상이 농업인만이 아니라 농촌 여성 일반, 도시민 까지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정책추진 인프라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가 부각됨

□ 다양한 정책고객의 포함

- 일-가정 양립, 즉 여성농업인의 관점에서 복지영역을 생산적 복지와 연계방안으로 정립
- 생애주기별 정책발굴을 목표로 보다 촘촘하게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욕구를 세부정책 과제에서 촘촘하게 배치하였음
- 전문경영인의 관점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의 세부사업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구체화하였음.

□ 정책관리 수단의 확보 및 젠더 거버넌스 강화

- 여성정책 조정기능의 강화 및 지표관리 등
- 정책 주무부처의 위상과 역량강화

- 타부서, 지자체와 조정을 위한 정책추진 거버넌스 강화, 민-관 정책거버넌스 강화 등 정책추진의 효과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기능강화

2) 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주요지표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지위 핵심으로 공동경영주 등록, 부부공동협약,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제시함
-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농정관련위원회 성별균형, 농업회의소 여성농업인 참여 비중, 생산자조직 참여확대를 제시함.
-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과제 및 교육 확대,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평가, 중앙부처내 부처가 협의체, 지방-중앙 정부의 유관 정책협의를 제시함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취창업과 연계된 사업을 지표로 제시함. 경영기술교육, 취창업 교육, 창업코디네이터 양성, 창업멘토링 사업, 농기계 개발 및 이용증진 등을 제시함
- 특히 교육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전문가 풀마련 및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구축을 제시함

□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 지역개발 의사결정과정 및 추진위원회 참여 활성화, 이장, 공동체 퍼실리테이터 육성, 사무장 교육, 여성농업인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참여 등을 제시함

□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 복지전달 시스템의 개편, 각종 도우미 활성화, 보육시설 확대, 공동급식 확대, 면보건지소 기능 활성화,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지자체 시행 특화 복지정책에 대한 지원 등을 제시함.

□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 새롭게 농촌에 유입되는 귀농, 결혼이민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인력육성 프로그램 및 멘토-멘티 체결을 제시함

V

영역별 정책과제

제5장 영역별 정책과제

1.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정책 방향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공동경영주로서의 직업적 지위를 확보하고, 농업경영의 책임있는 파트너로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각종 정책과 가족 내에서의 동등한 권리 보장. 또한 농촌사회에서의 성평등한 의식의 확산과 가족경영에서의 역할분담, 일과 가정의 조화를 꾀하는 수단으로서 '부부가족경영협약'을 확대 보급
- 직업인으로서 여성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연금가입 촉진
- 여성농업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위원회의 여성위원 40% 목표제를 도입하고, 시도, 시군단위 여성농업인협의체를 육성. 또한 생산자단체인 농업협동조합의 여성조합원, 대의원, 임원 등의 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전개
- 여성농업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의 성주류화 정책 추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교육, 성별통계,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이를 환류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가 필수적임. 따라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정책의 실효성과 정책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정책추진시스템의 구축 및 부처간, 부처내 유관부서와의 조정과 협력이 핵심임.
- 정책추진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따라서 이를 위해서 민-관 정책추진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당사자들인 여성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보장되어 행정이나 지역사회 유관조직과 파트너십이 강화되어야함. 또한 관계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함

1-1. 공동경영인으로서의 위상제고

1-1-1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

□ 여성농업인의 현황

- 농업의 여성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로 여성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50%이상인 비율이 4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연령별로 57.9%~61.1%에 이룸
 - 농가소득에 대한 본인기여도 역시 50%이상이라는 응답이 40대 이상 여성에서 49.0~53.2%에 이룸(정은미 외, 2013)
- 3차 여성농업인육성계획 기간 중 농가경영체 등록제도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직업적 지위 인정에서 많은 진전을 보임
 - 여성농업인 등록자수 : 2014년 1,209천명
 - 여성농업인 경영자수 : 372천명¹⁰⁾
- 그러나 가족원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지위에서는 여전히 모호함이 존재
 - 여성의 기여도가 높은 농가에서는 여성 스스로 공동경영인으로 평가하고 있음.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42.1%의 여성농업인이 본인을 경영주 혹은 공동경영주(20.9%)로 인식함(정은미외, 2013)¹¹⁾
 - 여성의 기여도가 높은 작목의 경우 남성농업인의 94.7%가 배우자를 공동경영인으로 인정(박민선외, 2003)
- 여성농업인단체 등의 지속적 노력의 결과 3차 계획기간 내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성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
 - 2015년도 중 『농어업인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인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10) 본인 명의의 농지를 가진 여성의 경우 독립된 경영체로 등록된 여성경영주들이 발견되고 있으나 여성경영주의 대부분이 배우자가 없는 노령의 단독 경영주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11)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이 84.6%에 이르고 있음(3차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010년) <표V-1> 여성농어업인에게 합당한 지위에 대한 평가

구 분	빈 도	백분율(%)
경영주	18	6.9
공동경영주	220	84.6
농업보조자	14	5.4
가족종사자	7	2.7
기타	1	0.4
합 계	260	100.0

자료: 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2010) 결과

-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의 지위와 관련해 공동경영주 등록 방법 및 공동경영주에 대한 권한, 즉 정부의 정책대상자 선정 및 가족 내에서의 재산권 문제 등 공동경영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함
- 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확보 및 권리향상을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공동경영주등록 방식 및 권한 등에 대해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
 - 공동경영주 등록 시 배우자와 합의 서명한 서식 제출 검토 등
- 프랑스의 경우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경영주, 임금노동자, 가족종사자 중 하나의 지위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동)경영주로서의 지위를 선택할 수 있음
 - 2010년 법개정에서는 부부가 공동영농법인(GAEC)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¹²⁾
- 일본의 경우 6차 산업화 등에 따른 여성의 참가를 촉진하고 책임분담을 통한 ‘공동경영자형 경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이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가족경영협정을 추진하여 가족 경영의 내에서의 역할의 명확화, 노동 및 생활조건, 의사결정방법, 경영이양 등의 조건을 명시화하고 있음(카와데 토규야, 2013)

□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인정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

-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및 공동경영주에 대한 권리인정 등에 관한 공청회 실시
 - 등록 절차 및 관련 법과 제도의 보완
- 공동경영인 제도의 홍보 및 가입유도
 - 팸플릿 및 포스터 제작을 통해 등록 유도
 - 각 중 교육시 홍보활동 강화
 - 여성농업인단체 회원들을 통한 홍보 및 참여 독려
 - 여성경영인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참여 유도
-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에 대한 권리의 인정
 - 공동경영주 등록 후 발생한 자산 및 소득에 대한 공동기여 인정
 - 공동경영주에 대한 각종 정책 대상 선발 시 여성의 기여도 인정
 - 공동경영주 등록 후 취득한 농지 등의 자산에 대해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 증여 시

12) 법 개정 전에는 부부 2인만으로 영농법인을 설립할 수 없었으며 법 개정을 통해 가족경영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도 점차 개인의 권리가 강화되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증여세 면제

- 공동명의로 자산취득 유도
-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농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에 대해서는 부부의 공동소득으로 인정
-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담보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 공동경영인의 동의 요구

-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 노후생활안정 보장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공동경영인 등록 홍보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경영인 관련 공청회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경영인 관련 정책 및 제도 보완	농림축산식품부					

1-1-2. ‘부부공동경영협약’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자부심과 책임감 고취

□ 기존현황

- 2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에 의해 농가경영협약을 체결한 농가는 322호에 이룸
 - 협약체결 농가수 (누계) (‘ 4년) 22호 → (‘ 08년) 282호 → (‘ 09년) 322호
 - 그러나 3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에서는 포함되지 않아 농가경영협약 체결은 중단 상태임.
- 2차 계획기간 중 시행된 농가경영협약은 여성농업인단체 주관으로 이행되고 있어 여성의 권익운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농가경영협약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고 정부의 정책적 관심에서 배제되어 정책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함
- 4차 계획기간에는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지위가 인정됨에 따라 부부간의 경영협약이 새롭게 주목될 가능성을 가짐

- 공동경영주 등록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책임과 역할의 배분, 경영성과의 공유 등을 명시하고 농가경영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지위 확보를 계기로 공동경영을 합리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부공동경영협약’으로 변경 시행
 - 일본의 경우 가족 간의 합의에 의한 경영을 통해 가족원의 책임있는 경영 참여와 여성농업인의 생애소득의 보장을 위해 정부가 가족경영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인정농업인제도, 여성농업인 연금 가입 등의 정책과 연계하여 실시

□ 추진방향

-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농가에 대한 부부공동경영협약 교육을 권고
- 부부공동경영협약과 농업정책 대상자 선발의 연계방안 검토
 - 후계자, 농지규모화 사업 등 정책대상자 선발 시 가점 부여
- 정책자금 수혜자 중 배우자가 공동경영인으로 등록한 농가에 대해 부부공동경영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
- 전국, 시도 단위 농가경영협약 체결농가 협의회 구성
 - 정기모임을 통해 사례발표 및 협약 재구성
 - 우수 농가에 대한 표창
-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가 직접 교육을 주관(농정원)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

- 연차별 100농가를 목표로 4차 기간 중 신규로 500농가 협약체결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부부공동경영협약 교육프로그램 개발	농정원 농림축산식품부	■				
부부공동경영협약 교육 및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단체	■	■	■	■	■
시·도 및 전국단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	■	■	■
부부공동경영협약 내용 및 효과 분석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

1-1-3.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추진

□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현황

- 3차 계획기간 중 경영주가 아닌 협업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확대됨
 - 매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을 상향시키고 월보험료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짐
 - 2015년 기준금액소득/월보험료 지원금액 : 91만원/4,0950원
 - 여성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현황 : 126,862명(2013년) -> 146,279명(2014년, 15.3% 증가)
- 여성농업인의 소득저위, 국민연금 중복 급여 조정, 기초노령연금과의 중복 급여 조정 등의 이유로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낮은 편임
 -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본인의 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의 20%(30%로 상향예측) 추가지급
- 그러나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가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여성농업인 스스로 이러한 필요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태임
- 여성농업인 농가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73.2%, 개인연금 가입율은 44.3%로 나타남(정은미 외, 2013)
 -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14.6%이며 개인연금 가입율은 19.7%
 - 남성농업인 명의의 개인연금 가입율은 18%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대상 국민연금 홍보 강화
 - 팸플릿 및 포스터 제작을 통한 등록 유도
 - 각종 교육 시 홍보활동 강화
 -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들을 통한 홍보 및 참여 독려
-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수령액 시뮬레이션 제작 홍보
 - 여성농업인의 자부담 대비 기대여명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액 비교분석 등
-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민연금 가입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시뮬레이션 제작	농림축산식품부					

1-2. 여성농업인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확대

1-2-1. 농정 관련 위원회 양성균형 유지

□ 여성농업인의 농정참여 현황

- 3차 기간 중 각종 농정 관련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은 3차 기간 중 3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4차여성 계획에서는 목표치를 40%로 상향조정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여성비율 : ‘ 14년 30.2%
 - 9개 도 농정관련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 ‘ 14년 31.1%
- 여성정책기본계획(여성가족부)에서는 제4차 계획기간 동안 40%를 목표로 함

□ 추진방향

- 4차 육성 기간 중 농정관련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40%로 확대
 - 신설위원회 및 임기 만료 위원 교체 시 여성 중심으로 선임
 - 운영 실태를 홈페이지에 게시(정부3.0)
 - 목표 미달 위원회의 집중관리
- 농업관련 여성전문가 및 선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DB작업시행
 - 전문가별 각종 위원회 참여 이력 확보
- 농정위원회 참여 여성위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여성농업인의 관점을 반영하도록 훈련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농식품부 위원회 양성균형 여성위원 40% 달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및 시도 여성위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실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					
농림축산관련 전문가 DB작성	농림축산식품부					

1-2-2. 농업회의소 여성농업인 참여 활성화

□ 농업회의소 여성농업인의 참여 현황

- 2013~201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따르면 농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업회의소 운영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농정파트너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활성화를 꾀함으로써 민관 협치 농정을 구현할 계획임
- 2013년 평창, 진안, 나주, 고창, 봉화, 거창, 남해 등 7개소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5년 도단위 최초로 '충남 농업회의소', 기초는 예산군이 공모에 선정되어 설립예정임. 농업회의소에는 농업인 단체 대표와 협동조합, 농업계 산학관련자 등이 참여할 예정임
- 농업회의소 운영이 활성화되면 농정의 민간 파트너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농정회의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인지적 계획은 추진되고 있지 않음
- 프랑스의 경우 농업회의소 운영에 있어 여성농업인 할당제가 실시되고 있음

- 2012년 농업회의소 의원선거 명부 작성 시 최소한 1/30이상의 여성참여 의무화
- 2013년 선출직 4,051명의 의원 중 여성농업인이 1,100명임. 그 중 3명은 농업 회의소 의장으로 선출됨

□ 추진방향

- 시범사업 중인 농업회의소의 여성 참여 실태와 문제점 파악
- 시군단위, 도단위 농업회의소 여성참여 실태를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의 주요 지표로 선정
- 여성 위원 30% 할당제를 목표로 운영자금 지원 시 반영
- 농업회의소 내 여성위원회 설치 운영
- 4차 계획 기간 중 농업회의소에 여성분과위원회 설치
- 시군 여성위원 30% 확보 시군 30개소, 도 농업회의소 여성위원 20%확보 9개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농업회의소 운영 실태 및 여성참여 실태파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회의소 여성농업인 참여 실태 통계생산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도 농업회의소 통계청					
농업회의소 여성위원 교육	지방자치단체 농정원					
농업회의소 내 여성위원회 설치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도 농업회의소					

1-2-3.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확대

□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현황

- 3차 육성 계획 기간 중 농협의 여성조합원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성임원의 3.6-5%의 수준으로 여성조합원의 비율은 증가했으나 여성임원의 비율은 정체상태임
 - 농협 여성조합원 비율 : 30.6%(2015년 6월 현재)
 - 농협 여성대의원수 : 12,000명

- 농협 임원 수 : 478명(2014년 여성 3.6%)
- 농협 여성조합장 : 5명
- 2014년 농협법 개정에 따른 여성임원 확대 계획
 - 2015년 7월부터 여성임원할당제 도입
 - 여성이사 의무선출제도 도입을 통해 여성 임원 확대
 - 농협중앙회의 회원농협 평가 시 여성조합원 참여 관련 배점을 늘려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 농협임직원 교육에 여성임원할당제 관련 내용 추가

평가점수 (변경전)	⇒	평가점수 (변경후)
○ 여성농업인 육성 : 40점 - 여성이사 감사확보 : 20점 (1명 : 10점, 2명 : 20점) - 여성대의원 확보 : 20점 여성대의원 1명당 2점		○ 여성농업인 육성 : 60점 - 여성이사 감사확보:30점 (1명 10점, 2명 : 20점) - 여성대의원 확보 : 20점 - 여성분과위원회 : 10점

- 중앙본부와 도 지역본부에 각 각 여성농업인 육성 특별위원회와 협의회 운영 신설
 - 농협의 여성농업인 육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자문, 조사연구, 홍보활동의 기능 담당
- 농협 내 여성분과위원회 설치는 2차 계획기간 중 꾸준히 증가하였으나(2009년 현재 572개 농협) 3차 계획기간 중에는 여성분과위원회 설치 현황이 파악되지 않음
 - 여성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비선출 여성이사로 선임되도록 권고, 복수의 여성이사 확보 유도

□ 추진방향

- 여성조합원 비율에 상응하는 여성 대의원 및 임원 비율로 점진적으로 확대
 - 농협 : 여성조합원 30%, 여성대의원 20%, 여성임원 10% 달성
- 회원농협의 여성위원회 설치 확대
 - 4차 계획기간 중 농협중앙회의 회원농협 평가점수에 반영, 전 농협에 여성분과위원회 설치 의무화
- 신규 대의원 및 임원에 대한 리더십 교육 실시
 - 대의원 : 도단위 교육 (협동조합의 이해,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 발표력증진)

- 임 원 : 전국단위교육(협동조합의 이해,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 협동조합임원의 역할과 과제, 발표력 증진 등)
- 여성 대의원 및 임원용 교육과정 개발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여성대의원 □여성임원 확대	농협 농림축산식품부					
회원농협 여성위원회 설치 운영	농협					
중앙, 도단위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농협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대의원 및 임원 교육실시	농협					

1-3 성주류화 정책추진 강화

1-3-1. 성주류화 정책 추진 체계강화

□ 현황

- 성주류화 정책은 여성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임. 현재 성주류화 정책의 수단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수립, 성인지 교육, 성별 통계 4개의 수단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음.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마다 1번씩 여성농업인 통계를 발행하고 있고, 공무원 성인지 교육의 확대에 따라 교육참여자 수는 증가하였음. 그러나 현장농업조직, 생산자 조직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함.
- 또한 모든 정책의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확대되고 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는 몇 년째 답보상태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산을 통해 환류되는 시스템 관리가 미약함.
- 특히 정책중 여성농업인에게 영향을 크게 미칠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하지만 2차 계획기간 동안 농기계, 농산물 가공 등에 심층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이루어진데 비해 3차 계획 기간에는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시행되지 않

음.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관련 정책담당자들의 성인지 의식 향상이 절실한 과제임. 특히 정책이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영역은 유관기관에서 실시됨. 따라서 현재 담당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성인지 교육을 생산자조직, 농업정책 자금 수혜자, 농업 관련 유관조직으로 확대 실시 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은 실시되고 있으나 농업유관기관, 농업인에 대한 성인지 교육은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미미함. 또한 농업현장의 농업유관 기관이나 농업인조차 여성농업인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여성농업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농협, 농어촌 공사 등 유관기관에 대한 성인지 교육강화 및 농업정책자금 지원대상 및 영농교육 과정에 성평등 교육 포함 추진 필요

- 성인지 교육을 통한 정책의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성인지 예산 수립과정에 반영되거나 해당하는 사업지침의 변경, 조례나 법의 제·개정 등을 통해서 완성됨. 즉 환류체계를 갖지 않으면 안됨. 따라서 정책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과제를 확대하여 모든 정책에 성별영향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과 보고를 통해 실질적인 환류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지원이 필요함(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의 지원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설치됨).

- 농업통계의 성별 통계 생산과 활용에 대한 방침을 세워 추진해야 함. 모든 사업에 보고체계를 성별분리 통계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점사업인 6차 산업 관련 영역이나 마을개발 영역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성별통계의 생산이 필요함.

- 정책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영향이 큰 정책을 중심으로 특정 성별영향평가 실시 등 차별화된 정책추진이 필요함. 여성농업인을 경영주체로 양성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성별영향 평가과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및 농업정책대상자 성평등 교육실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성별 통계농업통계의 생산과 활용	농림축산식품부					

1-3-2 정책추진 전달체계 개선

□ 현황

-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을 어떻게 정책 수혜자에게 전달할 것인가가 핵심적 과제임. 이를 위해서는 정책전달 수단이 갖춰져야 함. 과거 여성농업인 전달체계는 행정라인을 통한 전달체계만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내 홈페이지 여성농민광장을 통한 교류활성화,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여성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정책교류 채널이 있었음. 그러나 현재는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한 전달체계는 농촌복지여성을 통해서만 전달됨. 따라서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영역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정보 공론의 장이 없음.
- 이는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지방자치체의 경우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도 없고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함. 따라서 여성농업인들은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거나 정책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떤 부서의 누구와 정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창구가 없다는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음¹³⁾.
- 정책이 여성농업인에게 전달되는 경로에 있어서도 이장을 통해서만 전달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에 필요한 정책일지라도 이장의 판단에 의해서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거나 혹은 전달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함. 즉 여성농업인들은 정책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책전달 추진 체계의 다변화를 통해서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의 참여와 수행과정의 효과증진을 위한 당사자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할 전달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여성농업인육성법에 의거하여 지자체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사업이

13)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 간담회나 토론회에서 지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임.

실시되고 있음. 현재 여성농업인육성법 제5조 1항에 의거하여 시도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도계획은 중앙부처의 계획을 그대로 설정하고 있을 뿐 지자체의 특성을 담은 내용으로 구체화되지 못함.

- 각 시도지사는 법에 의거하여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해서 중앙의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지역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평가나 환류체계에 대한 지원이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업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10개 광역지자체와 52개 기초지자체가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 그러나 대부분의 조례가 장롱 조례화 되어 여성농업인 관련 지원을 위한 정책근거로 수행되지 못함.

- 조례에는 여성농업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자문위원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은 곳도 많음. 또한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조항에 대한 책무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실제로 책무성이 부여된 조례의 경우도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또한 조례에 자문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는 필요할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여성농업인 관련 전담부서가 설치되거나 담당자가 지정된 경우는 거의 없음(도조례, 군조례 모두 마찬가지)

- 지방자치단체중(특광역시 제외) 여성농업인 추진체계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6개도임. 경기, 경북은 홈페이지에 어떤 부서에서 여성농업인 정책(단체지원업무만 명기되어 있음)을 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여성농업인 정책은 대부분 농업정책과에서 다루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임.

- 시군단위의 경우는 농업관련 추진부서 자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전반적인 추세임. 따라서 그나마 여성농업인 정책담당으로 업무가 명기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 담당자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5-1-1] 지자체(광역) 여성농업인 관련 담당부서

지자체명	여성농업인 관련 담당부서
경기도	
경상북도	여성농업인단체 지원 담당자만 있음
경상남도	농업정책과(농업인력담당)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전라남도	농업정책과(농지관리)
충청남도	농업정책과(농촌복지인력)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제주도	친환경농정과(농업경영)

자료 : 홈페이지에 명기된 내용, 공란은 홈페이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임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의 홍보를 위해서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홈페이지의 활성화가 필요함. 현재 링크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여성농업인 광장”은 맨위에 조그마한 창으로 되어 있어 인식이 어려움. 따라서 이를 메인창으로 가시성을 확보하여 각 부서의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홈페이지에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 조직 등의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여성농업인들의 정책관련 욕구나 정보전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 창업 등 다양한 정보가 링크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네트워크 가능성 확보
-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농업관련 유관조직 홈페이지인 농업교육포탈 사이트의 경우 도시민, 귀농귀촌자, 학생, 전문영농인 등에 대한 교육과정이 안내되어 있음. 그러나 정작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과정을 홍보하는 항목은 없음. 따라서 유관기관의 홈페이지 역시 여성농업인 관련 정보마당을 신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책전달이 이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부녀회장(여성들의 마을 공식조직임)이나 여성농업인 단체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전달 체계를 다변화하고 정책전달의 소외영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전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 단체의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여성농업인 관련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추진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정책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지원조례는 여성농업인 정책추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가 미지정된 도, 시군단위의 조례제정 확대와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함. 조례를 제정하는 업무는 지자체의 소관임. 그러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추진의 효율적 집행을 강화할 위해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유인요인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정책의 상당부분이 지방이양 되어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원하는 추진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여성농업인 정책추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도단위에 여성정책전담부서(팀)가 설치되어야 하고 시군단위에는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함. 현행 체계로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이 불가능한 정책추진 체계임.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여성농업인 관련 홈페이지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농촌진흥청					
농업교육포털사이트 여성농업인 대상교육 홍보	농정원 농촌진흥청					
정책전달체계 다변화(이장, 부녀회장, 여성농업인단체 등)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유관단체					
지자체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 이행점검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여성농업인 조례의 제정 및 개정(책무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1- 4. 정책추진 거버넌스 확대

1- 4- 1. 여성농업인 단체와 거버넌스 활성화

□ 현황

- 여성농업인 단체의 정책 참여 촉진, 여성농업인 단체의 정책 참여는 정책홍보 즉 전달체계 및 여성농업인의 사기양양, 여성농업인 단체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제였으나 실제로 추진은 미흡함
- 여성농업인의 참여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필요. 정책추진 과정에서 여성농업인 단체와의 소통은 기본적인 방향임.
 -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여성농업인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체계는 법이나 조례에 명시된 자문위원회 임. 현재 자문위원회의 경우 열리지 않는 지자체가 대부분이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역할수행에 있어서도 식물위원회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여성농업인 단체가 교류나 협력을 통해 여성농업인 상호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이 없음. 여성농업인 조직에 대한 지원이 특정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여성농업인 단체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음.
- 여성농업인 단체의 정책 참여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만족도 증진만이 아니라 상향식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서 핵심과제임. 그러나 3차 계획 기간 동안 추진이 가장 미흡한 영역이기도 함. 자문회의 운영이나 단체에 대한 여성농업인 정책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따라서 향후 여성농업인 단체와 행정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회복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날을 제정하고 남녀공동참여계획본부 등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민관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여성농업인의 날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업의 6차 산업,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등 여성농업인의 농기업 사례 발표와 시상식이 있으며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됨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은 기초적인 핵심과제임. 여성농업인단체의 정책참여와 정책실현을 위한 공동노력의 강화방안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관련 협의체의 구성, 자문위원회 기능 현실화, 여성농업인 단체와 연간 정기적인 정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구축해야함.
 - 여성농업인들 당사자 조직의 강화를 지원하고 이들의 정책참여를 독려하고 역할을 증

진하는 것은 거버넌스의 출발임. 여성농업인 정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추진 부서와 정책수혜 대상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쌍방향 소통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 여성농업인관련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류확대 지원
 -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 4개 단체에 중복 가입되어 있지만 지역에서도 단체 간 교류는 지역 축제나 농업인 행사에 참여하여 만나는 경우 이외엔 거의 없음. 여성농업인이 사회경제적 역할 증대에 합당한 지위와 권리를 얻기 위해서 4개 단체가 결집하여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현안을 공유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정책수요를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현재 정책거버넌스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체감도 증진을 위해 강화되어야할 사업 영역임. 특히 타 부처나 타 부서 내 여성농업인 정책을 관철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정책당사자와 함께 하는 거버넌스 추진이 필요함
 -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성농업인 정책 당사자 조직에 대한 정책설명회 및 정책추진 간담회 등 실현이 필요함. 이는 중앙부처의 정책설명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과정임. 따라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정책이행 성과평가 항목에 이와 관련한 평가항목을 통해서 책무성을 강화할 수단을 명기할 필요가 있음.
- 여성농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사기양양을 도모가 필요함. 이를 통해서 농업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상호 소통, 정보교류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징자원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여성농업인 단체에 정책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민-관 거버넌스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유관단체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단체 협의체 구성 및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업인단체					

1-4-2. 부처 간, 부서 내, 중앙-지방간 정책추진 거버넌스 구축

□ 현황

- 여성농업인 정책 담당 주무부서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로 시작되어 2004년 여성정책과로 추진되다가 2008년 농촌사회여성팀으로 이어지면서 실→과→팀→과내에 팀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음. 이는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의 중요성 증대와 역행하는 추진체계임.

[그림 5- 1- 1] 여성농업인 담당부서의 변화



*자료 : 여성농업인 광장

- 여성농업인 정책은 인력육성,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조정과 통합 역할이 핵심임. 따라서 주무부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정책추진 체계의 기본과제임.
- 또한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과정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1차와 2차 여성농업인 5개년 계획은 정책의 중간평가를 통해서 3차 계획이 수

립됨. 그러나 3차 계획 기간 동안 정책의 중간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 따라서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의 제도시스템에서 정책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관한 개정이 필요함. 여성농업인육성법에 행정의 책무성을 강화할 조항이 필요함. 법에 명시된 조항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또한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평가, 주무부서의 설치, 여성농업인 협의체 신설 등의 조항을 의무화하여 강력한 추진체계의 형성이 필요함.
- 또한 중앙의 정책추진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현재의 추진체계로는 농촌복지여성과 → 도단위 농업정책과 또는 아예 여성농업인 추진부서가 없는 곳도 있음 → 시군단위는 추진체계가 없음(여성농업인 단체 담당자만 있음). 따라서 이를 연계한 추진체계의 구성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함. 이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핵심은 농업인력의 주체로 양성하는 인력육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산적 복지의 영역이 동시에 포함되기 때문임. 따라서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 및 인력, 예산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
- 주무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추진체계 못지않게 제도화가 필요함. 현재 제정되어 있는 여성농업인 기본법의 조항은 부서의 역할과 책무성에 대한 규정이 미약함. 따라서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개정이 필요함.

☞ 육성법에 ‘여성농업인단체협의체’ 구성 및 지원 신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함. 또한 시행규칙에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항목 신설, 자문회의의 역할 관련 조항 신설 등으로 개정이 필요함.

- 중앙의 정책추진 전달체계 및 집행체계의 일관된 조직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농촌여성복지과 → 도단위 → 시군단위 정책전달 체계의 책임있는 정책집행 체계의 마련이 선결과제임.

- 중앙- 지방 정기적 정책협의 실시
 - 지자체는 여성농업인 정책추진 과제에서 중요성이 가장 높아진 정책영역임
 - 중앙정부-도-시군으로 연계되는 정책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여성농업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인프라 확립 및 책무성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앙부처내, 부서내 정책의 조정과 통합을 위한 정책협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
 - 정책협의회는 유관부서 관련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사업간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과 조정이 필요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평등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여성농업인 부서 위상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중간평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중앙- 도- 시군 정책전담체계형성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체					
중앙부처 내 유관부서 정책협의체 구성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부처					
중앙- 지방 정기적 정책협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정책방향

- 여성농업인 육성의 핵심은 농업 전문경영인으로서 갖춰야할 역량을 키우는데 있음. 이를 위해 중앙과 각 지자체 등 여성을 농업인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역량강화 지원 필요
- 여성농업인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6차 산업의 농정 적합한 인력육성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특히 창업은 다양한 영역과 연계되어 있어서 이를 연계하는 중간지원 역할의 전문가들이 육성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여성농업인 정책과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정책반영 노력 지원
- 여성농업인과 관련하여 현재 부분적이고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인력육성의 효과증진
- 여성농업인의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과 창업 연계지원 확대
-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경감을 위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농작업 편이장비를 활용하여 중노동으로부터 여성농민들의 건강과 노동부담 완화를 동시에 덜어 줄 수 있도록 농기계 관련 사업운영

2- 1.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2- 1- 1. 경영·농업기술 교육

□ 현황

-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가 경험은 대상별·연령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여성의 90.2%가 교육 참가 경험이 있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연령별로 65세 미만은 36.1%, 65세 이상 고령여성농업인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이 참여한 교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0~50대의 경우 ‘취미·여가·교양’이 1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 여성과 30~40대 여성농업인은 농외소득 활동의 계기가 되는 컴퓨터, 부업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10% 내외로 많았음
 - 40~50대는 농업생산기술 및 농산물 유통· 판매 교육이 12~18%, 농산물 가공기술 9.7%, 전문농업경영자 교육 6~8% 등으로 다른 연령대의 여성농업인과 비교하여 농업관련 교육내용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40대 여성농업인의 경우 다른 연령대 여성농업인과 비교하여 재무관리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았고, 60대 여성농업인도 ‘ 유통· 마케팅, 가공, 농촌관광사업’ 관련 교육에 참가한 경험이 2~5%인 것으로 조사됨

<표 5- 1> 여성농어업인의 교육 경험 및 내용

	교육 경험 있음	취미/여가/교양	자동차 운전	컴퓨터 교육	부업/자격증 취득	외국어 교육	재무관리 기법
일반농	36.1	16.0	10.1	9.4	5.5	1.7	2.7
고령농	7.5	5.3	0.4	0.2	0.7	0.0	0.0
다문화	90.2	9.2	23.7	12.2	4.1	3.4	0.0
~30대	56.6	20.9	15.1	12.2	12.3	4.6	0.0
40대	40.5	17.8	14.4	13.0	7.8	2.8	4.9
50대	37.1	17.0	9.2	8.6	4.2	0.9	1.7
60대	19.0	8.4	2.4	2.6	1.3	0.1	0.8
70대~	5.8	4.4	0.4	0.0	0.2	0.0	0.0
	농업생산 기술	유통, 판매, 마케팅교육	농산물 가공기술	전문 농업 경영자교육	기계, 자동화 설비 운전	농촌관광 사업 운영	농업관련 교육(계)
일반농	15.5	11.2	8.5	5.6	5.4	3.5	49.7
고령농	2.0	1.1	0.7	0.1	0.4	0.3	4.6
다문화	0.7	0.3	0.3	0.0	0.0	0.7	2.0
~30대	9.8	5.6	6.2	1.8	6.5	1.5	31.4
40대	16.4	14.9	9.7	8.3	5.7	4.2	59.2
50대	18.0	11.6	9.7	5.9	6.6	3.4	55.2
60대	8.5	4.7	3.4	1.2	1.7	2.1	21.6
70대~	0.9	0.2	0.4	0.0	0.0	0.1	1.6

* 주: 중복응답 결과이며 통합통계의 보정 수치임.

* 자료: 정은미 외(2014), 「2013년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여성농업인의 교육수요 증가
 -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36.3%에 불과했던 여성농업인의 교육 수요가 2013년 조사에서는 92.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연령이 높거나 경작 규모가 2ha이상인 대농가의 여성농업인의 경우 교육 수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교육내용은 여전히 ‘취미·여가·교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이 적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향후 농촌 문화복지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농업관련 교육은 농업 생산기술, 가공기술, 유통·판매·마케팅 교육의 순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가공, 유통, 관광 등 6차 산업화와 관련된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5- 2 > 여성농업인의 교육수요

(단위: %)

		취미·여가·교양	농업생산기술	농산물가공기술	유통, 판매, 마케팅	부업/자격증취득	컴퓨터	농기계, 자동화설비운전	농촌관광사업운영	전문농업경영자교육
전체		23.5	15.8	10.5	10.1	8.1	7.5	6.3	5.7	3.4
귀촌	일반농	20.9	15.3	10.3	11.4	8.0	9.4	6.6	6.0	4.0
	고령농	29.3	17.3	11.3	7.9	8.1	3.6	5.7	5.1	2.3
	다문화	7.2	1.5	1.1	2.7	13.7	10.4	1.7	1.7	0.5
연령	~30대	22.7	6.9	4.7	9.2	12.8	11.9	5.5	4.1	2.3
	40대	18.7	15.3	9.5	11.8	8.5	10.0	5.7	8.1	4.9
	50대	21.9	14.7	10.9	12.3	7.3	9.7	6.7	5.1	3.6
	60대	23.3	16.7	11.7	8.8	7.6	6.7	7.4	5.4	3.0
	70대~	30.2	18.5	11.3	7.8	8.0	2.7	5.5	4.4	2.3
경작면적	~0.5ha	26.1	17.0	9.3	9.0	8.8	6.8	6.6	4.9	3.3
	0.5~1ha	24.2	16.0	12.0	10.3	7.3	6.5	5.9	6.2	3.2
	1ha~2ha	22.6	15.0	10.7	10.4	8.9	7.5	6.1	6.4	3.6
	2ha~3ha	19.5	18.6	8.6	10.4	6.8	9.3	3.8	5.4	4.4
	3ha~	19.6	13.0	11.7	12.7	6.7	10.6	8.2	5.5	3.1

* 주: 1~3순위 응답의 가중적용 비율이며 통합통계의 보정 수치임.
 * 자료: 정은미 외(2014),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농사일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음. 다음은 언제 어디서 무슨 교육이 있는지 정보를

몰라서라는 응답이 19.4%였으며, 교육장소가 멀어서 가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자도 6%로 조사됨

- 가사와 농사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 첫째, 여성농업인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함(30%)
 - 둘째, 가사와 농사 이을 대신할 사람(도우미)에 대한 지원 필요(25.6%)
 - 셋째, 농한기나 저녁시간 등 여성농업인이 상대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기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29.6%)는 의견이 있었음
- 이외에 30~40대 젊은 여성농업인들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추진방향

- 경영 농업기술 교육 확대 운영
 - 기존 여성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던 단순 가공과 조리 등 식품가공관련 교육과 취미교실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에서 탈피, 전문경영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영농규모별 여성농업인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 기존에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부재(2010년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51.2%가 초졸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농가인구의 50%이상이 여성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에서 6차 산업과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그 역할에 부합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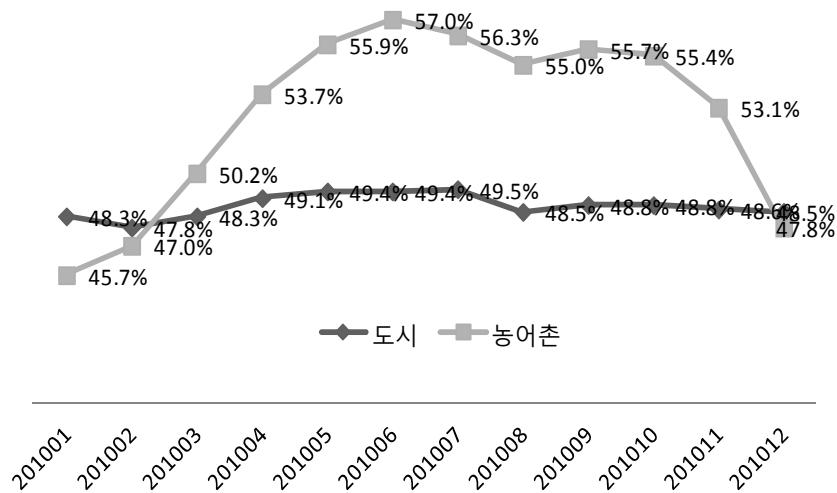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농업경영 농업기술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업경영, 기술 교육과정 특화운영	지자체 농촌진흥청					

2-2-1. 창업 교육

□ 현황

-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계절적으로 변동이 심함. 이는 농업 생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임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연중 경제활동 참여율의 변화가 1%미만인 반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연중 경제활동 참여율이 최저 45.7%에서 최고 57.0%까지 연간 12% 이상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 경제활동의 계절성은 여성농업인의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 기회 확대 필요
- 최근 한 연구결과(정은미, 2012)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2, 3차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20~40대는 농산물 가공이나 판매, 비농업분야 시간제 근로 등 취업 비중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고 높음. 60대는 품앗이 노동이 37.8%가 가장 높아 다른 연령대의 여성농업인보다 농업노동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 2- 1] 여성의 연중 경제활동참여율 변화



* 자료 : 마상진 외(2011), 『농어촌 영향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여성농업인의 6차 산업 참여의사는 응답자의 60%가 참여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남. 여성농업인의 연령과 영농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성농업인의 절반 이상이 6차 산업을 중심으로 농외소득 활동에 참여하고자 함. 그러나 고령 여성농업인이거나 영농규모가 큰 여성농업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6차 산업에 대한 참여의사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여성농업인의 6차 산업 활동의 장애요인으로는 ‘바쁜 농사일’때문이라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응답함. 이외에 20~40대에서는 ‘기회, 정보, 자본 등의 부족’이라는 응답자가 많았고, 60대 이상에서는 신체적 한계 때문이라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았음. 특히, 지역에서는 6차 산업과 관련된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인데, 지역 내 여성농업인에게 교육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었음
- 여성농업인이 연령대별로 20~40대는 농외취업을 선호하고, 50대 이상의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한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여성농업인들의 수요에 기반한 적절한 직업훈련이나 경영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취창업 관련 정보가 여성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농촌지역에서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또는 경영체와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농업인 사이에 항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음
- 농촌지역에서의 취업은 주로 농번기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며, 여성농업인들이 지역 내 일반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경리 등 전산 등 별도의 직업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전문 직업교육은 농업관련 창업 시에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최근 6차 산업과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도 사무장 제도를 두어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마을 또는 지역 내 책임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음
 -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교육을 지원한다면, 향후 농촌지역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창업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최근 6차 산업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 가공기술에 대한 교육을 확산되어 있으며, 기업경영과 노무, 세무 등 경영전반에 대한 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추진방향

- 농촌형 새일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교육
 -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 농촌형 새일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음. 현재, 강원도 영월, 충남, 부여와 홍성, 충북 영동 등이 농촌형 새일센터로 지정 운영되고 있음

- 농촌형 새일센터는 농촌여성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사업사업을 함. 특히, 새일센터는 그동안 도시지역에서 운영해 온 경력단절여성 대상의 전문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으로 농촌지역 여성들의 전문인력 양성과 이를 통한 취창업 연계 지원을 목표로 함
-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여성농업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하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여성농업인들에게 부족한 취창업 역량을 농촌형 새일센터에서 지원하고, 지역 내 농관련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 협력 필요
-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코디네이터 양성
 - 여성농업인이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데 상대적으로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하고, 창업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여성농업인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이끌어 내고 창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과 함께 1:1 지원이 가능한 코디네이터 필요
 - 농촌여성들의 취약한 역량과 사업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현장밀착형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임
 - 여성농업인의 대부분은 농사와 가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창업까지 연계될 경우 노동부담을 안게 될 수 밖에 없음
 - 지역 내 귀농귀촌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생방안 모색이 필요
 - 귀농귀촌여성들이 가진 역량과 도시에서의 사회경험 등을 활용한 코디네이터로 양성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농촌형 새일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창업지원 코디네이터 양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정원					

2- 2- 2. 창업연계지원 확대

□ 현황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까지 농촌지역의 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정부부처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은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창업 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정책임
- 특히, 농촌지역에서 이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건립한 시설물을 활용한 소득사업 추진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경영안정 시까지 3~5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 6차 산업화 역시 시설지원 위주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홍보마케팅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과 연계하여 사업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 할 경우, 광역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광역지원조직을 통해 사업내용과 운영실태 등을 점검 받아 농촌지역에서 부족한 세무, 회계, 노무 등 기초경영 역량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음
- 이들 광역단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역시 농업농촌분야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체 발굴과 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또는, 농업생산의 특성으로 인한 저조한 연간가동률과 연간 참여인력의 불안정성 등을 처리하는 문제로 참여 기업과 마찰을 빚기도 함
- 농업생산의 특성과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이들 사회적경제영역과 연계한 다양한 창업지원이 가능 할 것임

□ 추진방향

-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계한 창업지원
 - 6차 산업화 또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창업 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후속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업무협약 필요
- 여성농업인 창업 멘토링 사업
 - 조직 운영경험이 부족한 여성농업인의 창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내 우수기업과 연계한 멘토링 사업 지원
 - 기업경영과정에서 어려운 점, 사업진행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애로사항 등을 관련업종의 기업인들에게 자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와 멘티로 연계 지원방안 검토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가족부 간 체결한 여성기업인과 여성농업인 간 연계협력을 활용하여, 도시지역 여성기업인과 농촌지역에서 창업한 여성농업인을 멘토와 멘티로 연결하여 기업운영 노하우와 여성기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역량 등을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함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한 창업지원	지자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창업 멘토링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2-3. 여성농업인 교육체계 효율화

2-3-1. 여성농업인 전문가 풀마련

□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에서 여성농업인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1년에 한 번 모임조차 갖지 못하는 형식적 기구에 불과함

-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각 분야, 농업 생산, 유통, 가공, 생활, 문화, 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풀을 구성, 여성농업인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및 자문 지원이 필요함
- 여성농업인 전문가 풀은 여성농업인 신지식인, 마을개발사업 위원장, 사무장, 농기업 창업 성공 여성CEO, 농가맛집, 마을부업 사업, 반찬사업, 약선요리, 홈페이지, SNS 활용가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집적이 필요함.
- 전문가 풀의 확보는 교육만이 아니라 여성농업인, 귀농여성, 결혼이민여성, 도-농 연계 등 다양한 멘토-멘티 관련 교육 과정 및 각종 농정관련위원회 구성시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과정임. 따라서 농정원에서는 홈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전문가 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관련 인재 등록을 실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 농업농촌관련 전문가 DB구축
 - 농정원이 주축이 되어 농업농촌관련 전문가를 발굴하여 DB를 구축
 - 농업농촌과 관련된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문화, 복지, 가공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여 확보
- 여성농업인정책자문위원회의 활성화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분기별로 모임을 정례화함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의 정책체감도와 현장애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 필요
- 여성농업인 전문가 풀 등록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지속적 관리와 활용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여성농업인 전문가 DB구축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					
여성농업인정책자문위원회의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여성농업인 인재풀 홈페이지 개설	농정원					

2-3-2. 교육전달체계 효율화

□ 현황

- 기존에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부재(2010년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51.2%가 초졸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시류에 따라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교육프로그램 진행으로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가운데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여성농업인들의 교육피로도 및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
 -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이뤄지는 교육에 대한 여성농업인들의 수요 현황을 관리하여, 중복되는 교육이 제공되기 보다는, 신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임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영농규모별 여성농업인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 농가인구의 50%이상이 여성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에서 6차 산업과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그 역할에 부합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 여성농업인 교육관리시스템 구축
 - 다양한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이들에게 부족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농업농촌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농정에서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방안 검토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					
여성농업인 교육관리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					

2- 4.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2- 4- 1.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이용 지원

□ 현황

- 2014년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업무상 질병자는 6만5798명(6.5%)으로 남성 4만5592명(4.1%)에 비해 2%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여성농업인의 대부분이 장시간 앉아서 작업해야 하는 발작물 재배로 각종 근골격 질환 등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주요한 원인임
- 최근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여성화 추세에 따라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개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편이농작업의자, 경량 전동차 등 여성농업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농기계 등이 출시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보급이 부족한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발농업기계 개발에 30억원을 우선 투자하여 올해 안에 6개 기종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발표함
 - 또한, 향후 3년간 66억원을 투자하여 발농업기계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임
 - 중점개발분야로는 발작업 단계별로 고령자, 여성농업인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가, 소형 작동이 편리한 제품을 중점 개발한다는 목표임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개발된 농기계의 보급 확대 계획. 2016년부터 주산지에 공동 이용 농기계 구입지원(20개소/국비 1억원, 지방비 1억원) 시 사용자 친화형 농기계를 50% 이상 의무 구입하도록 할 계획
 - 농기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농기계개발연구센터를 지정하여 농기계분야 전문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
 - 농기계개발연구센터는 4~5개 대학중심으로 산업체와 연계하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석· 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10년(7+3년), 연간 9~10억원을 지원하게 됨
- 여성친화형 주요 농기계 구입 시 정부 융자금액을 현재 판매금액의 80%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00%까지 융자가 가능하게 됨

□ 추진방향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이용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6개 기종의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
 - 이외에 최근 여성농업인들의 작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농기계가 서둘러 개발되어야 할 것임. 특히, 감자, 고구마 등 구근류의 경우 수확 후 여성농업인 혼자 운반 시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생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현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여성농업인들의 노동 경감을 위해 다양한 소형 농기계의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성친화형 시설 인프라 조성(유니버설 디자인 보급)
 - 신체의 장애나 연령, 성별과 무관하여 누구나 쉽게 작동이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농업분야에 도입, 농기계와 농촌생활편의시설과 접목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노동 경감을 돕도록 지원함
- 농작업 편이도구 확대 보급
 - 영농규모가 적은 영세농가, 노령농가 일수록 기계보다는 수작업에 의존하는 영농패턴이 지배적임. 특히 단순동작을 반복해서 하는 발작물의 경우 농작업 도구가 건강에(관절염, 허리통증 등) 좋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연구됨(2014 농업기계연구소).
 -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농작업 편이도구를 대량 확보하여 임대사업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농작업 도구를 농가에 싼값에 적극 보급 필요.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영역별 정책과제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이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촌진흥청					
여성친화형 시설 인프라 조성(유니버설디자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작업 편이도구 확대지원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3.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정책방향

- 지역인구의 과소화 현상과 더불어 농촌마을개발, 지역개발 사업이 농가소득, 농촌관광, 로컬푸드 등 여성의 참여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점차 증대되어 지역발전의 성공 여부에 여성의 역할이 점점 증대하고 있음
- 농촌지역개발사업이 2000년대 들어 농정의 주요분야로 부상하여, 현재 다양한 사업이 전국에서 확산되어 있지만, 사업과정에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참여 매우 부진
-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참여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여성농업인이 향후 지역의 리더로서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3- 1.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3- 1- 1.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확대

□ 여성농업인의 농촌지역개발사업 참여현황

- 농가인구가 고령화되고 농업의 외연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활동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또한 과거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던 행정과 정책사업들이 지역의 내발성과 상향식 추진체계로 전환되면서 리더로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농촌마을의 여성이장 30%이상 확대 계획을 명시한 바 있고, '농촌마을종합개발'의 사업시행지침 개정안에 '마을개발협의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는 '남녀공동대표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의 사업시행지침에도 마을협정 체결 시 여성참여비율이 15% 이

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음

- 여전히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이 배제되고 있음

□ 추진방향

- 지역개발 의사결정과정 참여 확대
 - 농촌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이 형식적으로 부녀회장 등 1-2명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는 여성농업인들의 의사를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역개발 추진위원회 참여 강화
 - 농촌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추진위원회 등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여성농업인의 참여율 의무 할당하여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 방식 필요
- 여성농업인 리더에 대한 가산점 부여
 - 여성농업인이 리더가 되어 추진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참여와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
 - 실제로 전라남도에서는 도정으로 여성이장이 있는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 선정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음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역개발 의사결정과정 참여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지역개발 추진위원회 참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여성농업인 리더에 대한 가산점 부여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3- 2.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역량 강화

3-2-1. 지역개발 리더육성

□ 현황

- 2007년 (강혜정 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가사와 농사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정보 수집, 그리고 그 활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은 가사와 농사를 병행하면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 기회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역 내외적으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최근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개발리더십교육과 사무장 교육 등 기존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역개발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 성과에는 한계가 있음

□ 추진방향

- 이장, 지역리더 육성
 - 여성농업인이 농가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이 이장을 맡고 있는 마을은 전국적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여전히 가부장적인 농촌사회의 정서를 완화하고,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장 등 지역리더의 체계적인 육성 필요
- 공동체 퍼실리테이터 육성
 -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운영되는 현장포럼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농촌 현장 퍼실리테이터로 여성농업인의 참여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동체성이 강한 여성들을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기존 하드웨어와 사업 중심의 사업을 공동체와 문화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사무장 교육 확대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실무자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장 교육에 여성농업인 또는 귀농귀촌여성 등 농촌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농촌여성들의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확대를 위해 사무장 교육 확대 운영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이장, 리더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공동체 퍼실리테이터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사무장 교육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3- 3. 여성농업인 지역활동 활성화

3- 3- 1. 지역사회 재능나눔 참여 활성화

□ 현황

- 2013년 실시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정은미 외)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은 마을 부녀회나 노인회를 제외하면 지역 사회단체에서 50대의 활동력이 가장 왕성하며 그 다음 순위는 40대인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사회에 어느 단체에도 활동이 없는 여성농업인은 30대 48.3%, 다문화 38.3%, 40대 19.2%의 순으로 조사됨
 - 단체 활동이 없는 여성농업인에게 지역에서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작동이 필요함
- 문화·복지 등 지역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의 삶의 질 수준을 조화시키기 위한 재능기부가 확산되고 있음
- 개인의 사회적 책임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전나눔, 사회봉사(노력봉사), 재능나눔(전문봉사) 등 3가지 형태가 있음
- 재능나눔은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습득한 재능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를 위해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재

능나눔이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 도시인들에 의한 일시적인 재능나눔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재능나눔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표 5- 3 > 여성농업인의 농업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단위 : %

		말은 일에 전문가 희망	농업인으로 자부심 느낌	새로운 농업기술·정보에 관심	조직활동을 남자에 전가
연령	30대 이하	52.4	46.8	54.9	64.1
	40대	62.7	54.2	58.2	67.1
	50대	61.5	54.7	55.5	61.6
	60대	50.9	49.4	44.0	62.6
	70대 이상	50.7	45.6	27.4	63.0
주 품 목	논벼	52.7	49.3	46.0	64.1
	과수	70.0	57.4	62.2	65.1
	노지채소	49.4	45.8	31.4	65.9
	시설채소	64.9	66.1	54.1	60.8
	화훼/특작	69.2	49.3	47.2	68.7
	전작	47.3	41.3	35.9	57.5
	축산	81.8	74.9	83.5	65.0
경 작 면 적	0.5ha 미만	53.2	47.4	36.4	61.9
	0.5~1ha 미만	55.1	47.7	46.1	63.9
	1~2ha 미만	59.4	55.5	52.6	66.0
	2~3ha 미만	62.3	52.0	56.1	67.3
	3ha 이상	56.8	56.8	55.1	61.0

		일을 해도 가사는 여성 담당	농사일에 여성 역할 구분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 희망	지역사회에서 남녀차별 당함
연령	30대 이하	60.4	45.3	55.1	60.3
	40대	63.9	51.0	55.7	59.4
	50대	66.8	49.8	56.3	58.2
	60대	68.7	47.4	43.3	55.3
	70대	71.5	46.2	25.7	44.1
주요 품목	논벼	66.8	51.2	45.4	53.2
	과수	73.7	52.7	50.2	55.8
	노지채소	68.1	41.6	35.2	55.4
	시설채소	59.8	52.8	52.8	57.4
	화훼/특작	66.7	46.2	60.5	70.0
	전작	67.0	41.4	38.0	46.9
	축산	66.4	49.0	74.3	63.8
면적	0.5ha 미만	69.4	45.7	38.9	51.1
	0.5~1ha 미만	71.4	53.1	45.3	54.2
	1~2ha 미만	64.3	48.2	47.0	56.4
	2~3ha 미만	70.4	41.0	48.0	55.7
	3ha 이상	57.1	49.2	56.4	58.3

* 정은미 외(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추진방향

- 지역사회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기여도 증진
 - 여성농업인들의 농업 이외에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 필요
 - 여성농업인들의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 증진을 통해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감대 확산 필요
 - 또한, 여성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지역활동을 통해 지역 내에서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재능나눔 참여활성화 (사회적 경제, 돌봄, 학교 등)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4.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정책 방향

- 여성농업인 관련 복지항목은 세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함. 첫째,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누려야할 복지. 둘째, 일/가정 양립이라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재생산 노동에 대한 복지. 셋째, 안정된 노후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비생산인력에 대비한 복지 등의 영역이 고려되어야 함
-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측면에서 과소화와 노령화, 노인인구의 여성화라는 세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음. 또한 대표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이 점점 증가하여 복지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함. 또한 귀촌농, 결혼이민여성, 기존 주민 등 인구구성이 다양화 되고 있어서 이들의 계층별, 거주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또한 현대사회에서 복지는 보편적인 권리의 개념으로 정착하고 있음. 따라서 여성농업인 복지정책은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와 격차 해소를 실현해야 함. 이러한 정책은 건강, 문화, 돌봄 이라는 3대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보완이 추진이 필요함
- 복지정책의 경우 항상 예산과 동반되어 정책 추진이 고려되어야 함. 그러나 복지관련 예산이 지방양여금으로 이양된 현실에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중앙부처의 타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의 현실적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복지정책은 여성농업인들이 정책체감도를 높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집중이 필요함. 정책 욕구는 세대별, 거주유형별, 계층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여성농업인 정책방향에서는 생산자로서 여성농업인의 욕구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집중이 필요함
- 특히 복지 전달체계를 변화하여 여성농업인 복지전달 시스템을 강화하여 정보의 부재로 인한 복지소외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4-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4-1-1. 복지서비스 정보전달 효율화

□ 현황

- 농촌인구의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점점 빨라지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 노인인구 비중은 28~35%(고령)로 전체인구의 30% 이상이 고령인구로 복지수요는 점점 증대하고 있음.
- 또한 65세 이상 인구의 60% 이상이 여성인구로 농촌지역 여성들은 복지의 담당자이면서 복지의 수혜자(대상자)이기도 함.
- 그러나 이들 복지대상자의 대부분이 문자해독 능력이 낮거나 유병율이 높고,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대부분임. 따라서 현재까지 복지에 전달체계는 대부분 이장을 통한 인적 전달 체계가 유일한 통로였음.
- 최근 보편적 복지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복지에 관한 다양한 영역과 제도가 확장되고 있으나 이들 시스템이 대부분 복지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수혜자의 요구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가사도우미, 바우처, 기초노령연금, 개호 등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임)
- 따라서 정보로부터 소외되었거나 대상자 스스로가 복지정책에 대한 인지가 없거나 복지수요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 예기치 않게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농촌 삶의 질 기본계획의 연구결과나 대책에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추진방향

- 시군의 SW 정책역량은 지역마다 상이하고, 농촌주민의 복지요구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임. 취약지역 사업의 경우 복지문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문화 서비스 경험 부족으로 서비스 요구에 한계
- 복지문화 사업은 하드웨어사업보다 지역민의 참여 및 지자체의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되나 지역의 관련 경험과 지원체계가 미흡. 따라서 지역 전문인력 육성, 중심지마을 주민 참여 조직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중심지사업 발굴 및 지속기반 마련

- 지자체의 복지문화 서비스 역량제고 및 사업개발 지원을 위한 복지문화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자문단 등 지원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복지문화서비스 가이드라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중심지와 배후마을 연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4-1-2. 체감형 복지전달 서비스 강화

□ 현황

-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개발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14.1%),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지원(13.6%),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12.7%)을 꼽은 경우가 많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과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음. 두 부처가 연계하여 하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47.8%)이 높았고, 현재와 같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각 부처의 업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34.2%)이 뒤를 이었음.
- 보건복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기반 강화가 필요한 영역은 지역맞춤형 사업 개발을 위한 지역 내 거버넌스의 강화(20.7%)와 활용 가능한 보건 및 복지 자원의 지원(20.2%)로 나타났음.
- 주민체감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세부과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강화(76.9%), 다문화 가족 지원(72.4%)이었고, 반면 주민체감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 세부과제는 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33.7%), 공공보건의료강화 및 민간 병원 지원 육성(38.8%)등 이었음.

□ 추진방향

- 복지문화 사업은 하드웨어사업보다 지역민의 참여 및 지자체의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되나 지역의 관련 경험과 지원체계가 미흡
- (행복꾸러미) 이해 및 사업화가 쉬운 주민체감형 복지문화 사업을 꾸러미로 제시하고, 지역은 이들 중 선정하여 추진. 배후마을 단독추진이 어려워 중심지와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는 주민요구도, 재정 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시행
- (ICT 유니버설디자인)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ICT 연계,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추진
- 지자체 및 주민의 복지문화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중심지에 ‘(가칭)농촌중심지 아카데미’를 마련 및 주민 스스로가 요구하는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즉 시설 중심의 복지가 아닌 소프트 웨어적 복지시스템을 통한 전달체계 강화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주민복지아카데미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행복꾸러미 사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4-2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4-2-1. 영농과사출산도우미 확산

□ 현황

- 가사도우미와 영농도우미, 출산도우미 사업 현황

구분	가사도우미	영농도우미	출산도우미
신청자격	가사도우미는 65세 이상 독거가구, 장애인가구, 조손가구, 다문화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임. 읍면소재 지역경로당.	사르고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소유농지 5ha 미만의 80세 이하 농업인. 최근 2년 이내 4대 중질병으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할 경우.	출산으로 인한 도우미 활용. 산전산후 30일~90일 이내 자을실시(대부분 45일 이내로 운영함)
지원내용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가사를 도움 개인농가 : 12일 이내 경로당 : 24일 이내	해당농가를 방문하여 농사일 등 영농도우미 역할을 함	해당 출산가구를 방문하여 산모 아이돌봄을 수행함
도우미 월급	1일 10,000원~12,000원 지급(국비 70%, 농협 30%)	영농활동을 보조하는 영농도우미 임금으로 1일 6만원 이내 지원(국고 70%, 이용농가 자부담 30%)	4만원 이내(자부담 10%)
신청방법	거주지역 농협에 신청	거주지 지역 농협에 신청	거주지역 농협에 신청

- 가사도우미의 경우 자원봉사 수준으로 월급이 지급되고 있음. 따라서 대부분 농협의 농가 주부모임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가사도우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월급이 지원되어야 함
- 가사도우미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복지바우처와 연계한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함. 가사도우미 지원욕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2011년 14,328명, 평균급여일수 8.1일 → 2014년 12,000명)
- 영농도우미의 경우 이용이 점점 증대하고 있음(2011년 13,746명 평균 급여일수 9.6일 →2014년 15,000명)
- 저출산으로 인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추진 사업은 국가의 국책과제임.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오히려 산부인과가 축소되고 있어서 여성농업인들의 경우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는 약화됨
- 또한 농촌여성 인구구성이 출산이 가능한 경우의 대부분 결혼이민여성(26%)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산부인과 시설과 출산이후 산모의 회복을 지원할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등의 확대가 절실함.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임신-출산 관련 정책은 보건소를 통한 영양플러스 사업과 출산도우미 제도가 유일함.

- 출산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각 시군은 40~60일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도우미 지원금은 1일 40,000원(10% 자부담) 정도의 비용이 지급됨. 이는 도시의 경우 산모도우미로 50,000원(취약계층의 경우), 지원일은 출산전후 70일 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또한 복지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거리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의 경우 오히려 접근성을 제공할 추가적인 지원이 있지 않는 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 출산도우미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결혼이민여성 인력을 집중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 가사도우미 인력육성 및 지원 현실화(임금+ 교통비)
 - 가사도우미 인건비는 1만원으로 자원봉사 실손보상 수준임.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1만원은 실손보상 수준 이하임. 따라서 가사도우미 사업의 실효성 증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로서 장기적 전망을 가진 일자리로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함
- 영농도우미 지원 현실화(농촌노임단가+ 교통비)
 - 영농도우미는 점점 이용도가 증대하고 있는 서비스 영역임.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로서 전문인력의 육성이 필요함. 또한 농업영역에서 필요한 영농인력이 작목별로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증대하고 있음. 따라서 과수, 시설채소 등 영역별로 실질적인 농촌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교통비 실손보상을 통해서 양질의 일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영농도우미 인력육성 및 DB 구축
 - 영농도우미 인력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육성 시스템 구축.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전문농가 등과 연계한 인력육성 시스템 구축 및 양성된 인력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적재적소에 적시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필요
- 도우미 이동편의 제공

- 1군 1산부인과 확충
 - 산부인과 없는 시군단위가 증가하면서 농촌지역 산부인과 확충은 중요한 국가과제임. 저출산을 해소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산모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음
 - 남녀고용평등 관련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의 경우 월 1회 정기검진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노동경감이나 야간근로의 금지 등을 법으로 규정하여 출산이전에 산모 건강에 대한 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농어촌의 경우 산모의 건강검진을 위한 병의원에 접근성이 취약함. 따라서 기본적인 산모 건강권 확보 및 부인병의 치료를 위해서 1군 1산부인과 확충이 필요함
- 도 단위 권역별 산후 조리원 설치
 - 출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후조리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 대부분의 여성농업인들이 허리병을 앓는 이유도 출산이후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임.
 - 산후조리 과정은 출산 이후 육아기 우울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군단위로 설치가 어렵다면 최소한 도단위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촌지역 출산여성의 상당수가 돌봄이 필요한 결혼이민여성이라는 점에서도 향후 산원의 설치 운영은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임
- 출산도우미 지원 확대
 - 출산도우미는 복지바우처 제도와 함께 최근 일반화되는 추세임. 특히 출산도우미의 경우 단순한 가사지원 만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육아정보를 지원하는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출산도우미 제도는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력의 확보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함. 농촌지역 출산도우미의 경우 결혼이민 여성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출산도우미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도시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도우미 인력육성 및 지원현실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보건복지부					
영농도우미 인력육성 및 DB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도우미 이동편의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여성가족부					
1군 1 산부인과 확충	보건복지부					
도단위 권역별 산후조리원 설치	보건복지부 지자체					

4- 2- 2. 농촌보육환경 개선

□ 현황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은 이제 공보육으로 전환되어 보육의 국가책임이 강화되었음. 현재 만5세미만의 대부분 보육시설이나 가정양육을 받도록 의무돌봄 시스템이 확충되고 있음
- 보육에 있어서 문제는 보육접근성과 보육다양성 양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도시지역의 경우는 접근성 보다는 다양성 문제가 더 중요한 정책목구가 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접근성과 다양성 두가지 측면 모든 영역에서 정책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어촌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은 412개소로 전체 읍면의 29.2%(‘13년 통계)로 매우 높게 나타남.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육지원 정책이 필요함
- 농촌 지역의 보육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촌공동육아센터(국공립어린이집)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주말돌봄놀이방 및 보육관련 특별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농어촌 교사에 대한 지원,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자체) 등)
- 2010년 농촌지역의 출산율은 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보육과 관련한 양육제

도가 중요해짐. 또한 농어촌 지역 결혼가구 중 26.1%는 결혼이민여성과의 결혼으로 인해 농어촌 보육 중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정의 숫자가 높아져 이에 대한 아동 지원이 포함되어야 함(제3차 농어촌 삶의 질 5개년계획)

-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보육접근성을 위해서는 소규모 보육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육다양성과 보육교사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호주의 비주류 서비스의 경우 시장에 맡겨서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농어촌, 오지벽지에 거주하는 아동들도 조기 교육과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원주민과 섬 가정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보육과 복지에 대한 정부 책무와 형평성을 실현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책임

□ 추진방향

- 1면 1개 국공립 보육시설 확보
 - 저출산 시대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 중 보육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인 항목임
 - 농촌지역의 경우 아동수가 줄어들면서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수익성을 떠나서 모든 아이들의 보육서비스 수혜를 위한 공보육 개념으로 농어촌 지역 1면 1국공립 보육시설의 의무화가 필요함
 - 여성가족부의 보육시설 인증여건을 보면 일정규모의 아동수 확보가 필수적임. 이러한 조항은 아동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증보육시설 여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움
 - 현재 소규모 어린이집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로 전환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임. 또한 여성농업인 센터 등에서도 대부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인증 등 농어촌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인증제는 오히려 보육시설 운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농촌형 소규모 보육 제도 확대 및 표준화
 -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의 경우 규모가 적더라도 지역내 거리접근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그룹홈 형태의 농촌실정에 맞는 보육시설의 인증이 필요함
 - 소규모 그룹홈 보육의 장점은 거리접근성의 향상 및 계절성, 시간제 등 보육서비스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임

- 가정돌봄센터, 육아공동나눔터 사업 등과 연계한 보육사업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농촌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농촌형 소규모 보육에 대한 시스템을 확대해야 함. 특히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연차적 확대 필요.
-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다양화
 - 농어업의 특성상 농작업 시간의 불안정성, 농작업의 계절성 등의 영향으로 보육기관의 규칙적인 운영보다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
 - 또한 농촌의 경우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아동이 증가함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방문교육 만이 아니라 마을내 그룹홈 보육이나 마을파견 보육사 제도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여성가족부에서 추진중인 건강강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사업 등과 연계하여 농어촌 지역 보육 특수성 제고 필요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1면 1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보건복지부, 지자체					
농촌 소규모 보육제도 확대 및 표준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다양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4-3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강화

4-3-1. 면보건지소 기능 활성화

□ 현황

- 여성농업인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 84.8%로 나타남. 연령이 높을수록 병의원 방문 비중이 낮아지고 보건소 이용 비중이 높아짐. 따라서 면단위 보건소의 활성화가 중요함

- 의료기관 이용할 때 어려움은 의료기관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이유가 42.4%로 가장 크고, 바쁜 농사일로 ‘병원에 갈 시간이 부족’함은 40~60대의 21~25%가 어려움을 느끼며 연령이 낮을수록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함(2013년 여성농업인 통계). 의료기관이 주로 거주지에서 먼 시·군 또는 읍면 소재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이동이 가장 큰 불편사항임

[표 5-4-1]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단위: %

	병/의원	보건소	한의원	약국	대학병원
전체	84.8	9.5	2.4	1.7	1.6
30대 이하	91.0	5.7	0.0	2.6	0.7
40대	88.3	7.0	2.5	0.7	1.4
50대	87.0	8.2	1.4	2.2	1.1
60대	82.3	9.8	2.9	2.8	2.3
70대 이상	82.1	12.8	3.2	0.4	1.5

주: 일반농 및 고령농의 응답이며 통합통계의 보정 수치임.
 자료 : 2013 여성농업인 통계(농림수산식품부)

[표 5-4-2]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

단위: %

	멀거나 교통불편	병원 갈 시간 부족	의료서비스 부실	대기시간이 길다	비싼 진료비	필요 정보· 상담 어려움	없음
전체	42.4	21.0	7.9	7.6	2.4	1.8	16.0
30대 이하	36.6	9.3	8.2	10.0	1.0	0.7	32.5
40대	32.0	20.9	11.1	8.9	1.7	1.1	23.6
50대	37.1	23.3	9.3	8.4	2.6	2.1	17.1
60대	42.4	24.6	6.2	6.4	2.5	2.1	15.1
70대 이상	54.3	17.8	6.8	6.8	2.7	1.7	8.3

주: 일반농 및 고령농의 1순위 응답이며 통합통계의 보정 수치임.
 자료 : 2013 여성농업인 통계(농림수산식품부)

- 2013년 여성농업인 통계에 의하면 여성농민들의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인식은 2008년에 비해 크게 나아짐. 그러나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본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여성농업인 들의 대부분은 60세 이상 인구비중이 높고 60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농업노동에 참여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건강정책은 중요함

- 최근 의료정책의 방향은 치료보다는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증가함.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경우 종합검진 비율이 2008년 80.4%에서 2013년 76.5%로 오히려 감소함. 30대-40대의 건강검진율은 크게 증가된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건강이 악화되는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진율이 감소함

[표 5- 4- 3]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비율

	'08 조사 (최근 2년) 종합건강검진 여부	'13 조사 (최근 3년) 종합건강검진 여부
전체	80.4	76.5
30대 이하	23.8	46.5
40대	70.6	73.9
50대	83.4	79.5
60대	84.0	78.8
70대 이상	82.9	79.4

자료 : 2013 여성농업인 통계(농림수산물부)

- 또한 여성농업인들의 경우 농작업의 대부분이 반복적인 근골격 사용 및 쭈그리는 자세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비중이 높음. 따라서 침, 뜸, 부황 등의 한방치료 요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전국적으로 한방보건진료인 허브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함

□ 추진방향

- 면보건지소 인력보완 및 프로그램 활성화
 - 농림축산식품부 복지 꾸러미 사업은 농촌노인들의 의료서비스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중심으로 한 ‘ 행복아카데미’ , 동행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한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를 위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재 보건지소의 인력을 보완하고 보건지소에서 직접 의료지원서비스 자원봉사자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면보건지소 공간의 이용도 제고
 - 현재 면단위 마다 보건지소가 없는 곳이 없음. 또한 시설이나 규모에 있어서도 대부분 신축건물로 공간이 좋음. 그러나 상주인력은 보건소장에 행정요원 인력만이 있음. 따라서 면사무소 공간을 복지와 연계하여 활성화하고 면보건지소 프로그램을 질병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연계가 필요함
 - 면단위 보건지소 공간은 대부분 신축건물로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음.
 - 그러나 공간의 활용도는 단순진료 이외에 거의 없음. 따라서 면 보건지소 공간을 복합공간화 하여 체력단련실, 농번기 육아센터, 복지꾸러미 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도 제고가 필요함
 - 노인케어 공간으로서 활용도를 증진할 방안 모색

- 1군 1한방보건소 확대
 - 여성농업인의 만성근골격계 질환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양약의 남용으로 인한 2차 질병의 유병을 억제하여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함
 - 한방보건소의 경우 약제나 의료도구 등이 휴대가 가능하고 이동이 자유로워서 이동진료에 적합한 수단임. 따라서 한방관련 진료의 경우 이동진료를 확대. 특히 섬이나 산간오지일수록 찾아가는 이동진료서비스의 확대실시가 필요함

- 건강검진을 증진
 -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건강정책임
 - 특히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60대 이후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건강검진율과도 상관성이 있음. 따라서 50대 이후 건강이 약화되는 세대에 대한 건강검진율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 농촌의 유병율은 30.4%로 도시의 22.8%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러나 지역별 의사분포는 농어촌 4.5% 대도시 60.7%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따라서 의료접근성을 강화시키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중요함. 제3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도 모니터링단 조사 결과 농어촌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이 21.1% 이동순회 방문진료서비스 확충 19.3%로 응답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중요한 의료정책 과제로 나타남

- 따라서 경로당 중심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정책을 건강마을, 농번기 순회진료 등의 체계로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면보건지소 인력보완 및 프로그램 활성화	보건복지부					
면보건지소 공간 이용도 제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건강검진을 증진	보건복지부 지자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지자체					

비고 : 제3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제3차 삶의질 5개년계획과 연계

4- 2- 2. 공동급식 확대

□ 현황

- 농번기 공동급식 제도는 여성농업인들의 노동경감을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임. 최초로 전남 나주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은 급식조리 인력과 부식비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봄, 가을 두 번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최대 40일 정도 지원하고 있음. 지자체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농번기 공동급식은 마을이장의 책임 하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마을단위 사업으로 선 사업집행, 후 사업비 지불 형태로 이루어짐. 대부분 점심급식을 제공하는 형태이고 급식때 마을의 노인들의 점심을 함께 대접하는 마을급식 형태로 제공하여 농촌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
- 정책체감도가 높은 점에도 불구하고 정책 전달체계가 이장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이장이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책이 아예 전달되지 않거나 중단 또는 반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직주 근접형 생산수단을 갖지 않거나 품삯노동을 고용하는 경우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 또한 취사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마을의 농산물을 이용했을 경우 판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장들이 사업을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함

□ 추진방향

- 취사인력과 공공 일자리 연계
 - 농어촌에 유휴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이 있거나 일 자리를 둘러싼 지역내 참여자와 비참여자 사이의 갈등 요인이 있음
 -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마을내에서 일자리 제공자를 찾기 어려울 경우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활용하여 인력제공이 필요함
- 안정적인 식품공급 체계 수립
 - 학교급식지원센터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등)과 연계하여 책임있는 건강한 식품제공 시스템 구축.
 - 특히 가공식품 등의 경우에는 군단위로 통합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품품질의 균등화 및 영양을 고려한 균일식단 매뉴얼을 활용하는 등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마을내에서 제공하는 부식품의 경우 부식책임을 맡은 곳에 납품 형태로 이루어져 마을단위 농산물을 소비하는 지산지소 형태의 공급 체계를 통해 영수증 등 행정적 서류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 수립 필요
- 기간연장과 제공유형 다양화
 - 농업의 특성이 전통적인 농업에서 벗어나면서 농번기와 농한기라는 계절적 특성이 뚜렷하지 않고 사철 농번기인 마을이 점점 증대하고 있음. 특히 하우스 지역의 경우 농번기 40일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제공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함
 - 마을공동급식과 농번기 계절급식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 고려. 농번기 계절급식의 경우 일정부분 수익자 부담(50% 정도)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함. 사업부서 역시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가 연계하여 추진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논밭이 멀리떨어져 있거나 품삯 노동을 상용하는 경우 점심을 먹기 위해 마을회관으로 모이기 어려울 경우 도시락 제공 등의 급식지원 방안이 필요함. 사회적 기업의 행복 도시락, 여성농업인들의 꾸러미(땃밭) 사업 등과 연계 추진 등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여성농업인들의 소규모 가공도 활성화 시킬수 있는 지역순환형 경제시스템과 연계 추진 필요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취사인력과 공공일자리 연계	지자체					
안정적인 식품공급체계 확립	지자체,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급식 기간연장과 제공유형 다양화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4-2-3. 특별교통

□ 현황

- 갈수록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추진이 확대되고 있음. 즉 통학 학생 비중이 증대한다는 의미임
- 통학할 학생들을 둔 부모의 대부분이 농촌의 핵심인력인 30~40대 인력임. 이들의 대부분은 아이들을 자신의 차로 학교나 학원으로 출퇴근을 시키고 있어서 농사일이 바쁜 농번기 시기에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학교버스는 점점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아짐. 최근 천원택시(백원택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와 연계한 통학택시 운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
- 취약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군단위에서 노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백원택시 제도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대한 주민만족도 역시 높을 뿐아니라 버스운행 등 대중교통 확대보다는 저비용의 주민체감형 복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추진방향

- 수요응답형 통학 차량 운영
 - 천원택시와 연계한 자부담 통학택시 운영을 통해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통학택시가 취약노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교통접근성이 불편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정책 만족도 증진
 - 수요응답형 교통차량 운영을 통한 이동접근성 향상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학택시 운영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인적자원부					
수요응답형 교통 제공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4- 4.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4- 4- 1. 소규모 동아리 지원

□ 현황

- 소규모 문화활동 지원관련 사업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많이 실시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안한 행복꾸러미 사업은 복지 문화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배후마을로 연계하는 서비스 방식을 제안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미술강예음 악 등 문화 취미 활동 학습을 지원할 계획임.
- 그러나 농촌의 문화 현실은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마을의 전통문화 조차도 계승할 인력이 사라져 문화의 단절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소규모 문화활동지원을 통해 우선은 사라져가는 마을의 문화를 복원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추진방향

- 문화소모임 활동 적극 지원
 - 마을별로 전통문화 재현을 위한 모임이나 새로운 문화활동을 위한 동아리 모임을 적극장려하고 지원함
 - 시군단위별로 여성농어업인 평생학습관 등의 공간제공이 필요함
 - 또한 여성농어업인 들의 현실과 조건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
- 여성농어업인 문화 경연대회 실시

-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그 날 행사에 여성농어업인들의 문화 솜씨 경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농어업인만의 문화를 전승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지역참여 의지를 높이고 지역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독려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여성농업인 소규모 문화활동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촌희망재단					
여성농업인 문화 경연대회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희망재단					

4- 4- 2. 문화접근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 현황

- 2013년 여성농업인 통계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의 문화행사 이용 횟수는 40대가 45.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 50대의 순이지만 60대 이후는 이용률이 크게 낮아져 70대는 15.6%에 불과함. 즉 여성농업인 중 평균 72%는 연간 문화행사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문화행사를 이용하는 장소는 해당 읍면 34.9%, 인근 소도시 34.2%의 순으로 나타남. 연령이 낮을수록 인근 소도시와 대도시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비중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해당 읍면이나 해당 시군 등 가까운 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의 이용률이 높음. 따라서 고령이 대부분인 농촌의 특성상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는 여성농업인의 문화접근성을 강화시키는 중요 요소임을 보여줌

< 표 5- 8 > 문화행사 이용 횟수와 이용 장소

단위: %

	문화행사 이용횟수			이용 장소			
	이용 경험	연3회 이하	연4회 이상	해당 읍면	해당 시군	인근 소도시	대도시
전체	28.0	19.9	8.0	34.9	24.5	34.2	6.3
30대 이하	42.4	29.7	10.9	13.8	22.5	51.7	11.8
40대	45.7	30.9	15.7	25.7	21.3	46.8	6.2
50대	34.6	24.6	10.3	38.9	15.7	36.7	8.7
60대	21.1	15.1	6.0	43.6	31.0	20.9	4.5
70대 이상	15.6	12.3	3.3	42.6	40.8	16.5	0.0

주: 통합통계의 보정 수치임. 이용장소는 이용경험이 있는 28%의 응답임.
2013 여성농업인 통계(농림수산식품부)

< 표 5- 9 > 문화시설 이용 횟수와 이용 장소

단위: %

	문화시설 이용횟수			이용 장소			
	이용 경험	연3회 이하	연4회 이상	해당 읍면	해당 시군	인근 소도시	대도시
전체	33.6	24.8	8.7	54.0	21.7	21.6	2.7
30대 이하	44.5	31.6	12.9	39.8	22.7	27.8	9.4
40대	46.2	32.1	14.1	42.0	23.5	32.9	1.6
50대	39.4	27.4	12.0	55.8	15.3	26.0	2.9
60대	29.8	23.3	6.5	60.1	21.9	15.2	2.8
70대 이상	22.3	18.3	4.0	62.6	29.8	7.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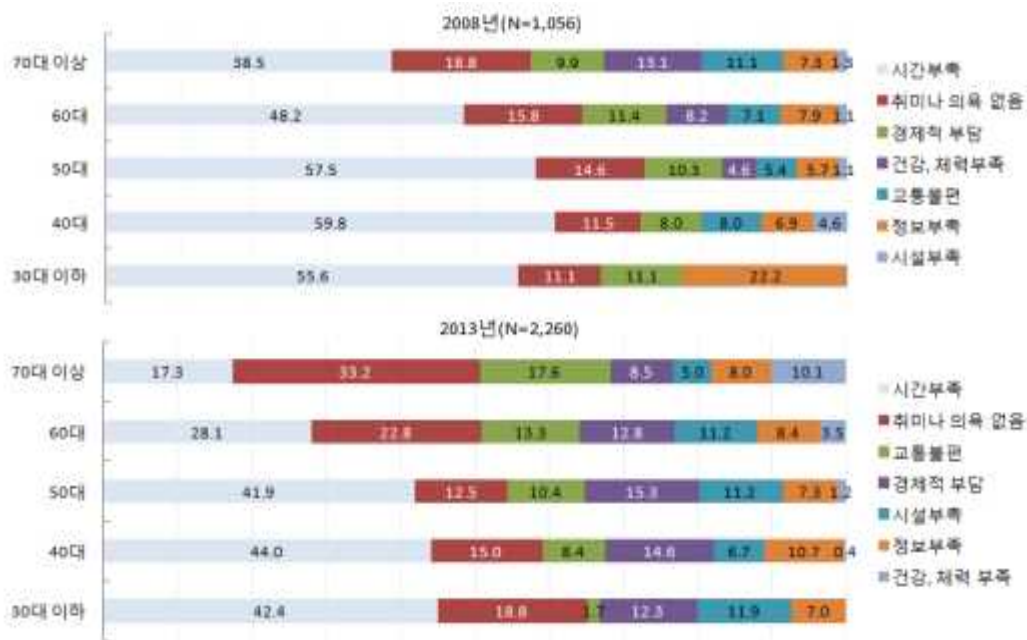
주: 통합통계의 보정 수치임. 이용장소는 이용경험이 있는 66.4%의 응답임.
2013 여성농업인 통계(농림수산식품부)

- 한편, 여성농업인이 문화(예술)회관, 시민(군민, 구민) 회관, 공공도서관, 복지시설 등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3.6%이고, 문화행사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시설 이용률이 높고 연간 3회 이하의 비중은 문화행사 이용율보다 높은 24.8%임
- 문화시설의 이용 장소는 해당 읍면이 54%로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비중이 문화행사보다 높게 나타남. 문화시설의 이용 범위는 50대 이상이 해당 읍면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반면, 30~40대는 해당 시군(23~24%)과 인근 소도시(28~33%)로 시설접근 범주가 넓어짐

- 여성농업인이 문화행사나 문화시설을 방문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시설 부족'을 꼽고 있음. 2008년 조사에서 '시간 부족'으로 문화활동을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50% 이상에서 2013년 30.9%로 줄었지만 여전히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5- 2> 문화생활의 애로사항

단위:%



주 : 2013년은 통합통계의 보정 수치이며, 무응답을 제외한 1순위 응답의 비교임.

□ 추진방향

- 문화적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문화 접근성 향상
 - 여성농어업인들이 자신의 문화적 관심 항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문화 프로그램의 거리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전개함
 - 문화접근성 강화를 위해 근거 문화거점센터를 육성하여 다양한 참여거리를 제공함.
 - 이를 위해 면단위 농협 등에 문화복지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자신의 욕구에 맞는 문화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문화 동아리 육성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함. 면단위 농협 등의 역할 필요

- 기능별, 취미별 참여를 증진 할 수 있는 문화동아리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 1회성 문화향유는 여성농어업인들이 스스로 참가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형성하는 문화 활동이 아니고 문화향유 유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위문형에 불과함
 - 따라서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고 즐길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들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여성농어업인 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중 프로그램개발이나 소모임 지원사업은 집행 실적이 없었음
- 면단위 농협의 문화센터 기능 강화
 - 문화접근성 강화를 위해 면단위 농협이나 종합복지센터를 활용한 문화거점화
- 년 6회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 지역의 문화활동 기관이나 도시의 문화동아리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 특히 폐교를 중심으로 문화공간화 하여 지역접근성을 강화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지자체, 문화관광부, 사회적 기업					
면단위 농협의 문화센터 기능신설	지자체, 농협, 농림축산식품부					
폐교등을 활용한 문화공간 확대	지자체					

4- 5 자자체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지원

4- 5- 1. 여성농업인 센터 연계 지원

□ 현황

- 여성농업인센터는 2006년 농림부에서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계획의 주요과제로 추진되어 현재 42개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2차 여성농업인 육성계획기간 동안 사업이 지방이양되어 추진된 이후로 현재 거의

증가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임. 또한 사업내용에서 보육과 방과후 교실이라는 필수사업 영역은 최근 변경되어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음

- 여성농업인센터의 주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문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현재 센터에서 하는 주요한 사업은 돌봄(보육, 방과후 돌봄)과 결혼이민여성대상 프로그램, 지역여성농업인 대상 문화, 건강, 취미 프로그램,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 부모역할 훈련, 상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대부분 여성농업인 센터는 자금과 인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여성농업인센터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운영비 1억원을 지원받고 있음. 중앙부처로 부터의 지원은 센터 공간 개보수 등을 위해 201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희망재단이 공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 현재 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에 따라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산의 부족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미비로 인한 갈등 등). 따라서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센터의 기능전환 및 운영의 지속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농어촌지역에서 여성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증대하고 있고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역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폭력과 관련한 상담소가 없는 지역이 많음.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로 50대 이하에서 가정폭력 상담소, 이주여성 지원시설 욕구가 높게 나타남

< 표 5- 7 > 여성 복지시설의 수요

단위: %

	여성인력 개발센터	노인종합 복지관	이주여성 긴급지원 센터	가정 폭력 상담소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	노인 상담소	모자(미혼모) 보호시설
전체	57.3	26.6	17.3	16.0	14.9	12.6	12.3	10.4
30대 이하	77.6	0.0	25.4	22.8	0.0	17.5	0.0	14.5
40대	77.4	0.0	21.4	24.1	0.0	21.7	0.0	17.0
50대	78.8	0.0	23.2	19.8	0.0	15.7	0.0	11.3
60대	56.8	26.8	18.3	16.5	15.3	12.7	13.9	11.6
70대 이상	21.9	71.9	6.3	6.2	40.3	3.8	31.7	4.0

주: 일반 및 고령 여성농업인의 중복응답이며 통합통계의 보정 수치임.

□ 추진방향

- 센터의 법인격 전환 및 지원근거 마련
 - 센터 지원의 투명성과 지역사회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법인격의 확보가 필요함. 특히 타 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서도 법인격의 확보가 필수적임. 또한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원의 타당성 및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결혼이민여성, 여성복지인력 등 유관사업의 연계 추진
 - 여성농업인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을 들 수 있음. 여성농업인 센터의 위치가 대부분 읍단위보다는 면단위에 가깝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문화 복지 접근성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이동성이 어려운 여성농업인들에게 매우 필요함.
 -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복지체감도를 증진하고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효과를 높힐 수 있음

- 아동, 여성 폭력과 관련한 상담사업 연계
 - 현재 농촌지역에 아동, 여성과 관련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의 연계 추진
 - 이주여성 관련 상담기능 추진
 - 군단위 상담소가 있는 경우 이동 상담 실시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센터지원의 법적 근거 조성	지자체, 여성농업인센터					
타부처 유관사업 연계추진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아동, 여성폭력 관련 상담연계	지자체,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4-5-2. 행복바우처 제도 연계

□ 현황

- 행복바우처 추진현황

도별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	전남 곡성군
사업명칭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여성농업인카드 발급
시작년도	2012년(4년차)	2014년(2년차)	2015년 첫시행	보건복지부 (현,사회복지보장제도 신설협의 중)

< 자료 : 농업여성신문 2015년 6월 26일 기사 >

- 사업의 추진 근거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성법과 각 지역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조례를 근거로 한 농어촌지역의 여성들의 복지증진 사업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참여하는 시군을 비율을 보면 충청북도는 12개(100%) 시군에서 전체, 경기도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31개 시군중 15개(48.4%) 시군, 강원도 역시 도농복합도시로 18개(100%) 시군이 참여함
- 사업예산

(단위 : 명, 천원)

시군별	사업량	재 원 별			
		사업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충청북도	35,965명	5,394,812	1,872,000	2,805,302	717,510
경기도	3,333명	666,666	200,000	333,333	133,333
강원도	7000명	700,000	210,000	350,000	140,000

< 자료 : 2015년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서 >

- 나이기준을 보면 충청북도는 만 20세 이상 ~ 만70세미만, 경기도 65세미만, 강원도 만 20세 이상~만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함. 농사규모에 따른 기준이 있지만 1.고령농, 2. 소규모농가, 3.농가내 여성농업인 1인 등 대상선정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줌과 동시에 여성농업인들 끼리의 문화 공동체(공동영화보기 등)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발행된 복지카드로 지역경제에서 순환적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추진방향

- 행복바우처 확대 연계
 -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업인 단체와 토론회나 간담회 실시과정에서 돈의 액수가 아니라 여성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직업적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정착 욕구가 높음. 그러나 현재 3개 광역자치체에서만 실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통해 전국적인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음.
- 행복바우처 지원대상 가이드 라인 구축(연령제한 축소, 경지규모제한 확대)
 - 현재 지원되고 있는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따라서 행복바우처에 대한 성격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더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 다양한 문화사업 등과 연계 인센티브 확대
 - 행복바우처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정금액의 카드만을 발행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사업, 교육사업, 의료사업, 시장과 연계한 서비스 사업 등을 네트워킹 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사회의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한 관심을 증진을 통한 이중효과 거양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행복바우처 연계 지원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행복바우처 지원대상 가이드라인	지자체					
다양한 문화사업과 연계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					

5.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정책 방향

- 여성농업인 후계인력으로서 귀농귀촌여성의 양성 및 체계적인 관리
-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영농기초교육 확대 및 안정적 정착 지원

5- 1. 여성농업인 멘토 - 멘티체계 마련

5- 1- 1. 교육프로그램 내 멘토 - 멘티 강화

□ 현황

- 최근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확대되면서 여성농업인들의 교육 참여경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여성의 경우 90.2%가 교육참가 경험이 있었으며, 여성농업인의 경우 60세 미만 일반농은 36.1%, 65세 이상 고령농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농업인들의 교육참가 경험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교육과정이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단편적 교육이라는 점이 더욱 큰 문제임
- 단순 일회성 교육으로 인한 효과 절감을 예방하고, 여성농업인 간 협력과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 중 인접지역 또는 유사 영농형태의 여성농업인 간 멘토 - 멘티 형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귀농귀촌여성과 결혼이주여성 등 지역사회의 정서에 익숙하지 못해 여성들의 지역 사회 정착률을 돕고, 지역 내 여성들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여성농업인과의 멘토 - 멘티 지원 확대

□ 추진방향

- 귀농귀촌여성 멘토링 사업

- 지역의 기존 여성농업인(또는 귀농귀촌여성)과 신규 귀농귀촌여성 간의 교류와 소통의 기회 확대
- 여성농업인과 귀농귀촌여성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 지역 농업과 농촌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협력 방안 모색

• 결혼이주여성 멘토링 사업

-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과 지역 여성농업인 간 멘토 - 멘티 형성 지원
-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 등 지역단위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여성농업인 후계인력으로서의 양성과 지역 내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해 지역의 여성농업인과 멘토 - 멘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귀농귀촌여성 멘토 - 멘티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정원					
결혼이주여성 멘토 - 멘티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정원					

5-1-2. 지역공동체 내 멘토 - 멘티 협약

□ 추진방향

• 지역공동체 내 멘토 - 멘티 협약

- 지역공동체 내부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역할 증대와 지역개발사업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공동체 내 다양한 주체들과 여성농업인 간의 멘토 - 멘티 협약 추진
- 또한, 지자체와 지역 내 단체와 여성농업인단체 간 멘토 - 멘티 협약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단체 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적 분위기 조성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역공동체 내 멘토 - 멘티 협약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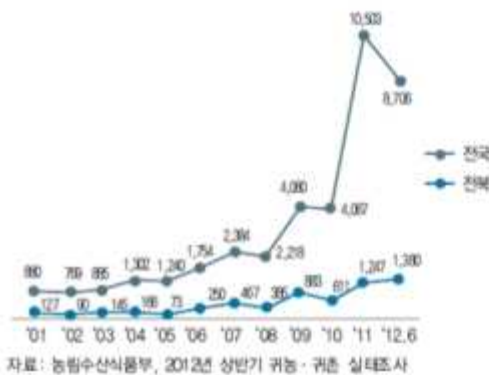
5- 2. 귀농귀촌 여성농업인 정착지원

5- 2- 1. 귀농귀촌여성 역량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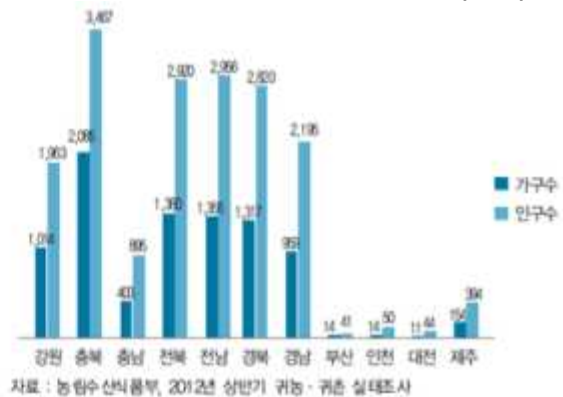
□ 현황

- 귀농귀촌인구는 2008년 2,000가구가 채 안 되던 것이 2009년에는 4,000여 가구, 2011년에는 10,000여 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귀농귀촌이 최근에는 부부, 가족단위, 심지어 여성 단독으로 이뤄지는 등 귀농귀촌여성의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귀농귀촌여성의 증가는 후계여성농업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사회에서 30~50대 비교적 젊은 층의 귀농귀촌여성을 새로운 활력소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현재 귀농귀촌여성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역의 기존 여성주체(여성농업인 등)들과의 교류와 소통 부족으로 오히려 지역 내에서 주체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조사되고 있음
- 귀농귀촌여성의 농촌사회 정착 실태와 지역 내 활동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농업농촌의 후계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접근 필요

<그림 5- 3> 연도별 귀농귀촌가구 추이



<그림 5- 4> 지역별 귀농귀촌가구 현황(2012)



□ 추진방향

- 귀농귀촌여성 정착지원 교육 확대 운영
 - 귀농귀촌여성을 후계농업인력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여성농업인들에게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농촌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
 -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 지역농업에 대한 이해 등 귀농귀촌여성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 농촌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와 역할 등을 인지시킴으로써 기존 지역 내 주체들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보완적이면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활력 인자로서 귀농귀촌여성 양성

<참고> 서천군 귀농귀촌여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군 차원에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취약한 역량을 보완하고자 실시
- 지역 내 귀농귀촌여성을 대상으로 농촌마을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행정지원 인력, 사무장 등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실시
- 농촌마을 또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는 지역 내에서 찾기 어려운 회계 및 행정지원,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화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귀농귀촌여성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돼 호응을 얻음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귀농귀촌여성 정착지원 교육 확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정원					

5-3. 결혼이민여성 양성지원

5-3-1. 결혼이민여성 교육

□ 현황

-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정은미 외)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 가운데 결혼 전 농사 경험이 있는 여성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농업에 종사한 기간은 1년 미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농업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역할은 대부분 단순작업에 한정되어 있고, 농업생산과 유통, 재무관리 등 전체 과정에서 그 비중이 50% 미만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민여성들의 농업에 대한 역할 증대와 향후 농업 후계인력으로서의 양성을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영농기술 교육 확대 필요

□ 추진방향

- 영농기초교육 확대
 - 현재 지역농협과 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영농기초교육의 확대 운영 필요
 - 일회성 단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농업 후계인력으로서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교육 추진
- 농장인턴제 확대 실시
 - 결혼이민여성이 농업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농장에서 일정기간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단순 노무만 치중되어 있는 기존의 인턴사업의 한계를 개선하여 농업생산과 출하, 판매 등 전반에 대해 학습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농장주에 대한 관리와 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추진부서 및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내용	추진부서	2016	2017	2018	2019	2020
영농기초교육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정원					
농장인턴제 확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정원					

<참고문헌>

- 강혜정·마상진. 2007. 「여성농어업인의 역할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개발연구원.
 _____(2008). 「2008년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김경덕외(2012), 농업생산·경영구조의 변화와 전망:2000·2005·2010농업총조사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경미(2002). “여성의 농업 참여유형에 따른 지위 인정 방안.” 「농촌생활과학연구」 23.
 _____(2007). “아시아 여성농어업인 지위지표(GEIA)의 설정 :여성농어업인 지위 및 역할 연구 지도 목표 달성의 기준지표”, 「농촌자원과 생활」, 통권111호(가을).
- 김미숙(2006), 「한국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적극적 조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 정책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민정(2003). “글로벌 가버넌스의 여성정책: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18.
- 김엘림 외(2000). 「21세기의 인권Ⅱ」, ‘여성의 인권과 차별문제’ , 한길사.
- 김영옥, 양승주(2000).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시안, 농림부).
 _____(2003). 여성농어업인의 취업유형별 소득전망과 정책개발, 한국여성개발원.
 _____ 외(2005).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중간평가」, 농림부.
- 김정호·최경환·이용호(2007).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주숙 외(2006), 여성농어업인센터 활성화방안,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_____ 외(2006). 여성농어업인 교육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2003). 「선진국의 여성농어업인 지원사례」.
- 농림수산식품부(2001,2006,2010). 「1차~3차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
 _____(2003, 2008, 2013). 여성농어업인통계.
 _____(2007).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연구 보고회.
 _____ 「여성농어업인정책 2011~2015」,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6). 「일본의 가족경영협약과 여성농업인 지원제도」. 농산어촌여성·생활활동지원협회.
- 농촌진흥청 보고서(2006). 여성의 농업참여 역할 확대에 따른 지원대책 연구.
- 마상진 외(2011), 『농어촌 영향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모하메드 라우프 사이드(2012), ‘프랑스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원제도’ 「여성농업인 역할강화를 위한 지원과 정책과제, 국제세미나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2002). 「여성농어업인 복지지표 개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_____ 외(2009). “해외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현황과 우리나라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방안”,

농림수산식품부.

- 박민선(2000). "EU 회원국의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정책." 『농협조사월보』 45(4): 1~13.
- _____(2004). "여성농어업인 경영참여 촉진을 위한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농협경제연구』 30: 25~44.
- _____(2005). "여성농어업인 참여확대를 위한 농업경영 모델 설정." 농촌진흥청.
- 박지연외(2015), "2015년 농업 및 농가경제동향과 전망", 『2015 농업전망:수급안정 현장에서 찾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외(2013),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미란 외(2008), 『농기계 생산지원사업의 심층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적 농기계 개발 지원 방안』, 농림부.
- _____(2009), 여성농어업인 지위평등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 개선방안, 젠더법학회 2009. 1 권 1호.
- _____(2010), 『농어촌 취창업 활성화 방안』 전남도청.
- 이동필, 최경환, 성주인(2006), 『농어촌 지역개발·복지 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상규(2009), 『한국 농업의 미래』. 매일경제신문사.
- 정은미(201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시스템 구축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2013),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2014),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최동주 외(2004).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과 아시아 여성복지정책 비교." 『국제지역연구』 8(1): 271~304.
- 최유진(2012).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성과지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윤지(2006). 『농업인 부부의 생활시간조사 결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 연구소
- 카와데 토규야(2013), 『일본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원시스템』 『여성농업인 역할강화를 위한 지원과 정책과제, 국제세미나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프랑스 농림성(2001), 『프랑스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권리』.
- 통계청(2015), 『2014년 귀농귀촌인 통계』.
- 허미영·박민선(2004),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실태와 그 결정요인』, 『농촌사회』 제14집 1호, 한국농촌사회학회.

<해외논문>

-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1994. 『Women in Farming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 Droit Rural, 2007, 『Droit Rural』, ellipses.
- European Commission, 2002, 『Agriculture: The Spotlight on Women』.
- _____(2005), 『'Making Work Pay' Debates from a Gender Perspective』.

- _____ (2006, 『Rural Development Success Stories』 .
- _____ (2008, 『Manual for Gender Mainstreaming』 .
- _____ (2008, 『Report i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
- _____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06, 『Employment in Rural Areas: Closing the Jobs Gap』 .
- _____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08, 『Rural Development in the EU』 .
- FNSEA, 2008, 『Commission Nationale des Agricultrices』 .
- Hae-Kyeung, Lee, 2005, "International Marriage Migration in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Women's World 2005, 9th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Congress on Women.
- 伊藤孝惠, 2000, “在日外國人女性の「異文化適應」とsocial support-都市近郊部に在住する日本人と結婚した外國人女性の場合”, 『日本文化學報』, 8월호.

-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http://woman.mifaff.go.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 지역아카데미 <http://www.terrami.org/agroinfo/>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농촌진흥청 <http://www.mw.go.kr/>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http://www.kwpa.org/>
- 한국여성농어업인중앙연합회 <http://www.waff.or.kr/>

부록

단체별 정책 제안

단체별 정책 제안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전략과제	현안인식	정책제안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경영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종사자 지위부여 - 남편의 동의 필요 - 정책자금 등 수혜 제한요인이 됨 ● 지자체 농정업무가 친환경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이후 특정단체 중심 지원 ●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 홍보 부족 ● 여성농업인지원조례 책무성약함 ● 농정업무를 기술센터와 기술원의 업무 차이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경영주 등록 ● 생개회의 경우 비농가 여성도 다수 포함. 여성농업인 단체간 형평성 보완 필요 ● 정책관련 홍보강화 필요 ● 여성농업인 조례 시행규칙 마련 필요 ● 여성농업인 특화 정책 없음 ● 여성농업인단체지원필요. 4-H만 지원한다고 통보함 ● 농정업무의 도행정 일괄 추진 필요 ● 지자체별로 전담부서 설치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보 미흡 ● 교육내용의 현실성 낮음 ● 특정단체 중심으로 실시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 6차산업이 귀농귀촌과 생활개선회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강화 필요 ● 실제 필요한 내용 중심 ● 여성농업인 대상 홍보강화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 경로당 노인들 식사준비 청소 인력이 부족해 방치된 곳 많음 ● 농촌문화 사업 증가함 ● 행복바우처 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족도는 잘하고 있음. 도비와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 필요 ● 여성농업인센터장이 여성농업인이 아님 ● 세종시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인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인력지원 방안 검토 필요. ● 복지문화 수혜 혜택 증진 필요 ● 행복바우처 제도 지자체간 격차가 큼 ● 여성농업인센터 기능이 여성농업인에 적합하게 운영필요 ● 영농도우미 자격조건 완화필요, 사업홍보 필요(현장에서는 잘 모르고 있음) ● 여성농업인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치료 및 상담지원 ● 공공근로와 농촌일손 연계 ● 고령여성농업인에 대한 문화복지사업 지원 필요 ● 문화관련 사업이 10시, 2시 등 여성농업

		인 참여 어려움 ● 여성농업인 산부인과 치료에 대한 대책 및 지원 절실 ● 복지에 대한 지역단위 구체적 접근 필요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양성	● 후계인력으로 다문화 여성 귀농귀촌 여성을 얘기하지만 신규인력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	
3차 평가	● 성과가 없었음 ● 중간평가가 없었음	● 4차 계획은 큰 틀에서 제정 필요 ● 여성농업인 특화 정책을 통한 선택과 집중 필요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략과제	현안인식	정책제안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정책전달체계 변경이 필요 ● 생산수단의 남성독점. 일과 가치를 분담할 수 있는 정책지원 필요 ● 여성농업인지원조례 책무성약함 ● 생산자조직 참여의 문턱 완화 필요 ● 여성대표성을 위해 여성이장 확대 필요(과거 전남도에서 추진) ● 사업의 대부분이 농진청,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면서 특정단체 중심으로 운영됨. ● 정책추진체계가 없음. 생활개선회가 말다보니 농업기술센터 아류조직(연구회)에 혜택집중	● 연초에 정책설명회 필요, 반상회처럼 전국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료제작 필요, 정책수렴과 모니터링 필요(년1회 단체의견수렴) - 부녀회, 여성단체 설명회 개최 ● 공동경영협약을 통해서 역할분담과 더불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정책추진 필요. 운동차원에서 여성농업인 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임원할당제가 있어서 여성농업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움(출자조건 등이 영세한 여성농업인은 참여가 어려움. 진입장벽 제한철폐) ● 조례의 장롱화 폐지, 토론회, 실태조사, 단체 지원 등의 정책현실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단체 활동 강화 ●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 필요 ● 여성이장 인센티브제도, 여성이장 비율 확대 필요, ● 성평등 교육 강화 필요 ● 지역단위에서 여성농업인 단체가 연계하여

<p>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지원이 없음 ● 노인일자리 필요. 농촌지역은 75세 이상 인구의 80%임. ● 사회적 경제와 연계 ● 최고경영자 과정 많이 들음. 생산주체화 교육인지 리더십 교육 확인 필요 ● 소규모 가공이 실제가능하도록 지원필요 ● 정책지원 신청 시 교육참여 어려움. 12주, 7박8일 합숙 	<p>추진체계 개선 노력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생산자 조직 우선지원 법적 지원근거 마련 필요(사회적경제의 경우 우선구매, 지원 등이 법제화 되어 있음) ● 여성농민스스로가 생산 주체로 할 수 있는 협동조합 등 조직 필요 ● 노인일자리와 경제가 결합될 수 있는 사업 필요. 마을개발사업과 노인일자리 연계 필요. 농촌일자리 고유한 과제로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 필요. 급식관련 사업 연계 필요 ● 사회적 경제와 연계하여 지역 영양플러스 사업등과 꾸러미사업 연계 ● 공동시설강화, 가공시설 무력화, 개별지원 문제 있음. 6차 산업은 없고 기업만 남음. 마을사업의 자립성 미흡, ● 교육접근성 완화, 교육도우미제도 실시 필요. 교육바우처제도와 연계필요
<p>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십 교육예산, 내용 파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복지문화 서비스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급식(농번기 급식)을 했는데 이장이 일방적으로 취소. 이장명의로 승낙을 받아야 하나? 이장은 활동비 지급, 부녀회장은 활동비 없음. 급식정산 방법도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은 문제임 ● 영농도우미 지침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홍보가 안됨 ● 행복바우처 제도 시행 - 총복도는 잘하고 있음. 도비와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 필요 ● 50대에 해당하는 복지관련사업이 없음 ● 다문화관련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다문화 아이들만 혜택, 실제로 일반 농민들 지원 정책은 없음. ● 면단위 보건소 공간이 실효성 부족 ● 찾아가는 문화사업은 확대됨 ● 농촌여성 건강문제가 심각함 ● 학교통폐합 심각, 통학택시 필요 ● 도우미라는 표현 정정필요. 도우미 현실화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급식 이장만이 결정권한을 받는 것 변경필요. 부녀회 단위로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지침변경 필요. 전달체계, 정산방식 변경 필요 ● 정책홍보 필요. 사후서류신청이 아님. 지침이 바뀌어도 농민들은 모름 ● 계층별, 세대별 복지형평성 강화 필요 ● 마을공동급식과 사회적기업, 학교급식시스템등과 연계 필요. ● 면단위 보건소 활성화 필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특화사업 실시, 주치의 제도 시행, 노인보호센터 등으로 활용 필요. ● 천원택시와 연계 필요. ● 도우미 인력 전문성강화 필요. 수당현실화 필요. 가사도우미는 자원봉사 수준임. 도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라이선스 인정 필요. 단계적 전문교육을 통해서. ● 연금 적극가입 필요, 현재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음. ● 국가지원비율 필요, 농림부가 관여안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센터 정제, 확대인지 기능전환 필요 	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규정을 없애야 함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인력 대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력 다양한 역할 가은, 적극적 지원 육성 필요. ● 젊은 여성농민 유입 필요, 한국농업대학, 처녀농군 사례등 실태조사 필요(정착실태, 정착지원제도 등)
3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가 없었음 ● 중간평가가 없었음 ● 농소정 교류사업 거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이 공감 가는 정책이 적음. 실제로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는다는 체감이 잘 안 됨 ● 영역별, 대상별, 계층별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정책 추진 필요. ● 도시민과 교류사업 정책에 포함

□ 농가주부모임

전략과제	현안인식	정책제안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이 가족종사자로 경영체 등록이 되고 있음. 일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경영체로 등록 가능 ● 공동가족경영협약 교육 필요함 ● 연금가입 :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 농협 상해보험은 많이 들고 있음 ● 지자체 정책 추진체계 미흡 ● 여성비율이 적다보니 의견을 내세우기 어려움, 관련지식부족 (교육필요). 대구시 농정위원회 (여성 2명 의무적으로 위원) ● 농협 이사 할당 1명 너무 적음 ● 여성이장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의 공동경영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도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야 함. 명함에는 공동대표로 쓰고 있음. 판매 등의 사업에서 신뢰성을 줌. - 직불금도 별도 관리함 - 본인의 판매수입 등이 본인통장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사실상(품목별로 다르거나 가공, 인터넷판매 등으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경우도 있음 ● 가족경영협약 교육을 받았는데 그 때 협약서에 차후 구입농지는 부인명의로 해주겠다고 했고 그 후 본인농지를 가지게 되어 별도로 경영체로 등록하였음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경영주에게만 지급 -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으면 농지 양도 시 양도세발생하지 않음.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으면 농지 양도 시 양도세발생하지 않음 ● 연금액이 너무 적고 유족연금도 적음 ● 지자체 심의회 등 모든 위원회에 의무적으

		<p>로 여성을 포함시켜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단위에 여성농업인 담당자 반드시 지정 ● 농축협 여성임원 : 이사는 당연직 이사를 두기로 함(여성비율 30%이상인 농협), 여성 대의원수가 적으니 여성이사도 잘 뽑히지 않음. 대의원할당제 필요. 합병 등으로 조합원수가 많은 농협은 여성이사 1명당연직은 너무 적음. 농협여성분과위원회 의무화할 것 ● 마을 개발 시에 여성이 더 일 잘함. 특히 이장은 여성이 하여야 꼼꼼히 일처리하고 단합이 더 잘됨. 남자들은 이장 회의에서 술 먹는게 일, 남자들은 귀찮은 마을 일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들은 지자체에 사안을 반영시키려고 노력
<p>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교육이 필요함 ● 가공시설 관련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교육이 필요함, 가공 및 관광농원 운영에 관한 많은 교육이 필요함. 일반적 교양교육 지양 ● 가공시설 허가 등을 간소화하였으면 좋겠음 ● 가공 맛집 운영 등 실질적 교육 필요, 자격증 교육 필요 ● 농사노하우 교육은 이제 필요 없음 ● 6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농업인 창업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개발, 택배비, 포장제 지원 - 홍보 등을 위해 전문쇼핑몰 운영 등 - 자금지원이 생활개선회원에게만 집중, 농가주부회원들은 소외감, 비농민에게도 지원
<p>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p>		
<p>복지문화 서비스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 관련 도우미제도 만족. 농협에서 잘하고 있음 ● 산부인과 부족, 산후조리원 부족 ● 복지바우처가 농촌실정에 맞지 않음 ● 모성보호 및 육아는 사례가 많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이 낮고 비용이 큰 부담임 ● 바우처 제도는 연령제한이 있어서 나이든 여성들 많은 불만이 있음. 농촌현실과 맞지 않음. 복지바우처로 변경환영. ● 복지바우처 홍보가 부족함 ● 고령독거노인 지원을 늘려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번기 공동급식 확대 필요 (대구시 현풍농협, 인천 공동급식장 밀반찬 지원- 1인당 1만원)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여성과 귀농인들에게 너무 많은 지원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정책에 대해 귀농인들이 정보가 빠르고 서류작성 등에서 뒤짐 - 소외감을 느낌
3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인지도 : 잘모름 - 홍보부족과 여성농업인 스스로 관심부족 - 담당자들로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 잘 모르는 경우 많음 ● 만족도 : 여전히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수혜자들이 소수보다 많은 수혜자들이 필요 ● 영역별, 대상별, 계층별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정책 추진 필요. ● 도시민과 교류사업 정책에 포함

□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전략과제	현안인식	정책제안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경영주 인정 필요 ● 생산자조직 참여 이사 비중 증대 ● 여성대표성 실효성 증진 필요 ● 공무원들의 성평등 의식 강화. 6차산업 관련 업무에 여성전문인력 배치 필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모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전담인력 배치 ● 여성농업인지원조례 유명무식 ● 성인지 예산 실질적 개선 필요 ● 대도시(광역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 필요함 ● 정책에 대한 설명회, 홍보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경영주 인정 반드시 필요 ● 현재 지역농협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12명 가운데 여성농업인은 1명으로 당연직처럼 할당되어 있음. 12명 가운데 여성농업인 1명밖에 안 되는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함. 20~30%로 확대되도록 해야 함 ● 지자체 농정협의회 등 각종 자문회의도 마찬가지임. 여성농업인은 구색 맞추기로 소수만 참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 ● 여성농업인의 지역농협에 대한 출자규모와 출자기간 등에 대해 달리 적용해 줄 필요가 있음. 기존 남성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출자하는데 우리가 있음 ● 6차 산업화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일은 현장에서 여성이 주도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여성들의 섬세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지원조례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아봤자 아무런 지원과 혜택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단체별로 지원조례를 만들어 지원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좋겠음 ● 여성가족부 등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성인지 예산 등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성인지 예산은 없음. 성인지 예산에 여성농업인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 광역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영농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 현실 반영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자재, 농기계 여성농업인 혼자서 운반가능하도록 소규모 제작, 운반과 이동 지원 필요. ● 농자재 소포장 지원확대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바우처 기준완화 ●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확대 필요. 제기능을 못함. 개인사업장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바우처 기준완화 및 확대실시 ● 교육도우미, 농번기 급식지원 홍보 미흡, 홍보 확대 필요 ● 실제 여성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손 가정 아이 돌봄, 농촌의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확대가 필요함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여성과 귀농인들에게 너무 많은 지원이 있음. 정착불투명에 모임 공간, 운 영비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결혼이주여성 멘토링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그들은 큰 관심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없으면서 귀농귀촌 여성을 지원하는 것은 역차별임 ● 흩어져 있는 귀농귀촌 정책을 한곳으로 통합 필요 ● 6차 산업이 귀농귀촌자 중심으로 이루어짐 ● 결혼이주여성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너무 많음. 사업추진 시 지원이 다양하게 많아 관심도 없음. ● 귀촌여성이나 다문화 여성의 경우 의미가 없음. 불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함.
3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들이나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조사자들이 농촌실정을 모름 ● 여성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들이 더 이상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정책이 필요함

□ 토론회 결과 공통요구 사항

- 정책추진체계 강화 : 전담부서 및 정책 전담자 지정
- 행복바우처 제도 확대
- 정책홍보 기능강화
- 농업인력 관련(농촌일손) 대책 수립
- 여성농업인 단체와 간담회, 토론회 등 거버넌스 강화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강화

□ 과제별 세부사업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1-1 공동경영인 으로서 위상제고	1-1-1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경영인 등록 확대 공동경영인 관련 정책 및 제도 보완
	1-1-2 '부부공동경영협약'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자부심과 책임감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공동협약 교육 및 홍보 시도 및 전국단위 협의체 구성
	1-1-3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가입 홍보물 제작 및 홍보
1-2 여성농업인 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1-2-1 농정 관련 위원회 양성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축산식품부 및 시도 여성위원 양성균형 확대 농림수산 관련 전문가 DB작성
	1-2-2 농업회의소 여성농업인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회의소 여성위원 교육 농업회의소 내 여성위원회 설치 운영
	1-2-3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도단위, 회원농협 여성위원회 설치 운영 신규 대의원 및 임원 교육 실시
1-3 성주류화 정책 강화	1-3-1 성주류화 정책 추진 체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영향평가 과제 확대 성평등 교육 확대 및 성별통계 생산 및 활용
	1-3-2 정책추진 전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전달체계 다변화 정책추진 책무성 강화 여성농업인 기본계획 중간평가 실시
1-4 정책추진 거버넌스 확대	1-4-1 여성농업인 단체 거버넌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업인 단체 협의체 구성 및 지원
	1-4-2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부처 내 유관부서 정책협의체 구성 운영 중앙-지방 정책 협의 실시
2-1 여성농업인 의 경영 능력 향상	2-1-1 경영 농업기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 농업기술 교육 확대
2-2 여성농업인 창업역량 강화	2-2-1 창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형 새일센터와 연계한 취창업 교육 창업지원 코디네이터 양성
	2-2-2 창업연계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영역과의 연계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창업 멘토링 사업
2-3 여성농업인 교육체계 효율화	2-3-1 여성농업인 전문가 풀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농촌 관련 전문가 DB구축 여성농업인 인재등록 홈페이지 구축
	2-3-2 교육전달체계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
2-4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2-4-1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이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이용 지원 여성친화형 시설 인프라 조성(유니버설디자인)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3-1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3-1-1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개발 의사결정과정 참여 확대 지역개발 추진위원회 참여 강화 여성농업인 리더에 대한 가산점 부여
3-2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역량강화	3-2-1 지역개발 리더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장, 리더 육성 공동체 퍼실리테이터 육성 사무장 교육
3-3 여성농업인 지역활동 활성화	3-3-1 지역사회 재능나눔 참여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기여도 증진
4-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4-1-1 복지서비스 정보전달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업인 복지전달 정보시스템 효율화
	4-1-2 체감형 복지전달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전달 시스템 다변화
4-2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4-2-1 영농 가사 출산도우미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도우미 인력육성 및 확대 영농도우미 인력육성 및 확대 임신출산 지원강화
	4-2-2 보육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면 1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농촌 소규모 보육제도 확대 및 표준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다양화
4-3 고령영세 농업인 지원강화	4-2-1 면 보건지소 기능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검진을 증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면보건지소 공간 이용도 제고
	4-2-2 공동급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번기 공동급식 제공
	4-2-3 특별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응답형 통학 교통제공 통학택시 운영
4-4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4-4-1 소규모 동아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업인 소규모 문화활동 지원
	4-4-2 문화접근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확대 폐교 등을 활용한 문화공간 확대
4-5 지자체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지원	4-5-1 여성농업인 센터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연계 협력
	4-5-2 행복바우처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바우처 제도 연계 협력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5-1 여성농업 인 멘토-멘티 체계 마련	5-1-1 교육과정과 멘토-멘티 프로그램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멘토 멘티 ▪ 결혼이주여성 멘토 멘티 프로그램
	5-1-2 지역공동체 내 멘토-멘티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 내 멘토 - 멘티 협약
5-1 귀농귀촌 여성농업 인 정착 지원	5-1-1 귀농귀촌여성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여성 정착지원 교육 확대 운영
5-2 결혼이민 여성 양성지원	5-2-1 결혼이민여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기초교육 확대 실시 ▪ 농장인턴제 실시

□ 추진부서 및 신규사업 여부

구 분	'16	'17	'18	'19	'20	추진부처 및 기관	신규
1.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1-1 공동경영인으로서의 위상제고							
•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단체	●
• '부부공동경영협약' 을 통한 여성농업 인의 자부심과 책임감 고취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단체	●
•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확대추진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연금관리공단	
1-2. 여성농업인 정책결정 과정 참여확대							
• '농정 관련 위원회 양성 균형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여성가족부	
• 농업회의소 여성농업인 참여활성화						지자체	●
•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확대						농협	
1-3. 성주류화 정책 강화							
• 성주류화 정책추진 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 성주류화 정책 전달체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
1-4. 정책추진 거버넌스 확대							
• 여성농업인 단체 거버넌스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
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2-1.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 경영 농업기술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촌진흥청	
2-2. 여성농업인 창업 역량 강화							
• 창업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정원	
• 창업 연계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정원	●

구 분	'16	'17	'18	'19	'20	추진부처 및 기관	신규
2-3. 여성농업인 교육체계 효율화							
• 여성농업인 전문가 풀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정원	●
• 교육전달체계 효율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농정원	●
2-4.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이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진청	
• 여성친화형 인프라(유니버설디자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여성가족부	●
3.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3-1 여성농업인 지역역할 확대							
•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3-2.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역량강화							
• 지역개발 리더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3-3. 여성농업인 지역활동 활성화							
• 지역사회 재능나눔 참여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
4. 복지 문화 서비스 제고							
4-1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효율화							
• 복지서비스 정보전달 효율화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 체감형 복지전달 서비스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구 분	'16	'17	'18	'19	'20	추진부처 및 기관	신규
4-2. 모성보호 및 복지서비스 강화							
• 영농, 가사도우미 확산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 보육환경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4-3 고령 영세 여성농업인 지원강화							
• 면보건지소 기능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 공동급식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 특별교통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
4-4. 여성농업인 문화접근성 강화							
• 소규모 동아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문화관광부	
• 문화접근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 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문화관광부	
4-5 지자체 여성농업인 복지관련 제 도기 원							
• 여성농업인센터 연계 지원						지자체	
• 행복바우처 제도 지원						지자체	●
5. 다양한 여성주체 양성							
5-1 여성농업인 멘토-멘티 체계 구축							
• 교육과정과 멘토-멘티 프로그램 연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	
• 지역공동체 내 멘토-멘티 협약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
5-2 귀농 귀촌 여성농업인 정착지원							
• 귀농귀촌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
5-3 결혼이민여성 농촌인력 양성지원							
• 결혼이민여성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